

민주노총 총서 | 036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대응전략

이상동, 한지원, 안재원

초국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정립하는 데 유의미한 초석이 될 것

외환은행을 인수한 투기자본 론스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상하이기차, 빌레오 만도 등에서 드러나듯이 초국적기업은 IMF 위기 이후 '먹튀자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기술유출, 노조불인정과 일방적 구조조정, 직장폐쇄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창출이나 선진기술 도입 등 소위 말하는 초국적기업 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국적기업에게 조세특혜 등 엄청난 법·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민경제적·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데는 소홀히 하거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사회적 환경은 초국적기업의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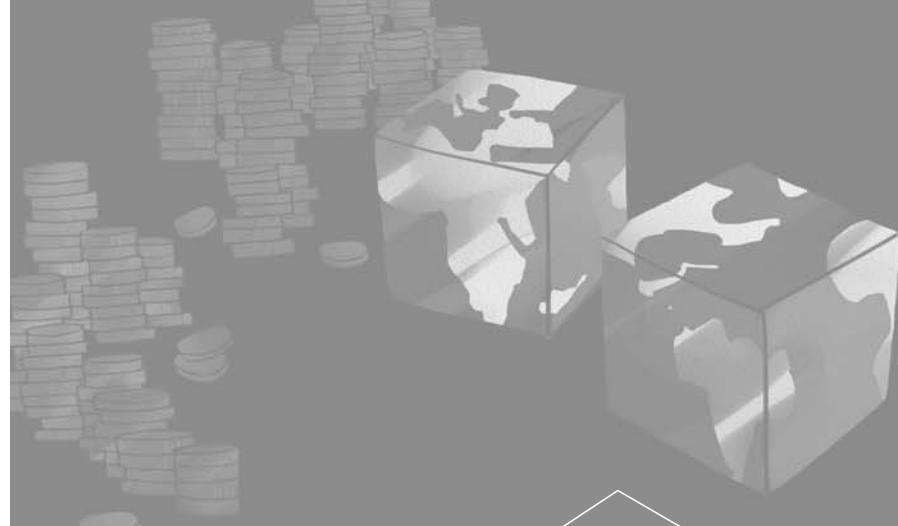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의 대응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노자간 힘 관계가 갈수록 비대칭화되고 있는 근본 배경에는 초국적자본이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국적 자본은 단위 사업장 또는 외투기업 지사의 생산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까지도 선택지로 갖게 되었습니다. 초국적자본의 일방적인 자본철수 혹은 구조조정은 본국 모기업에서 결정되고 통보된다는 점도 노동조합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국적기업 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점점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초국적기업에 특혜적인 법·제도적 환경을 비판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국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적 규제 방안 및 노동조합 대응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및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초국적기업 규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들간의 직접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대응이 단위 사업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장 수준에서부터 전 자구적 차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연대에서부터 자본통제 이르기까지 실천과 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대응 방향 마련이 절실히라는 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초국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동, 한지원, 인재원 연구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contents

요약 • 8

1장	외투기업의 개념과 현황	27
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노동	65
3장	외투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대응 방안	95
4장	외투기업 노자관계의 특징과 쟁점	127
5장	초국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응 전략	141
6장	초국적 기업의 노동탄압 사례와 교훈 - 한국 금속노조의 사례	179
7장	결론	201

부록1. 조세지원 현황 • 210

부록2. 일본통제 수단들 • 219

참고문헌 • 223

| 표 차례 |

표1. 외투기업 증감 추이	40
표2. 산업별 외투기업 분포	42
표3. 제조업 세부업종별 외투기업 현황 (2008년 3월말 현재)	43
표4. 한국의 M&A형 FDI 비중 추이 (억 달러, %)	48
표5. 최근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 추이	50
표6. 외투기업 매출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51
표7.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52
표8. 외투기업 고용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52
표9. 외투기업의 법인세 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53
표10.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 – 제조업	55
표11. 외투기업의 수익성 지표 전년대비 증감 현황 – 제조업	56
표12.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 – 제조업	57
표13.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 전년대비 증감 현황 – 제조업	57
표14. 외투기업의 성장성 지표 – 제조업	58
표15. 외투기업의 생산 효율성 지표 – 제조업	59
표16.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 지표 – 제조업	59
표17.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 전년 대비 증감 – 제조업	60
표18. 외투기업의 배당성향, 배당률 및 사내유보율 – 제조업	61
표19. 외투기업의 배당성향, 배당률 및 사내유보율 – 전산업	62
표20. 역사적 시기 변화에 따른 생산지 이동 동기와 고용 효과	71
표21. 2009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신통국 투자	71
표22. 외국인투자 규제 폐지 주요 정책과 정치적 경제적 배경	73
표23. 시기 변화에 따른 국내 자본의 축적 방식 변화와 외국인투자의 동기	76
표24.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순취업유발인원 (단위 백명)	78
표25.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입장 비교	80
표26. 외투 기업들의 대표적 자본 유출 방법들	84
표27.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기조의 변화	100
표28.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현황	101

표29.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제한 현황	102
표30.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타 지원 제도	106
표31. 각국의 고용평가 사례	114
표32.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한계	115
표33. 국제산업별 신하 국제기본협약 체결 기업들(2010.12월 현재)	147
표34.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들	150
표35. 한국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의 제소 건 처리실적	152
표36. 브라질노총이 주도하여 만든 초국적기업 노조 네트워크들	159
표37. 국제적 도구의 장단점	162
표38. 초국적 기업 대응 전략의 제약 조건과 극복 방안	166
표39. 지부별 외국인투자 사업장	181
표40. 국적별 외국인투자 사업장	182
표41.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 제도	210
표42.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수단들	219

| 그림 차례 |

그림1. 현존하는 외투기업의 최초 등록연도(2011년 1월 현재)	41
그림2. 1997년 이후 FDI 신고금액과 신고건수	45
그림3.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추이	46
그림4.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추이	47
그림5. 외국인 투자 추이	75
그림6. 국가수준의 규제 변화 1992~2009 (파센트)	85
그림7. 대공황과 현재 경제위기 비교	87
그림8.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 변화 추이	88
그림9.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88
그림10.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 관계	93
그림11.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일반적 대응	144
그림12. 초국적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디층적 대응	167
그림13. 남미 3국의 순 자본유입 (% OF GDP)과 콜롬비아의 대외 부채 구성비(%)	222

이번 연구는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 맥락에서 상정하였다.

첫째, 노동권을 강화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

둘째, 국제적 노동연대를 강화

셋째, 자본 유출입 통제 강화

넷째, 국가의 산업정책 전환

그리고 이를 다시 제도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물론 이런 구분은 표제의 의미일 뿐이며, 모든 장에서의 논의는 제도와 실천 양자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제도적 차원을 다룬다. 1장에서는 외투기업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고 2장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3장은 국가의 산업정책 차원을 재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환경을 확인하고 그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 차원의 논의를 다룬다. 먼저, 4장은 노동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외투기업 노자관계의 특징과 쟁점을 고찰한다. 이어서 5장은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경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6장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종 노동탄압의 실제 사례와 그 교훈을 다룬다.

1장에서는 외투기업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일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이질적 존재인 외투기업은 초국적자본의 글로벌 전략의 맥락 아래에서 하위자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서 내국 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국제전략과 이로 인한 고용불안 요소를 기준 연구들은 간과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의 관점에서 외투기업을 다루면서 일국 경제 규모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유, 무형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러나 자본형성(이동)과 고용효과, 그리고 무역효과 등의 이른바 유형 효과와 기술 이전 효과, 생산성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의 이른바 무형 효과들은 실증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성립과정을 고찰해 보면, FDI는 다국적 자본의 다양한 전략에 따라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의 동기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 이슈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국적 자본은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 가격결정 권력 강화라는 총자본의 이해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독단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인수합병을 실시한다.

외투기업 지사가 인수합병 등에 의해 다국적자본에 편입될 때 모기업은 기존의 자산을 획득해서 자본축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서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예외 없이 통합과정의 고용축소를 야기한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경쟁자의 수를 줄이면서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고 강화된 가격 결정권은 추가적인 고용 축소를 가능하게 만든다. 뿐만 아

나라 새롭게 형성되는 고용계약은 기존의 노자타협을 무력화시킨다. 기존의 노자타협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반대급부가 갖는 구속력이 해소되는 것이다

2011년 1월 현재 등록 외투기업은 약 15,00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외투기업은 약 3,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등록된 기업 전체에서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사 등을 따로 세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000여 개 다국적 외투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비중은 불과 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된 산업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배제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의 고용 증기에 양의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외투기업의 절대 숫자가 증가한 이른바 양적 증가일 뿐이다.

한편 한국의 FDI는 2004년 정점을 찍고 2007년까지 하락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조를 보인 한국경제에 다시 유입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를 돌이켜 보면 대체로 급격한 유입 이후 다시 급격히 빠져나가는 위험요소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FDI 통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사이의 커다란 불일치, 둘째, 높은 자본 회수율, 그리고 셋째,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가 그것이다. 첫째 문제점은 FDI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둘째 문제점은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한국 내 재투자보다는 수익 회수의 목적을 강하게 띤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이미 한국 경제의 자본축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국내 대자본의 해외유출이 FDI 유입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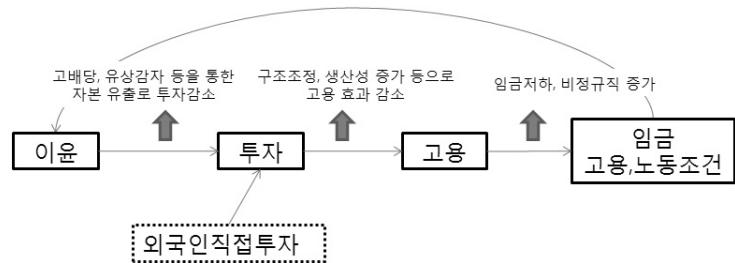
최근 외투기업의 경영 성과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확인해 보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과 재투자 수준이 하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치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장

2장은 한국 자본주의에서 외자유치의 목적이 시대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전면적인 자유화, 개방화로 진화해 왔음을 지적한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자본 부족에 시달렸던 한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자본 부족 상태는 해결되었고, 이후 외국인투자는 매매차익을 노린 증권 투자이거나 인수합병 목적의 투자가 압도적이다. IMF 구조 조정 이후 무장 해제된 한국 자본 시장에서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구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FDI 정책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단순히 FDI 유입액에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기존의 문헌들은 과학적 논증이라 할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대안적 접근법으로 자본 축적률을 중심으로 투자 불안정성을 추적하거나 국내유입액과 국외유출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순고용효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들의 공통점은 규제받지 않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 경제성장 모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림 10〉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 관계



위 그림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자본의 (실물)투자로 짧은 기간에는 축적률을 높여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듯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체적인 고용 증가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극단적 반노조 정책, 국제적 외주화, 자본 철수 압박 등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임금 분배 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자본의 이윤율(이윤 / 투하자본)은 일시적으로 상승시키지만 이 이윤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약화된다.

따라서 세계적 경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는 현재, 정부는 투자 유치 일색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본 이동 통제와 초국적 기업의 고용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제 시민사회운동,

진보정당 진영은 시민들에게 외투기업의 실상을 적극 알려나가 자본 유치와 관련된 사회 통념을 바꿔 나가야 한다.

3장

3장은 1,2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제도적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외국자본유치와 외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다.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조세감면(Tax holiday)’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의 성격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즉, 조세감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경쟁을 뛸미로 조세지원의 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온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영구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정한 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들은 이른바 ‘현대판 조차지(租借地)’라 불리울 정도로 각종 규제의 특혜 대상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제도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포기하고 다국적 자본에 의존한 개발발전 전략의 일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도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 KISC)라는 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알선 조직 그

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소위원회(지식경제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이에 반해 노동조합의 개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방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각국의 정부가 내재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개방화, 자유화 정책을 그 대안 정책으로 추진해 온 탓에 제도적 환경은 친자본적 성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국자본 신화에서 벗어나 고용불안과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적 대응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의 정상화

현재의 조세정책은 외국자본에 공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자본 유치라는 정책적 목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만 확대시키고 있다.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둘째,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는 ‘사전 고용평가’를 의무화

저고용과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고용효과를 배제한 경제운용 정책은 정당성과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에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시급히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의 도입

우리나라는 외국자본과 외투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준행정기관의 형태로 무수히 존재하지만, 외국자본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 무수히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기관들은 통폐합하고 외국자본의 유입 단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나라,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CFIUS는 의회와 여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고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전 검토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한다.

이상의 제도적 대응 방향은 외국자본이 일으킬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 국민 경제가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외투기업이 이제 국민경제의 일부분이 된 것이 현실이다. 외국자본을 단순히 선악의 도덕적 관념에서 판단하고 무조건적인 배격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초국적자본이 국민경제의 경계를 해체해 나가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계급정치의 범위가 국민경제의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흐름을 저지하고 노동의 세계화, 상호호혜의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상대적 주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삐풀린 금융자본을 다시 국민국가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4장부터 노동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후반부의 도입격에 해당하는 4장은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왜 노동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노동의 적극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구조적 제약과 한계를 분명히 정리하기 위함이다.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국내기업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다섯 가지 쟁점을 통해 점검하였다. 다섯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이 일국 내 노자관계 시스템을 교란시킴.

외투기업의 이질성은 무엇보다 국경 밖에 의사결정의 정점을 두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다국적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현지의 지사에 있지 않고 본국의 본사에 있음을 분명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본사가 이를 통제한다는 점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외투기업의 의사결정 분권화를 통해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킴.

노자관계의 경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관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관행을 따를지 여부에 대한 지사들의 자율권 수준이 중요하다. 지사의 노자관계에 대한 자율성은 본국이 부여한 지사의 전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작동될 것이다. 심한 경우 지사를 통해 본국 기업으로의 가치 수탈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외투기업의 진출 목적이 노자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종종 작동함.

예컨대 그린필드 투자와 증권투자로 외국 자본을 구분한다는 경계가 현실에서는 매우 모호하며, 그린필드 투자라 하더라도 투기적 성향에 따라 자본의 목적은 큰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단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한 경우 노자관계의 안정화에 대한 자본의 관심은 줄어들게 된다.

넷째, 의사결정의 회피가 극단적 노자갈등을 증폭시킴.

초국적기업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본사에 간명하게 집중되는 반면, 현지 지사 차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복잡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노동조합은 많은 경우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곤 한다. 예컨대, 현지 경영진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진정한 결정권은 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제가 다수 발생한다. 현지 경영진은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하고, 본부는 현지 경영진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은 연쇄적인 증폭과정을 통해 노자관계를 극단적 대립상황으로 몰고 가게 만든다.

다섯째, 경영 정보의 불투명성이 노동조합의 접근성을 떨어뜨림.

외투기업은 경영정보 공개의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형태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초국적기업의 복잡한 국제전략과 광범한 활동의 전모를 이해하기 난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초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가격이전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지사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임금 압박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조직노동은 안팎으로 포획당하고 있다. 조직노동이

대 자본, 대 정부에 대한 규제력을 상실해가는 이유는 세 가지 차원의 노동 포획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유연화를 통한 포획

- 사회적 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력의 상품화만을 강조

둘째, 정책적 실패를 은폐하는 포획

-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는 자본의 노동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를 회피하게 함

셋째, 간접 통제를 통한 포획

- 임노동자-경영자본가 구도가 해체되고 노동 쪽에서는 비정규직화, 자본 쪽에서는 주주-경영자 분리가 일어나 노자 양자의 상호 규제력이 약해짐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갖는 특징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노동을 더욱 강하게 포획하는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적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사전적, 일상적으로 노동에 의해 관찰되어야만 할 것이다.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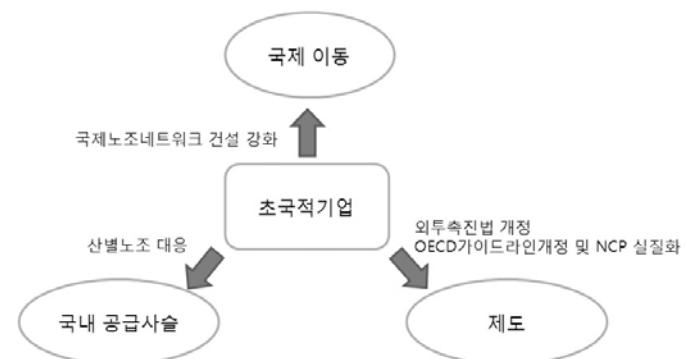
5장은 기존에 실천되어 왔던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 대응 전략에 대해 검토한다. 각각의 대응 전략이 갖는 장점과 제약 조건, 그리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초국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별도의 수단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왔다. 첫째, 유럽계 초국적기업과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국제기본협약(IFC)이다. 둘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으로 대표되는 국제 기준이 있다. 셋째 노동조합 네트워크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초국적 기업 대응 전략의 제약 조건과 극복방안

조 건		내 용	
기업인수	제약조건	채권단 중심의 인수작업으로 인한 노조 가입력 제한	
	대응방향	법제도	외투촉진법 개정을 통해 고용 의무 강화
		국내	신별 대응을 통한 사회적 쟁점화
		국제	국제적 연대를 통한 노동권 상향 평준화 요구
운영	제약조건	경영정보 접근 제한과 국제적 자본 전략에 대한 정보 제약	
	대응방향	법제도	OECD가이드라인 개정과 연락사무소 혁신
		국내	기업 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국제	국제노조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합과 국제기본협약 체결
자본출수	제약조건	인수합병 여부에 따른 기업존폐 상황과 극단적 고용불안	
	대응방향	법제도	정부 및 채권단 책임성 강화
		국내	신별 노조 차원의 공급 시슬망 압박
		국제	국제연대를 통한 본사 압박

〈그림 12〉 초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디층적 대응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도구들은 모두 제한적이다. 모든 자본 규제, 노동권 보호에 관한 법제도가 그러하지만 초국적기업의 국제적 이동과 이로 인한 노동권 파괴를 최소화할 법제도는 법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존재하는 국제기준들이나 국제기본협약 등도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와 현장에서의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만 현실에서 미약하게라도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초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에서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초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국내 공급사슬망에 대한 산별 차원의 대응, 그리고 초국적기업을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까지 국제이동, 국내 공급사슬망, 법제도 규제 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 국내 산업 수준에서 초국적 기업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별 대응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OECD다국적가이드라인 개정 및 국내사무소 운영 개선
- 본사 및 타국 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조작할 수 있는 노동조합 국제 네트워크

유럽에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초국적기업은 산별교섭을 약화시키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경향이 크다. 국제적 생산 이동, 국제적 생산성 비교를 통한 임금 경쟁 가속화 등에 산별 교섭이 불리하고, 또한 산별 투쟁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작년 발레오만도 투쟁 시에 산별협약을 통해 현대차까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발레오만도 사측이 파업 대비책으로 중국, 프랑스 등 국외 공장을 통한 현대자동차 납품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산업적 교섭을 통해 공급망(supply-chain)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초국적 기업의 이동성을 무기로 한 노동탄압 방어에 효과적임은 두밀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초국적기업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경우 노동조합 간 연대와 투쟁을 통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 정보 공유와 연대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의식 역시 확대된다.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투쟁에 따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OECD다국적가이드라인 등을 실천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의 노조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 노조가 네트워크에 부정직일 경우 네트워크가 힘을 받기 힘든 한계가 있다. 각국 노조의 집행부 교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연대가 불안정해 질수도 있다는 점 또한 한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여러 국제적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며, 특히 무엇보다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에 기반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개별 기업의 능력 제한 때문에 종연맹이나 산별에서 국제조직의 도움을 받아 해당국 노총, 산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6장

마지막 6장은 초국적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고 교훈을 찾고자 하였다.

초국적 자본의 노동탄압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던 외자기업이던 노자간 대립에 있어서 초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국적 자본에 대한 자본에 대한 대응전략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일상적 조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은 모국 자본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직강화 활동 외에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단체 협약에 경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당 등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견제장치가 내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 제도를 개선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외자기업이라고 혜택을 주고 사후감시가 불철저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초국적기업의 경우 사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도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의 원정투쟁이 잣아지고 있다. 그런만큼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기업의 경우 평소에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국제사업과 연대에 대한 고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조직해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단협, 국제협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금속노조의 지속적 관심과 역할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총연맹이나 산별 차원의 외자기업 대응팀을 상설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초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한국자본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자본들도 초국적기업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해외 각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익추구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2010년에 573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 현대자동차는 2010년 국내 생산물량(174만대)보다 해외 공장 생산물량(188만대)이 더 많은, 전체 판매량의 52%를 차지하였다.

현대기아차의 해외공장에서는 이미 노시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사측은 국내에서 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현대·기아차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가 중요한 기구가 될 전망이다. 두 번에 걸친 현대·기아차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출발 정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에 걸쳐 결정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면을 봐도 그렇다.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모임 자체의 성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으나 앞으로 현대기아차 해외공장에서 모국 노조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시간에 국제기본협약(IFC)을 맺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대·기아차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문제로 해외원정투쟁을 가서 해외노조로부터 연대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은 있으나 우리 스스로 해외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기업노조로서 제대로 실행한 바는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제연대에 대한 현대·기아자동차지부 차원에서 국제 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배치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현대·기아자동차 국제 노동자네트워크회의의 결정에 따른 각 국가별 공장 상황 공유와 상호 소통 체계의 확보부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대의 관점을 갖지 못할 경우 자본이 해외공장과 국내공장간 물량 경쟁과 차종 경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많지 않게 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해외공장 규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럴수록 각국에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 대응 능력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제협약에 대한 전망을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를 통해서 발전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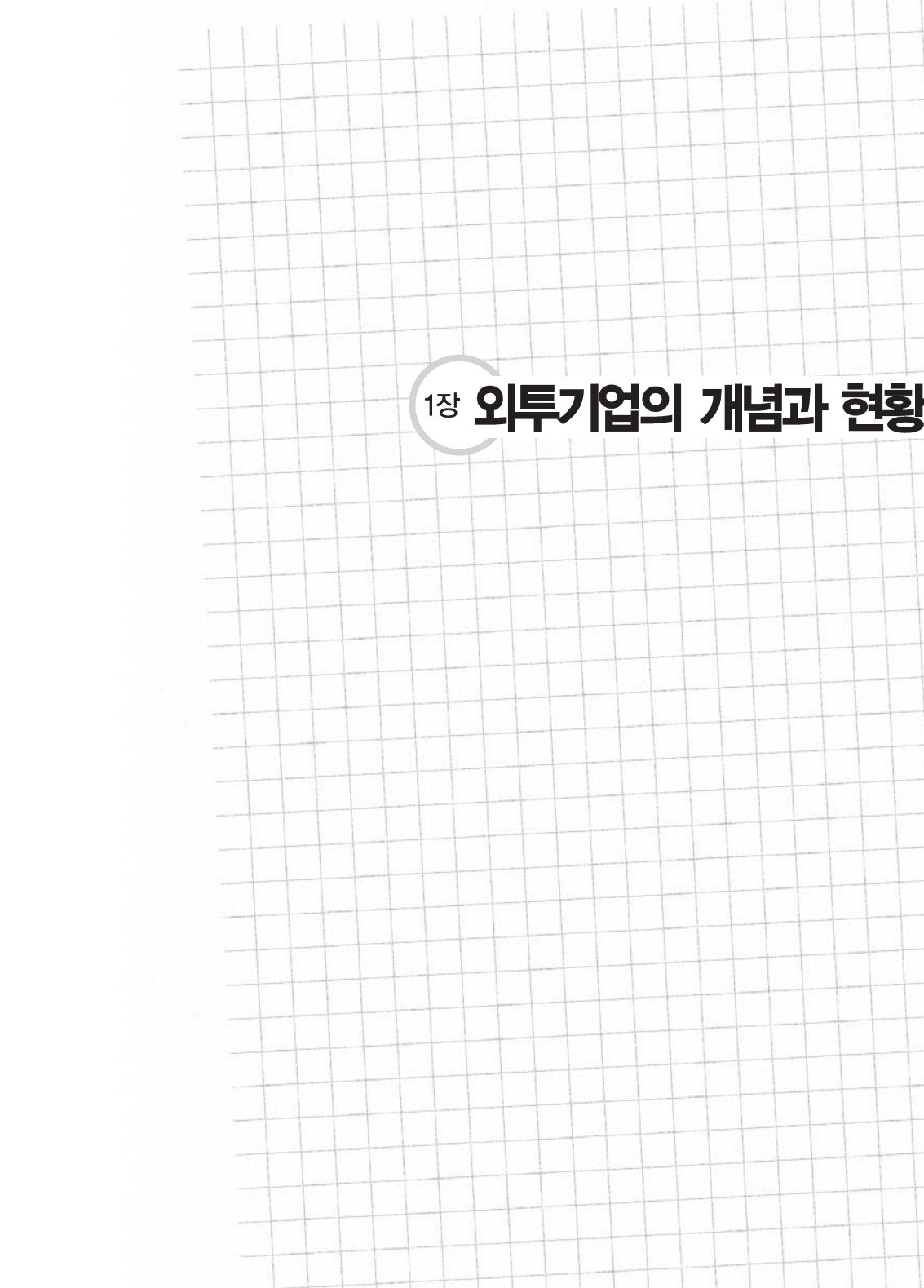
나가며

초국적자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의 대응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투기업들은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따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양상을 종종 극단적 형태로 몰아 가곤 한다.

노자 사이의 힘의 역관계가 갈수록 비대칭화되고 있는 근본 배경에는 초국적 자본이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연상되는 바는 기존의 사업장이나 생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노자 양쪽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초국적자본은 더 이상 기존의 생산관계에 얹매이지 않는다. 초국적 자본은 단위 사업장 또는 외투기업 지사의 생산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까지도 선택지로 갖게 되었다. 즉 초국적자본의 의사결정은 생산관계의 유지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대응은 단위 사업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업장에서부터 전 지구적 차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연대에서부터 자본통제 이르기까지 실천과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내국적으로는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국제적으로는 자본통제의 강화가 단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으나 종합적인 노동의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제이므로 부록에서 간단히 다루었다. 노동의 국내, 국제적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단기 이슈에 대해 제도적 방책을 대정부, 대사회에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는 초국적 자본전략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1장 외투기업의 개념과 현황

외투기업의 개념과 현황

| 1. 요약 |

외투기업은 일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이질적 존재이나 통합된 세계 경제의 보편자로써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질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관점에서 노동은 자본의 국제이동 자유화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의 관점에서 외투기업을 다루면서 자본형성(이동)과 고용효과, 그리고 무역효과 등이 유형 효과와 기술이전 효과, 생산성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의 긍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이상의 효과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투기업의 부정적 효과로써 다국적 자본의 단기 투기성, 내국기업의 투자 구축과 이로 인한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훼손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더해 고용불안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만성적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을 외국인 투자 지분율로 협소하게 다

루는 것과는 달리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에는 보편화된 다국적 자본의 전략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자본의 전략의 차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특히 자본 철수 과정에서 그 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개별 노자관계의 갈등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법령을 통해서는 이러한 자본 전략, 즉 외투기업의 설립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는 과소 및 과다 추정의 양쪽 함정을 모두 갖고 있어 부정확하고, 한국경제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높은 FDI 회수율, 신고금액과 직접투자 수지와의 불일치 문제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외투기업의 성립과정을 고찰해 보면, FDI는 다국적 자본의 다양한 전략에 따라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의 동기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 이슈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국적 자본은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 가격결정 권력 강화라는 총자본의 이해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독단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인수합병을 실시한다.

외투기업 지사가 인수합병 등에 의해 다국적자본에 편입될 때 모기업은 지사의 자산을 소유하는 한편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서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예외 없이 통합과정의 고용축소를 야기한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경쟁자의 수를 줄이면서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고 강화된 가격 결정권은 추가적인 고용 축소를 가능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고용계약은 기존의 노자타협을 무력화시킨다. 기존의 노자타협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반대급부가 갖는 구속력이 해소되는 것이다

현재 외투기업의 수는 약 15,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기업이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 중에서 다국적 자본과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노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투기업의 수는 약 3,000개로 추정된다. 이들이 앞서 언급한 외국 자본 도입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셈이다.

외투기업은 중화학공업과 제조업과 도,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 등에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외투기업의 성과지표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훨씬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비중은 전 산업 기준으로 불과 2%에 불과해 기업이익과 고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고 있다. 외투기업에 의한 고용이 계속 증가해 왔다고 하나 이는 외투기업의 절대 숫자가 증가한 이른 바 양적 증가이며, 개별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FDI는 2004년 정점을 찍고 2007년까지 하락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조를 보인 한국경제에 다시 유입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대체로 급격한 유입 이후 다시 급격히 빠져나가는 위험요소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또한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사이의 커다란 불일치, 높은 자본 회수율, 그리고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 등은 한국의 FDI 통계가 정치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험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과 재투자 수준이 하락한 것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 2. 도입 |

이 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본다. 통념 상의 외투기업은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이질적 존재로써 인식되는 외투기업은 이와 동시에 통합된 세계 경제에서 보편적 기준을 담지한 존재로써 인식되기도 한다.^{①, ②, ③, ④} 이러한 이질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의 정책 처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자본의 국제이동 자유화라는 보편성이 개별 외투기업에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사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핵심 관심 사항이 된다.^{⑤, ⑥, ⑦, ⑧} 일국의 경제시스템 안에서 발전되어 왔던 개별 기업의 노자관계는 이전 시기 상호 의존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된 현 시점에서 외투기업은 다국적 자본의 지사일 뿐이며, 그 대부분의 노자관계는 하위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노동은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자본 이동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확보해야만 하며 그 규제가 개별 외투기업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자관계를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
-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2) 산업자원부 (2001)
 - 3) UNCTAD (2008)
 - 4) 최기호 (2007)
 - 5) 류상민 외 (2009)
 - 6) Creigh and Makeham (1978)
 - 7) Forsyth (1973)
 - 8) Lehto and Bockerman (2006)

기존 문헌은 주로 ‘외국인 투자’의 관점에서 외투기업을 다루고 있다.⁹⁾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각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를 늘리기 위해 경쟁해 왔으며,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문헌들은 FDI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FDI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의 효과와 무형의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본형성(이동)과 고용효과, 그리고 무역효과 등이 유형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무형의 효과로는 기술이전 효과, 생산성 파급효과(sillover effect) 등을 들 수 있다.¹⁰⁾

기존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실증연구들은 이상의 효과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연구자마다 상반된 결론을 내거나 자료 적용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실증연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던 또 다른 부정적 효과들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투기업과 내국기업과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예컨대 다국적 자본의 투자가 단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내국기업의 투자를 구축함으로써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대표적인 반대 논거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고용창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국적기업의 중장기 투자심리를 저해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과 미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외투기업을 다루어 왔던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외투기업 그 자체의 개념을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한다. 외투기업을 외국인 투자 지분율로 협소하게 다루는 것과는 달리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에는 보편화된 다국적 자본의 전략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자본의 전략의 차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특히 자본 철수 과정에서 그 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개별 노자관계의 갈등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외투기업의 개념을 고찰해 본 뒤, 최근 한국 내 외투기업의 현황을 정리해 본다. 외투기업의 현황은 FDI 현황과 국민경제에서의 비중, 그리고 경영성과와 노자관계 동향을 통해 파악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투기업의 동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과 외투기업 정책은 대대적인 개방과 자유화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외투기업은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었고, 국민경제에서 벗어나 다국적 본사에로의 하위구조화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화와 하위구조화가 갖는 구조적 위험성이 최근 금융위기를 맞아 부각되었고 외투기업들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 3. 외투기업의 개념 |

1) 법령 상의 FDI 정의

최근의 각종 문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은 흔히 기업의 소유권

9) 김승원 (2010)

10) 흥재범 (2010)

11) 정세은, 김봉한(2009) 참고

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OECD(2008)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금액을 외국인이 10% 이상의 투표권(voting power)을 소유하는 경우로 집계한다.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기업을 매개로 투자국 경제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수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투자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참고

외국인 투자의 종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정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면, 다양한 직접투자 방식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동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투자

- 신규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합병

등을 통하여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임원 선임 또는 파견/ 장기 납품(또는 구매)/ 기술 제공(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하는 경우

2)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법인)이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3)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과학기술 분야 등의 비영리법인에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외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이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받은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투자비율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한편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앞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①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②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④ 외국인이 장기차관(평균상환기간 5년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FDI는 외국에 위치한 기업의 소유권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의 획득을 의미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0% 지분이라는 기준은 매우 임의적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지분 50% 초과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최대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하는 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최대 주주는 아주 적은 지분만으로도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기업의 지사에서는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를 넘기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예컨대, FDI가 15배나 급증했던 1980년대의 미국의 경우, 1988년 기준으로 본사의 지분이 평균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지분 보유비율 10%는 과소추정과 과다추정의 두 가지 함정을 모두 갖고 있다



12 Coughlin (1992)

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상장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함정은 과소추정이 될 것이다.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이 단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다수의 외국인 주주들로 구성되었다면 해당기업은 외국(기업 또는 경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이 사모 펀드나 해지 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투기업의 특징을 보다 강하게 띠게 것이다.

과다 추정의 함정은 경영권이 내국에 종속되는 기업까지도 외투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한국의 재벌 대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 총 지분이 매우 높으나 외투기업으로 정의할 수 없다. 외국인 총 지분이 매우 높은 것은 해당 기업이 초국적 자본의 성격을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민경제에 이식된 이질적 존재로써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종합하면, 외투기업을 정의할 때 지분율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이며 과소 및 과다추정의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다. 외투기업으로의 분류는 지분율과 함께 외국 자본의 성격, 경영권의 지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지분율 10%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2) 외투기업 설립 동기에 대한 고찰

법령상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투자’ 와는 별도로 외투기업의 성립과정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 수준만으로는 이질적 존재로서의 외투기업 성립을 분명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의 성립 경로를 세분화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¹³⁾



참고

외투기업 성립 경로 :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

- 1) 지사 또는 기업의 완전한 인수 또는 편입
- 2) 동종 업계 기업에서의 지분 인수
- 3) 비동종 업계 기업의 인수합병
- 4) 다른 투자자 또는 기업과 공동 출자하는 합작기업의 설립

외투기업의 성립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이들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외투기업 성립의 동기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이 설립될 때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⁴⁾

- 1) 시너지 효과의 획득
- 2) 규모의 경제 효과 제고
- 3)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권력 강화
- 4)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어떤 암묵적 계약의 폐기
- 5) 경영자의 독단적인 이해 증진

다국적기업이 외투기업의 지사 등을 성립시킬 때 해당 지사가 전체 다국적기



13) 출처 “FDI” 참조

14) Mueller (2003) 참조

업과 상호보완성을 가지면서 확대될 때 시너지효과가 얻어질 것이다. 수평적 통합으로 외투기업이 형성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쪽의 한계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수직적 통합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다. 이 때에는 다양한 활동 부문들 전체에 어떤 유인을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전체 다국적기업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이 성립될 때 효율은 높아질 것이고 합병 부문들은 보다 경쟁적이 될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그들의 경쟁자를 압도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종종 인수합병에 의한 외투기업의 형성은 모기업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비용 절감하는 시너지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상호 겹쳐지는 활동들을 다운사이징(downsizing)함으로써 예외 없이 노동력을 줄인다.

다국적기업의 하부조직으로써 외투기업은 시장 내에서 경쟁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에 따라 강화된 시장권력은 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는 생산규모와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존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고용계약을 재설정하기 위한 행동을 즉각 전개한다. 새로운 고용계약은 해고 등의 규정을 완화시킨다.

특히 암묵적 고용계약은 이전 기업 소유주 또는 경영진의 어떤 투자 목적과 종종 관련되어 있다. 기업 특수적 투자(firm specific investments)¹⁵⁾를 하고자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타협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때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위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된다. 노자간의 타협은 암묵적 고용계약으로 남게



15) Malcolmson (1997) 참조

16) Schumpeter (1934)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고용계약이 갖는 구속력을 현저히 약화된다. 외투기업의 경영진은 결국에는 노동조합과 일정한 타협을 하겠으나 새로운 계약은 기존 계약을 폐기한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노동조합에는 손해가 되겠으나, 새로운 경영진은 물론 기존 기업의 소유자들에게까지 이익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기업소유자들은 외부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손쉽게 기존 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자관계의 재설정은 고용 축소를 전제한다.

인수합병은 전통적으로 ‘승자의 잔치’로 인식되어 왔다. 슘페터는 이를 ‘제국의 건설’¹⁶⁾이라 표현했는데 경영진은 소유자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게 된다. 주주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경영진의 독자적 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확보된 현금을 이용해 다른 기업을 편입시키는 것은 경영진의 실적을 과시하는 데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간단히 외투기업의 설립 동기를 살펴본 결과, 외투기업의 형성 과정이 향후의 기업의 경영 행태와 고용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인수합병의 형태와 정합성을 갖게 된다.

물론 외투기업의 성립 초기에 고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필연적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FDI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다국적 기업이 무형의 자산을 가져옴으로써 국적 기업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투기업의 노동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바 ‘브랜드 효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투기업의 설립은 언제나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에게는 항상적인 위협이 된다. 많은 사례에서 외투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 4. 외투기업과 FDI 동향 |

1) 외투기업의 숫자와 규모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5,158개에 이른다. 199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외투기업의 숫자는 2006년 16,123개로 정점에 달한 뒤 2007년과 200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9년을 거쳐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외투기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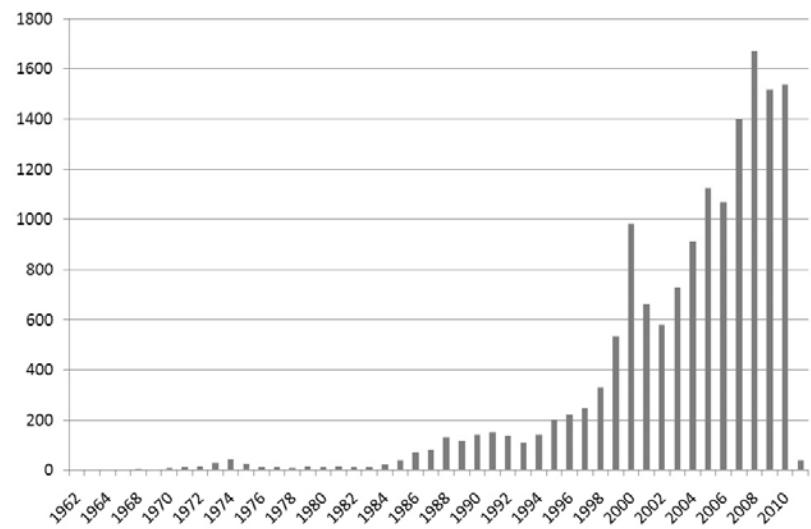
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3	09	10
외투 기 업 수	4,419	5,139	6,491	9,420	11,515	12,909	14,765	15,434	15,971	16,123	-	13,294	-	15,158

자료 : 노동부, “외투기업 현황”, 지식경제부, “행정정보 공개 사이트”, 류상민 외(2009) 등에서 재정리

현존하는 15,000 여 개의 외투기업은 1990년대 중 ·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 등록된 외투기업의 수가 전체의

약 84%에 달한다. 특히 2000년에 등록기업수가 급등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었던 2008년과 2009년에도 신규 등록 외투기업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현존하는 외투기업의 최초 등록연도 (2011년 1월 현재)



산업별 외투기업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서비스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개수는 23.9%이다. 서비스업 가운데에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49.24%에 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10%를 상회한다.

〈표2〉 산업별 외투기업 분포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외투기업 수	비중(%)
광업	광업	23	0.15
	소계	23	0.15
농림	농·축·임업	35	0.23
	어업	11	0.07
	소계	46	0.3
제조	금속	272	1.79
	기계·장비	565	3.73
	기타제조	202	1.33
	비금속광물	98	0.65
	섬유·직물·의류	158	1.04
	식품	165	1.09
	운송용기계	402	2.65
	의약	67	0.44
	전기·전자	1,072	7.07
	제지·목재	57	0.38
	화공	489	3.23
	소계	3,628	23.9
	공공·기타서비스	221	1.46
	금융·보험	449	2.96
	도·소매(유통)	7,464	49.24
서비스	문화·오락	138	0.91
	부동산·임대	292	1.93
	비즈니스서비스업	1,585	10.46
	운수·창고(물류)	466	3.07
	음식·숙박	706	4.66
	통신	53	0.35
	소계	11,374	75.0
건설	전문직별건설	70	0.46
	종합건설	60	0.4
	소계	130	0.9
전기수	수도	1	0.01
	전기·가스	37	0.24
	소계	38	0.3
합계		15,158	100.0

자료 : 자식경제부

제조업 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운송용기계, 화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공업 부문에의 외투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세부업종별 외투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계 및 장비제조업(17.3%),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6.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5.3%)가 각각 10%를 넘고 이 세 업종이 전체 제조업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10% 수준의 비중을 보인다. 이상의 중화학공업들이 외투기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 제조업 세부업종별 FDI 투자현황

	업체수	%		업체수	%
기계 및 장비제조업	252	17.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	24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3	16.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9	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4	15.3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2	9.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4	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76	5.2	섬유 제품제조업	22	1.5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72	4.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1.2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4	4.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6	3.8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5	1.0
음식료품 제조업	51	3.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2	0.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45	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	0.3
1차 금속산업	42	2.9	재생자료 가공처리업	3	0.2
소계				1,460	100

자료 : 노동부, 외투기업현황

이상의 외투기업 비중 분포는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8년 상반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공업과 도소매유통 및 사업서비스 부문

기업에 집중되어 왔고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과 보험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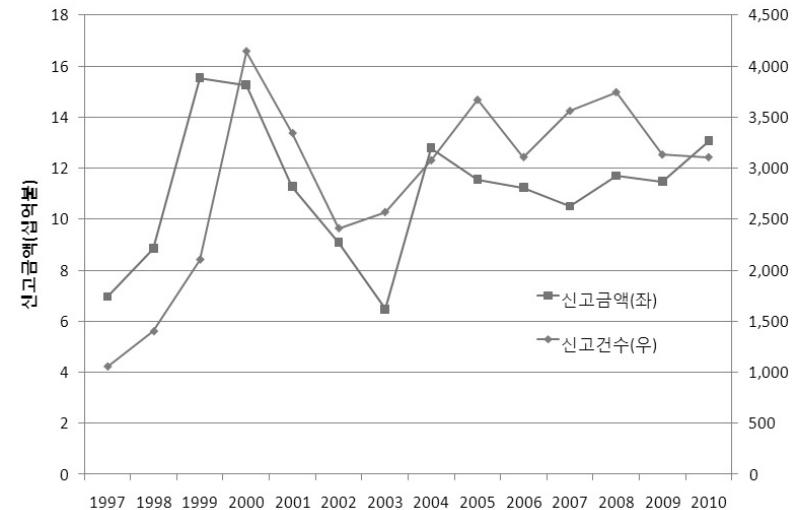
〈그림2〉 1997년 이후 FDI 신고금액과 신고건수

2) FDI 동향

한국의 FDI 유입은 1997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2010년까지의 14년 동안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두 번의 증가와 감소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첫째, 1997~2000년까지의 급속한 FDI 증가와 2003년까지의 FDI 급격한 감소, 둘째, 2004년의 가파른 증가와 2007년까지의 점진적 감소를 경험하였다. 첫째 단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 자유화와 개방화로 자본 유입이 늘어난 이후 외국자본이 이익을 실현해 회수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단계는 신용카드 대란을 겪은 직후인 2004년에 일시적으로 외환 유입이 급증한 이후 2007년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FDI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한국의 수출제조업 대기업과 금융 부문의 막대한 이익실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조만간 외국자본의 유출이 도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의 세계 경제환경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이므로 향후 전망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 유입되는 FDI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신고금액 기준과 도착금액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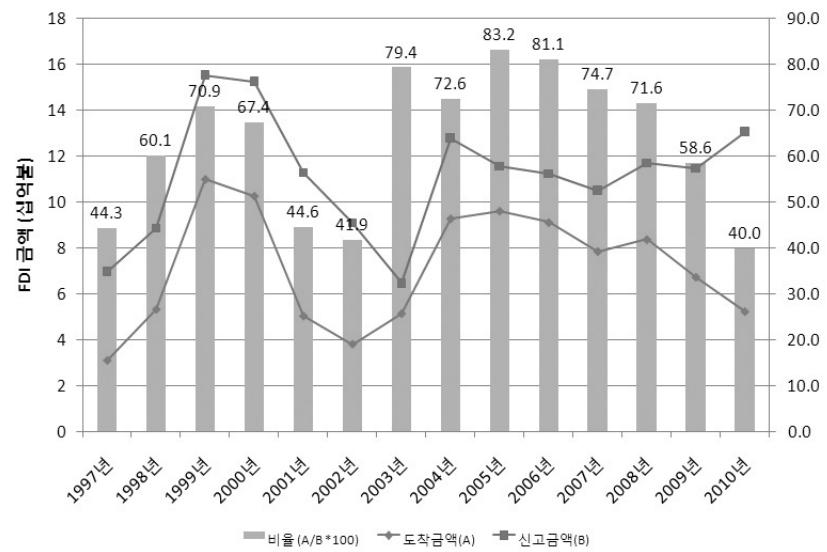
자료 : 자식경제부

1997년부터 2011년 1월 현재까지 누적 금액으로 신고 대비 도착금액은 64.1%에 그치고 있고 동 기간 중에 4년은 도착금액이 40%대에 불과했다. 이는 FDI 신고금액이 현실과는 다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이한 점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신고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착금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기간에 비록 그 비율은 낮았으나 신고금액의 증감추이와 도착금액의 증가추이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 것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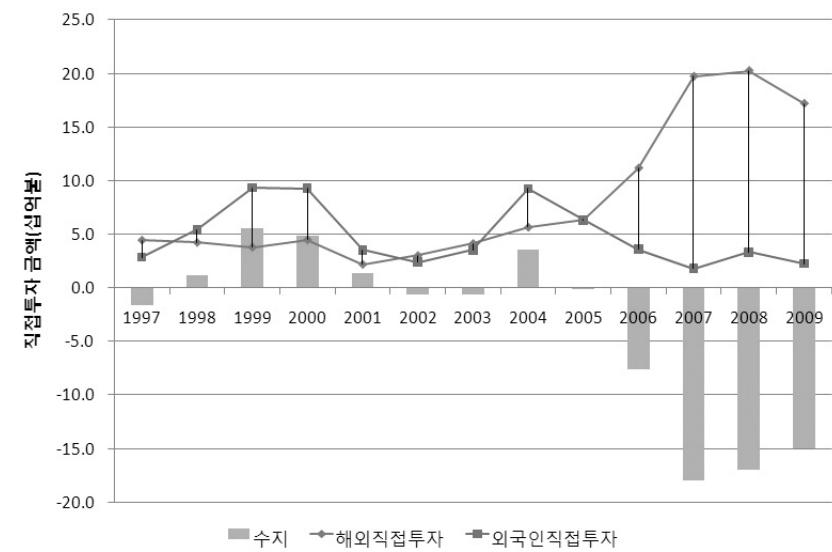
한국은행의 국제수지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앞의 그림에서 FDI 유입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

〈그림3〉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추이



자료 : 자스경제부

〈그림4〉 해외직접투자 외 외국인직접투자 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OS DB

던 2000년과 2004년에 직접투자수지가 40억 달러를 상회했던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직접투자 수지는 거의 균형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수지적자를 기록 중인데 그 규모가 2007년에는 약 180억 달러에 달했다. 2006년 이후의 규모와 추이로 보았을 때, 당분간 FDI 순유출국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FDI가 다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할 때, 이런 현상은 최근 국제 경쟁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다국적화가 된 한국의 대기업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의 FDI 유입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흔히 1) 수도권 집중 2) 특정 업종과 국가에의 집중 3) M&A 형 집중을 들고 있다. 먼저, FDI직접투자 업체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이 약 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와 인천이 각각 약 18%와 7%로 수도권이 전체 업체의 90% 안팎에 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2009년 기준으로 약 60% 수준으로 파악된다.

FDI 집중되는 업종은 전통적인 중화학공업과 금융·보험 그리고 유통 부문이다. 2008년 3월말 현재 전체 FDI 누적투자액은 714억달러이며, 이를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액의 42.4%인 308억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25.0%), 도소매업(8.2%)순이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평균 투자금액

이 상대적으로 높아 FDI 추세를 이끄는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외국인 국적은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 3월 누적 수치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국가는 모두 120여 국가로 투자건수로 보면 중국이 2,569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19.3%를 차지하고 이어서 일본(18.6%), 미국(14.4%), 파키스탄(6.6%), 나이지리아(4.0%)순이다. 그러나 국가별 투자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129억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18.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본(17.5%), 네덜란드(13.0%), 영국(10.0%), 독일(6.1%), 프랑스(5.5%), 싱가포르(4.9%), 말레이시아(3.5%)순이다.

마지막으로 FDI 비중에서 M&A 형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린필드형 투자인가 포트폴리오 투자인가를 현실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통적인 그린필드형 투자로 인식되어 온 제조업 투자 건수는 전체 투자 건수의 약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한국의 M&A형 FDI 비중 추이 (억 달러, %)

지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FDI금액	10,269	5,031	3,811	5,116	9,279	9,606	9,075	7,687
증감율	-6.8	-51.0	-24.2	34.2	81.4	3.5	-5.5	-15.3
M&A형	2,870	2,650	2,080	2,940	6,170	5,270	4,310	2,481
증감율	-44.4	-7.5	-21.3	41.2	109.5	-146	-182	-42.4
비중	28.0	52.2	54.6	57.5	66.6	54.9	47.6	23.6

자료 : 자식경제부

| 5.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 |

(KOTRA(2010)에서 발췌 재정리)

지금까지 외투기업의 개념과 FDI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것인데, 이 때의 외투기업은 앞 절 까지의 외투기업과 다른 맥락에서 분석된다. 지식경제부의 외투기업 통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정의되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른바 ‘외국인 기업’이라는 통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분율에 의해 정의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투기업은 과소추정과 과다추정의 함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투기업은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KOTRA는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주요 외투기업으로 외국투자가(투자기업)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이고 투자액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 3,014개를 (2009년 기준) 모집단으로 하는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1,675개 외국인 기업과 지식경제부에 신고된 기업,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법인이 포함된 KOTRA 등록 2,67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복 등록된 기업 수를 제외한 3,014개의 기업이 영향력이 큰 외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절에서 분석되는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은 KOTRA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1) 총괄

최근 5년간 외투기업의 주요 경제성과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수출입, 조세의 전 분야에 있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외투기업은 2007년에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이 10%를 돌파했으며, 특히 제조업에 서의 외투기업 비중은 13.2%에 달한다.

다만 2008년에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 부문에서 성과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세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요감소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고용과 부가가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5〉 최근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비중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십억원)	전산업	185,474	164,000	166,681	189,951
	제조업	114,577	112,000	124,460	128,291
	비제조업	71,907	52,000	42,221	61,660
부가가치 (십억원)	전산업	21,312	NA	30,241	28,043
	제조업	14,938	NA	13,093	17,968
	비제조업	7,055	NA	17,148	10,076
고용 (명)	전산업	281,591	375,000	252,529	282,539
	제조업	195,563	218,000	170,814	170,047
	비제조업	86,028	157,000	81,715	112,492
수출입 (십억달러)	제조업수출	30.2 ¹⁾	30.4 ¹⁾	33.7	54.3
	제조업수입	31.2 ¹⁾	29.5 ¹⁾	36.9	55.8
조세 (십억원)	전산업	NA	NA	289	879
	제조업	NA	NA	156	628
	비제조업	NA	NA	133	251

주) 2004년과 2005년 수출입은 전 산업 기준

자료: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p62

2) 매출액

외투기업의 08년 매출액은 전산업 232조원, 제조업 165조원, 비제조업 67조원, 금융업 612조원으로 나타났다. 08년도 매출액은 전산업 기준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제조업 매출이 주도하였다.

증가 요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순증에 따른 양적요인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08년 중 석유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환율상승에 따른 판매가 인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6〉 외투기업 매출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단위 : 십억원, %)

업 종	규 모		국민경제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산업	189,951	232,545	10.2	9.4
제조업	128,291	165,043	13	13.1
비제조업(금융업 제외)	61,660	67,502	6.5	5.5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p63

3) 부가가치

외투기업의 2008년 부가가치 규모는 전산업 40조원, 제조업 25조원, 비제조업 14조원, 금융업 0.3조원으로 나타났다. 08년도 부가가치는 전산업 기준 전년 대비 43.0%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제조업(44.4%)이 비제조업 (40.7%)을 상회하고 있다. 증가요인은 앞서 언급한 외투기업수의 증가라는 양적인 증가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7〉 외투기업의 부가가치 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업 종	규 모		국민경제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산업	28,043	40,109	51	6
제조업	17,968	25,932	7.9	9.6
비제조업(금융업 제외)	10,076	14,178	27	3.2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p.64

4) 고용

외투기업의 2008년 고용규모는 전산업 31만명, 제조업 19만명, 비제조업 12만명, 금융업은 약3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전산업 기준 12.5%가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14.5%가 증가하여 제조업 분야가 외투기업 전체의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다.

〈표8〉 외투기업 고용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단위 : 명, %)

업 종	규 모		국민경제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산업	282,539	318,134	1.8	2
제조업	170,047	194,692	51	5.9
비제조업(금융업 제외)	112,492	123,442	0.9	1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5) 조세

외투기업의 2008년 조세규모는 전산업 1,457십억원으로 전년대비 40.8%나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년대비 1.5%p가 감소했다. 업종별 조세규모는 제조업이 07년 대비 13.9%가 감소하였지만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외투기업의 법인세 규모와 국내산업 비중

업 종	규 모		국민경제 내 비중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전산업	2,457	1,457	9.1	7.6
제조업	1,279	1,101	8.6	11
비제조업(금융업 제외)	1,178	356	9.6	4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6) 시사점

외투기업의 성장세와 국내산업에서의 비중 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매출액과 부가가치 등 기업이익과 고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된다. 즉, 외투기업은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월등히 낮은 고용 비중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외투기업이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자본집약 정도가 큰 일정규모 이상으로 시작했고, 이후에도 노동절약형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5년 동안 외투기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투기업 숫자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인한 것이며 개별 외투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투기업 전체의 경제성과 지표를 이끄는 것은 제조업 부문임이 확인된다.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과 조세 등의 전 부문에서 제조업에서의 외투기업 비중이 전산업과 비제조업에서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

제조업만 국한시켰을 경우 외투기업의 경제성과지표는 2008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매출액 비중은 정체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고용, 조세 등은 오히려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이 수출과 매출액에서 일차적인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노사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외투기업 경영 성과의 특징 |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 절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투기업의 경영 성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에서도 외투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4대 제조업종 – 전자, 자동차, 화학, 일반기계 – 을 분석한다.

1) 수익성

제조업의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5.7%, 매출액순이익률 1.6%, 자기자본순이익률 5.7%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매출액영

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국내기업보다 높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업종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국내기업에 비해 조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1%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매출액순이익률은 국내기업과 같은 수치를 보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10〉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 : 제조업 (단위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57	8.9	1.6	24	5.7	61
외투4대 제조업						
1. 전자	44	36	-1	0.3	-0.1	0.6
2. 자동차	31	39	1.7	1.7	5.6	4.9
3. 화학제품	61	63	3	32	8.7	7.8
4. 일반기계	61	68	-0.6	0.6	-2	1.8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제조업 외투기업 수익성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07년도와 비교한 결과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업종 자동차업종 화학업종 일반기계업종 모두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많이 하락하였다.

〈표11〉 외투기업 수익성 지표 전년대비 증감 현황 : 제조업 단위 %)

	2007년	2008년	증감(%p)	2007년	2008년	증감(%p)	2007년	2008년	증감(%p)
제조업 전체	62	57	-0.5	49	1.6	-33	128	57	-7.1
외투4대 제조업									
1. 전자	34	44	1	21	-1	-31	47	-01	-48
2. 자동차	43	31	-1.2	42	1.7	-25	144	56	-88
3. 화학제품	8.6	6.1	-2.5	7.8	3	-48	155	8.7	-6.8
4. 일반기계	7.2	6.1	-1.1	6.1	-0.6	-6.7	137	-2	-15.7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표12〉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 : 제조업 (단위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44.5	44.8	124.5	123.2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51.5	58	94.3	72.4
2.자동차	43.6	44.9	129.3	122.9
3.화학제품	54.7	49.4	827	1026
4.일반기계	39.5	36.4	1739	1747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표13〉 외투기업 안정성 지표 전년대비 증감 현황 : 제조업 (단위 %, %p)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2007년	2008년	증감(%p)	2007년	2008년	증감(%p)
제조업 전체	49.5	44.5	-5	101.8	124.5	22.7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52.7	51.5	-1.2	89.6	94.3	4.7
2.자동차	42.6	43.6	1	134.6	129.3	-5.3
3.화학제품	62.1	54.7	-7.4	61.1	827	21.6
4.일반기계	55.0	39.5	-15.5	81.9	1739	92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3) 성장성

제조업 외투기업의 성장성지표에서 매출액증가율은 31.4%로 국내기업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총자산증가율은 11.2%로 국내기업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제조업종 전체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나 4대 제조업종인 전자업종 화학제품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증가율이 국내기업보다 감소하였다.

〈표14〉 외투기업의 성장성 지표 : 제조업(단위 %)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11.2	19.1	31.4	20.4	16.4	15.5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41	97	1.4	13.1	45	5.3
2.자동차	56	13.1	52	52	68	14.7
3.화학제품	125	13.1	23.4	24	57	13
4.일반기계	16.1	28.3	91	22.2	33.2	25.9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4) 생산효율성

제조업의 외투기업 생산효율 지표에서 총자본투자효율은 22.7%로 국내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부가가치율 9.9%, 설비투자효율 57.7%는 국내 기업보다 낮은 수치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업종, 자동차업종, 화학제품업종, 일반기계업종 모두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 항목에서 국내기업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총자본투자효율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15〉 외투기업의 생산 효율성 지표 : 제조업(단위 %)

	부가가치율		설비투자효율		총자본투자효율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9.9	21.4	57.7	65.7	22.7	22.2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14.9	23.4	44.7	62.4	25.2	21.7
2.자동차	11.2	20.8	53.8	66.7	25.7	23.5
3.화학제품	11.6	17	41.1	53.6	28.8	19.7
4.일반기계	14	26.9	68.2	77.4	22.3	25.8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표16〉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 지표 : 제조업(단위 백만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장비율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115.4	85	248.6	130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62.4	85	129.4	136
2.자동차	44.9	82	82.7	122
3.화학제품	82.8	126	357.2	235
4.일반기계	109.3	68	101.6	88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제조업의 외투기업 노동생산성 지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1억 1,110 만원으로 국내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장비율 또한 2억 1,110 만원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업종, 자동차업종의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나 일반기계업종의 경우 국내기업보다 높다. 특히 화학제품업종의 경우 노동장비율이 3억 천백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노동생산성 지표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평가해 보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3천백십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노동장비율은 2천십만원이 증가했다.

일반기계 업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자 및 자동차업종의 경우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노동장비율이 07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17〉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 전년 대비 증감 : 제조업 (단위 백만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장비율		
	2007년	2008년	증감(백만원)	2007년	2008년	증감(백만원)
제조업 전체	149.3	115.4	-33.9	227.9	248.6	20.7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101.4	62.4	-39	178.9	129.4	-49.5
2.자동차	135	44.9	-90.1	184.5	82.7	-101.8
3.화학제품	213.5	82.8	-130.7	330.2	357.2	27
4.일반기계	94.1	109.3	15.2	79.8	101.6	21.8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5) R&D, 배당성향 등

외투기업 제조업종의 R&D 집약도는 0.84%로 국내 제조업의 1.7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핵적 R&D 기능은 모기업에 두고 해외에서는 현지 시장적응이나 하청기지에 한정하는 외투기업의 속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은 70.4%로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17.2%의 4배에 달한다. 외투기업의 극단적인 배당성향이 제조업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4대 제조업 종 모두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월등히 높은 것이 확인된다. 더욱이 제조업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은 경제위기 와중인 2008년에도 증가하였다. 2007년에 배당성향이 56.5%였던 것이 2008년에는 70.4%까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표18〉 외투기업의 배당성향, 배당률 및 사내유보율 : 제조업 단위 %)

	배당성향		배당률		사내유보율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국내기업
제조업 전체	70.4	17.2	8.1	9.5	107.6	92.7
외투4대 제조업						
1.전자	64.4	13.1	4.9	7.6	129.2	94.5
2.자동차	74.6	13	13	5.4	107.4	94.3
3.화학제품	67.5	22.9	21.2	12.7	105.7	89.6
4.일반기계	48.8	13.1	12.1	6.6	136.8	95.9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아래는 전산업 기준의 외투기업 배당성향이다. 외투기업의 극단적 비당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조업과 비교해 보자.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은 35.6%, 배당률은 8.1%, 사내유보율은 104.5%로 나타난다. 국내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배당성향은 2.01배 배당률은 1.35배 사내유보율은 1.11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조업 외투기업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전산업 기준 외투기업의 그것에 비해서도 2배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외투기업의 배당성향, 배당률 및 사내유보율 : 전산업 (단위 %)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배당성향	35.6	17.75	2.01
배당률	8.1	6	1.35
사내유보율	104.5	94.33	1.11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6) 시사점

2008년도에 제조업 외투기업의 각종 경영성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외투기업은 국내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안정성과 생산효율성은 국내 기업보다 떨어진다. 특히 2008년에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안정성에 위협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가지 경영성과 지표 가운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과 가장 크게 대비되는 지점은 배당성향이다. 제조업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배당성향이 4배에 달하고 있다. 높은 배당성향은 낮은 R&D 지출은 대비된다. 외투기업의 높은 배당성향은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즉, 자본장비율을 높이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기업보다 높은 1인당 노동생산성과 자본장비율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 이것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6. 소결 |

외투기업은 법령 상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이 때 외국인 지분율 기준은 10%로 정의된다. 10% 지분율 기준은 매우 임의적인 것으로써 과다 추정과 과소 추정의 양쪽 함정을 모두 갖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분율 기준만으로는 외투기업이 국민경제 내에서의 이질적 존재라는 점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특히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그 설립과정과 동기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단순히 지분율로 정의되는 FDI를 외투기업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컨대 인수합병을 통해 설립된 외투기업은 고용축소를 거의 예외없이 추구하게 되는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는 기존의 기업에 배태되어 있던 노자 사이의 암묵적 타협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약 15,000여 개를 상회하는 등록 외투기업 가운데 약 3,000 개 정도가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지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민경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 비중은 불과 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된 산업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배제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의 고용 증가에 양의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외투기업의 절대 숫자가 증가한 이론과 양적 증가일 뿐이다.

한편 한국의 FDI는 2004년 정점을 찍고 2007년까지 하락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조를 보인 한국경제에 다시 유입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를 돌아보건대 급격한 유입 이후 다시 급격히 빠져나가는 위험요소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한국의 FDI 통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사이의 커다란 불일치, 둘째, 높은 자본 회수율, 그리고 셋째,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가 그것이다. 첫째 문제점은 FDI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둘째 문제점은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한국 내 재투자보다는 수익 회수의 목적을 강하게 띤다는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이미 한국 경제의 자본축적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국내 대자본의 해외유출이 FDI 유입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최근 외투기업의 경영 성과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확인해 보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과 재투자 수준이 하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치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노동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노동

| 1. 요약 |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 자본의 이동 양상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생산 확대를 주 목표로 했던 일본은 1970년대 이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생산지 이동 경향이 강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자본 부족에 시달렸던 한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자본 부족 상태는 해결되었고, 이후 외국인투자는 매매차익을 노린 증권 투자이거나 인수합병 목적의 직접투자가 대부분이었다. IMF 구조조정 이후 무장 해제된 한국 자본 시장에서 이러한 투기적 목적의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구별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여전히 외국

인직접투자에 대해 규제 철폐 일색의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 흐름 전체 과정에서 고용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기보다는 취업유발계수에 외국인투자액을 곱해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대안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대안적 접근법들은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자본 축적률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자본 자유화로 인한 투자 불안정성을 추적한다. 또는 자본의 국내유입액과 국외유출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순고용효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들의 공통점은 규제받지 않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 경제성장 모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는 현재, 정부는 투자 유치 일색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본 이동 통제와 초국적 기업의 고용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제 시민사회운동, 진보정당 진영은 시민들에게 외투기업의 실상을 적극 알려나가 자본 유치와 관련된 사회 통념을 바꿔 나가야 한다.

| 2. 외국인투자의 역사적 변화 : 신화와 현실 |

1)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이동의 형태와 동기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1920년대부터 이미 국제적 생산공장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자본 이동으로 인한 고용 불안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자본 이동의 주된 이유가 노동 시장 유연화보다는 운송 비용 절감, 신흥 시장 확보 등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에 해외공장을 짓기 시작한 핵심 이유는 운송비용 문제였다. 자동차를 수출할 만한 대형 선박이 많지도 않았고, 운송업 자체가 지금처럼 대형화되어 있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내륙 철도 운송, 해외 선박 운송, 모두를 고려하면 차라리 판매지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것이 비용이나 판매에 효율적이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80년대 이전까지 흔히 자본주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에 주요 이슈는 관세와 정부의 산업 정책이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 관세와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초기적 기업들은 관세를 회피하고 해당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직접 짓기 시작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유럽과 일본의 정부 주도 경제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초기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럽과 일본으로 진출했고, 50년대 이후 남미의 내수 중심 경제 개혁 역시 미국 유럽의 초기적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도록 유

도했다. 80년대 이전까지 건설된 해외공장들은 공장 이전보다는 신규 설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고용 문제가 크게 갈등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¹⁷⁾

하지만 세계자본주의는 7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포디움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초 생산기술 혁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핵심 원인인데, 자본간 경쟁은 격화되었지만 자본 투자 대비 생산성 향상은 그에 준하여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자본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¹⁸⁾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실물 투자 대신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자보다는 노동강도와 저임금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노동 시장 양쪽에서 규제 철폐와 유연화를 확대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이다.

저임금 노동을 찾아 공장을 이전한 80년대 이후의 해외투자는 자국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었다. 생산의 전체적 확대가 아니라 생산 비용 감축이 해외투자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¹⁹⁾ 금액으로 본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신규투자보다는 선진국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저임금 지역으로 신규투자가 늘어나며 고임금 지역에서의 투자가 감소되었다. 노조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제약으로 선진국에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규 실물 투자가 줄어들며 일자



17) Surgeon(1999)

18) 윤소영(2008)

19) Eurofound(2009)

리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⁰⁾ 후발 산업국가인 한국 역시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진출 기업의 64%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었으며, 중국 진출 기업 중 44%가 중국 진출로 인해 국내 공장을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²¹⁾

2000년대 이후에는 고성장을 하기 시작한 저임금 국가들인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시장 개척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등의 신흥 시장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었던 미국, 일본, 유럽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2007년에는 중국 수출 기업의 60%가 선진국 초국적기업일 정도로 초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의미는 2008~09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소비가 급감하고 장기간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투자는 대부분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 시장 국가들로 집중되었다. 2009년에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이 형성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판매와 생산 1위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가 반복적으로 위기에 빠지고 주요 선진국이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 Palle Andersen and Philippe Hainaut (1998)

21) 중소기업은행(2004)

〈표20〉 역사적 시기 변화에 따른 생산지 이동 동기와 고용 효과

	1910~20년대	1930~70년대	80~2000년 초반	2000년 초반~
이전동기	운송 문제, 보호무역주의	관세회피, 산업육성정책	생산비용 감축	신흥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
고용효과	시장 확대로 고용 감소 없음	세계적 고성장 으로 고용 증가	저임금 지역 고용증가 선진국 고용불안	신흥시장 고용증가 선진국 고용감소

자료 : KOTRA(2010),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p.64

〈표21〉 2009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신흥국 투자

업체명	모국 혹은 선진국에서의 구조조정	신흥국 투자
GM (북미)	생산직 21,500명 해고 사무직 3,000여명 해고	25억달러 규모 전기차 연구센터 건설 현지 생산 능력 41만대 추가 확대
Ford (북미)	사무직 3,000여명 해고	중국 60만대 규모 3공장 설립 인도 시장 조사 조직 확대
Toyota	(일본) 비정규직 5,000여명 계약해지 (미국) 산안토니오 2,000여명 인원감축, 프리몬트 공장 폐쇄 4,500명 해고	중국에 10만대 공장 신축
Honda	(일본) 비정규직 3,100여명 계약해지 (영국) 4,000명, 2개월 전액 유급휴직 나머지 기간 60% 유급순환 휴직 (미국) 임시계약직 700명 해고	중국에 20만대 규모 공장 증설
Nissan	(일본) 계약직 500여명 해고 (스페인) 581명 해고	인도에 공격적 마케팅 확대
Volkswagen	(독일) 임시계약직 16,500명 해고 멕시코 공장에서 1,050명 해고 계획	중국 남부 지역 판매점 확대
Fiat	(이탈리) 48,000 노동자 유급순환 휴직	인도 소형차 모델 출시 인도 생산 능력 6만대로 확대
현대	(한국) 500여명 비정규직 계약해지	중국 3공장 증설 인도 3공장 증설

자료 : 언론사 종합

한편 세계경제위기 이후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이동 증가는 모국의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기업들의 예를 보면, 지엠의 경우 파산 보호 기간에 2만4천 명 규모의 정리해고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41만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했다. 도요타 역시 일본과 미국에서 1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중국에서는 10만대 규모의 공장 확대 투자를 단행 했다. 폴크스바겐, 르노, 피아트 등 유럽계 자동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한국 현대차 역시 비정규직 계약 해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중국 공장 증설을 계획했다.

2) 한국에서의 변화

외국 자본 유치(이하 외자유치)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한국 사회 통념은 60~70년대 한국 경제 고도 성장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한국 경제는 내전 이후 대규모 공공 차관에 전적으로 의존해 복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약화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더욱 해외 기업 유치에 사력을 다했다. 자본 축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공업화 경제개발계획은 대규모 자본 유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외자 유치를 통한 국내 자본 축적은 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닉슨독트린 직후 발표된 1970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정책, 오일쇼크로부터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던 시기였던 1984년 외국인투자허용 업종 전면 확대 정책은 외자 유치를 위한 대표적 규제 철폐였다. 86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와 더불어 재벌들에 의한 해외 차입이 급증

했고,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1992년에는 노태우 정부가 외국인투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김영삼 정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위해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199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를 완화해 1998년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법제화하였다.

〈표22〉 외국인투자 규제 폐지 주요 정책과 정치적 경제적 배경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폐지 내용	정치적 경제적 배경
1970년	외국인투자에 행정절차 간소화	닉슨 독트린 이후 외자 유치 절박
1984년	외국인투자허용 업종 전면 확대	오일쇼크 이후 회복기의 외자 유치
1992년	외국인투자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대선 전 경제위기
1998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런데 한국의 자본 축적에 해외 자본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기는 사실 90년대 이전까지였다. 86년 3저 호황으로 급성장한 한국 자본주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해외 자본 유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90년대 이후 자본 유입은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위한 무분별한 해외 차입과 자산 시장에서의 매매 차익을 노린 외국 금융 자본의 투기가 대부분이었다. 92년 외국인투자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 2년간 외국인직접투자는 20% 늘어난데 반해 매매 차익 목적의 증권투자는 360% 증가했다.

IMF 구조조정으로 대부분의 자본 시장 규제가 철폐된 1998년 이후부터 IMF

체제를 벗어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저평가된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기성 인수합병이 만연하던 시기다.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한 1998년에는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 7배 이상 급증했고, 경제위기 전인 2007년까지도 외국인직접투자의 70% 가까이는 신규투자가 아닌 인수합병이었다.²²⁾ 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80%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인수합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이나 고용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²³⁾ 오히려 인수합병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인수합병으로 8만8천 명 고용이 감소했다.²⁴⁾

한편 9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증권투자였다. 2000년대부터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10~20% 수준으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는 증권 투자에 집중되었다. 국제적 금융 세계화 흐름에서 보자면 90년대 후반 미국 IT 버블 붕괴 이후 미국 주식 시장에서 탈출한 금융 투기 자본이 미국과 유럽 부동산 시장과 한국과 같은 신흥국 자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대규모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2001년까지도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직접투자는 증권 투자의 20% 미만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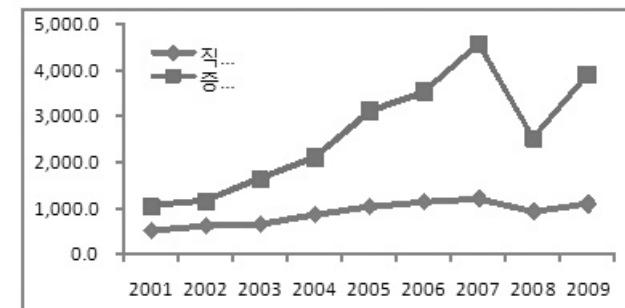


22) UNCTAD (2007)

23) 한국은행 (2002)

24) 한국은행 (2008)

〈그림5〉 외국인 투자 추이



자료 : ECOS DB

외국인투자의 90년대 이후 변화는 한국 자본주의 축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금융화되었기 때문에 이들 외국인 자본이 금융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자본의 변화를 보면 외국인 투자 변화와 비슷하게 실물 투자보다는 금융적 투자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물투자와 관련하여 한국 제조업 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16%에 달했지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의 1/6 수준인 2.8%에 그쳤다. 이는 물론 자본 부족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은 부채 비율을 100% 내외로 하향 조정하며 국제적 제조업 부채 비율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국 제조업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수십조 원에 달했지만 신규 설비 투자보다는 여러 방식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경우 2009년 금융 계열사와 자동차 제조업 계열사의 금융 관련 이익이 1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은행의 2009년 당기순이

의 5천3백억 원에 두 배 가까이 되는 액수다.

〈표23〉 시기 변화에 따른 국내 자본의 축적 방식 변화와 외국인투자의 동기

	70~80년대	90년대 초중반	IMF 구조조정기	2000년대
국내자본의 축적전략	절대적 자본부족 외자도입	자본의 문어발식 확장과 해외치입	부실의 정부 이전 대규모 구조조정	금융화; 초국적 기업화
해외자본의 진출 동인	저임금 노동력 이용	세계적 주식 거품 자산 매매 차익	혈값 기업 사냥과 한국 시장 확대	자산 매매 차익 선진국 유동성 흡입
정부 정책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해외자본 도입	시장 개방 확대	금융기관 민영화 자본부실 사회화	자산 시장 부양 자유무역 협정

한다.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간접적 취업까지를 추산하면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52만 5천명의 신규 취업이 유발되어 같은 기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256만 명의 20%를 차지했다고 분석한다.

박성재·이규용(2008)는 고용보험DB를 바탕으로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이 오히려 한국 평균 고용증가율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2000~2006년 50인 이상 사업체의 연평균 노동자 증가율은 2.7%이나 2000~2007년 외투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7%로 1.0%p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 기간 외투기업의 사업체 생성 혹은 확장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45만개이고, 사업체 폐업 및 축소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가 28만5천개로 순일자리가 16만4천개 창출되었다.

| 3.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 문제 |

1) 기준 분석들

한국은행(2008)은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로 약 15.5만 명을 취업유발했다고 분석한다. 인수합병 식 직접투자로는 8.8만 명이 감소했으나, 신규투자로 20만 명 고용이 창출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15.5만 명 창출되었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제조업의 경우는 사실상 신규 고용 창출은 없었다.

조용수(2006)는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한국은행보다 훨씬 큰 수치를 제시

한편 안정화(2006)는 자본 이동이 국내 자본 축적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며,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핀다.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자본 축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유입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본 축적을 경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임금을 하락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서 분배를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본 이동성 증가로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성장보다는 분배 악화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동국(2004)은 자본 이동 자유화가 기업, 산업 수준에서 미친 변화를 계량적

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한 자본 이동 규제 철폐는 국내 투자의 전체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었다. 자본 이동성이 극대화 된 기업들은 단기적 이윤과 성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재벌들이 그러했다. 이러한 단기적 이윤에 대한 집착은 산업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투자 총량을 줄인다. 외국인직접 투자 역시 1998년 도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투자 총량이 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자본 이동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재벌들만이 큰 이득을 보는 것으로 분석한다.

강성진·이홍식(2010)의 경우 자본 이동성 증가로 인한 고용 효과 분석 시 자본 유입(inflow)과 유출(outflow)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성진·이홍식은 국내유입 직접투자액과 국외유출 투자액에 대해 산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순취업유발계수를 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전방 후방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0~95년의 경우 -38만명, 1996~2001의 경우 -42만명, 2002~08년의 경우 128만 명이 전후방 순취업 감소 효과를 만들었다.

〈표24〉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순취업유발인원(단위 : 백명)

	1990~95		1996~2001		2002~08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1차산업	-319	-245	-65	369	-935	-837
제조업	-479	-671	-149	-153	-1,165	-1,320
서비스업	-964	-1,114	-1,721	-2,543	-3,818	-4,758
합계	-1,762	-2,030	-1,935	-2,327	-5,918	-6,915

출처: 강성진·이홍식(2010)

위 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소멸을 산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취업유발계수가 투자부터 고용, 임금 분배 문제, 그리고 이윤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는 인정한다고 해도, 주류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계산할 경우 자본 이동으로 인한 순취업유발인원은 2002~08년 130만 명이 줄어든 셉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발생했다는 서비스업의 경우도 오히려 전후방 8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주류적 분석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일자리를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주요 근거는 외국인직접투자액,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등을 산업유발계수와 연관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수량적 분석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정부터 문제가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적으로나 통계상으로 외국인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경제부가 정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목록에는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포함된다. 당연히 고용 효과에서 과대 추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유발효과 역시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나 그 고용량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에 근거한 고용에 대한 수량적 분석은 기업 매매 차익, 배당금 등을 노린 다양한 금융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2008년 코

트리가 실시한 외투기업 설문 조사에서는 21%에 달하는 외투기업이 기업(또는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린 자산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56.6%에 달하는 외투기업은 아예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²⁵⁾ 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 현지 생산보다는 혈값으로 인수해 자산 상각만큼 차익을 실현하거나 단기적 납품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다.

〈표25〉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입장 비교

	입장	주요 근거
한국은행	FDI가 일자리 증가시킴	투자액에 대한 취업유발계수 적용
조용수	FDI가 일자리 증가시킴	투자액에 대한 취업유발계수와 전후방효과
박성재·이용규	외투기업 고용증가율이 국내기업보다 높음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실증조사
안정화	FDI는 자본축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고용질을 악화	FDI를 변수로 한 투자함수와 계량 분석
이동국	자본이동 자유화는 전체 투자를 악화시킴	자본이동을 변수로 한 투자함수와 계량분석
강성진·이홍식	자본유출 금안하면 고용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해외직접투자 양자에 대한 취업유발 계수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일면만 분석하는 주류 분석에 비해 안정화, 이동국, 강성진·이홍식 등의 분석은 자본 이동성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



25) 코트리(2010)

도록 한다. 안정화, 이동국이 지적했듯이 자본 이동성 문제는 단순한 투자액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이동성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본 축적 혹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만이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 투자액과 고용 계량 측정에서도 자본 이동에 관한 규제 철폐가 자본 유입만이 아니라 유출에도 영향을 주는 바 강성진과 같이 유출로 인한 고용 효과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2) 한국 외투기업들의 현실

정부와 자본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기술 습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미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기술 습득 역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대부분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한국 제조업 대기업 수출품 대부분이 자체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외투기업 다수가 장기적 투자보다는 배당금 기업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적 투자다. 금속노조 사업장 중 만도 그룹에서 매각된 사업장들이 대표적이다. 만도의 경우 JP모건의 종이회사 센세이지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8천억 원의 자본을 배당으로 빼내갔고, 발레오만도는 발레오가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10년간 약 1,700억 원을 유출한 사례다. 위니아만도 역시 UBS컨소시엄이 99년부터 2005년까지 유상감자와 배당으로 2,072억원을 가져갔고, 캐리어에어콘에서는 미국 UTC가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364억 원을 배당으로 챙겨갔다.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은 한국 기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한 기업의 자본축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배당성향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이익 추구 성향이 크다는 반증이다. 코트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은 35.6%로 국내기업 17.75%보다 두 배 가까이 크다.

이러한 단기적 투자는 해당 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예를 든 사업장들 대부분이 영업이익을 매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통계를 가지고 고용창출률을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외투기업의 사업 축소로 인한 일자리소멸률은 연평균 7%에 달하며, 사업체 신설과 확장을 감안한 순일자리창출률을 보아도 1%에 불과하다.²⁶⁾ 이 시기 경제성장률이 2003년을 제외하면 4~8%였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당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고용보험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 규모까지 합하면 훨씬 더 커진다.



26) 박성재·이규용 (2008)

27) JOSEPH E STIGLITZ, (2007)

28) Yuqing Xing Neal Deter (2010)

29) 아이폰 한 대당 도매가격이 179달리인데 부가가치로 보면 중국은 이 가운데 36%(6.5 달리를 차지할 뿐이다.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아이폰은 1130만대이며, 중국은 20억 2000만달러의 대미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부가가치 금액만 따져보면 중국은 7350만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을 뿐이다. 아이폰을 조립하느라고 미국에서 들어온 부품 수입금액 1억250만달러를 합산하면 오히려 중국이 481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계산된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다. 스티글리츠는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은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진출국의 부가가치를 오히려 수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²⁷⁾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천연 자원 수탈, 저암금, 세금 혜택 등으로 외투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수탈하는 부가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국가정책대학원연구소(GRIPS)에서 아이폰을 대상으로 중국과 미국의 부가가치 이전을 조사한 것도 이러한 예 중 하나다.²⁸⁾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중국이 아이폰 조립 수출로 미국에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부가가치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 오히려 4천8백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²⁹⁾ 다양한 초국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국가별 무역액으로만 흑자 적자를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초국적기업들 역시 비슷하다. 이들은 본사에 대한 기술 사용료, 본사 수입 부품에 대한 고가 매입, 한국 제품의 본사에 대한 저가 수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이전한다. 지엠대우는 매년 2천~5천억 원의 돈을 수출부대비 명목으로 본사로 이전한다. 지엠대우는 이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을 이용한 금융 상품으로도 부가가치를 본사로 이전한다. 2008년 약 2조원의 선물 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손실이 대표적이다. 지엠대우는 환율 변동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도 큰 규모의 선물환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파생금융상품 특성상 같은 상품을 반대 포지션에서 구매할 경우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즉 지엠대우 제품을 매입하는 지엠 본사와 계열사들은 외환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지엠이 회계상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수취한 액수가 지난

6년간 4조원 규모다. 여기에 지엠대우가 미국, 유럽, 남미의 지엠 계열사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저평가되어 영업점에서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가가치까지 고려하면 이 액수는 훨씬 커진다.³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수탈은 장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당장은 초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로 국내 소비와 고용을 만들어 내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소위 국부유출이라고도 불리는 부가가치 이전으로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킨다.

〈표26〉 외투 기업들의 대표적 자본 유출 방법들

주 요 내 용	
고배당	당기순이익에 대해 자투자보다 배당을 통해 국외로 유출
유상감자	불필요한 유상 감자를 통해 국내 자본을 본사로 이전
본사와 불공정 거래	본사, 국외 계열사와 고가 매입, 저가 매출로 부가가치 이전 과도한 외상 매출을 통한 리스크 비용 감당
기술 유출	인수 합병 전 존재하던 국내 기술의 저가 이전
의도적 금융 손실	선물환 거래 등을 이용해 합법적 금융 거래로 자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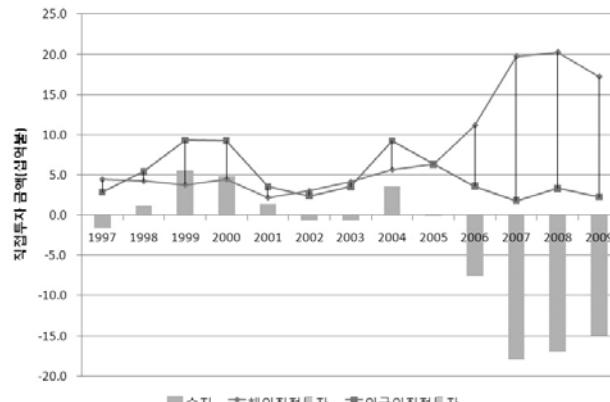
30) 한지원 (2010)

| 4.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경향과 쟁점 |

1) 각국의 규제 변화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2000년대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림6〉 국가수준의 규제 변화 1992~2009 (퍼센트)



출처: UNCTAD (2010)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2009년에 31개의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정책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관련 자료를 수집한 1992년 이래 최고 많은 숫자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① 2009년 많은 정부들이 전략 산업과 국가적 관

심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제를 늘리고, ② 외국기업들이 밀집해 있지 만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분배를 늘리도록 강제하고, ③ 금융·식량 등의 안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④ 기업 의 환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동하고 있다.³¹⁾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9년 ‘외국인 인수 및 합병 규정 개정안’(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mendment Regulations 2010)을 통해 현재 호 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임시 주민에 적용 면제를 제거하는 외국 인수 합병 과 인수 합병 규정 개정했다. 이것은 일시적 주민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재무를 알려야 하는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빙자한 부동산 투 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캐나다는 2009년에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적 이해에 반하는 투자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외부의 국가들이 독일에 투자할 경우 공공이해와 국가적 안 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관련 법 (Amendment to the 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개정을 통해 만들었으 며,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지 산업으로 담배 관련 산업 일체를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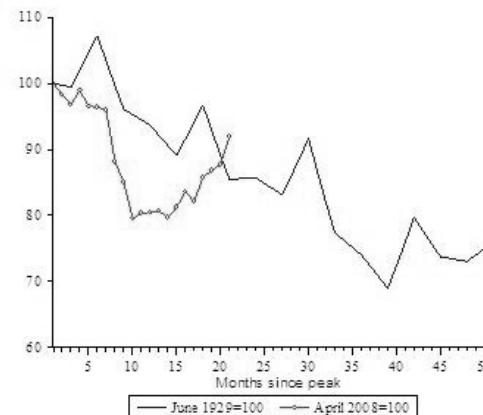
31) UNCTAD (2010)

32) Barry Eichengreen · Kevin H. O'Rourke (2010)

2) 경제위기 이후 동향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생산 감소와 무역거래 감 소를 가져왔다. 에이肯그린의 추정치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에 상대적으로 많 은 영향을 주는 무역량은 대공황 당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소했다.³²⁾ 분 석에 의하면 2009년 중반부터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 에는 미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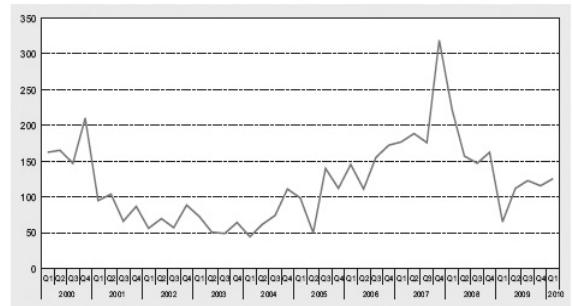
〈그림7〉 대공황과 현재 경제위기 비



출처: <http://www.voxeu.org>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2008년 2분기부터 급락하여 2000년 미국 IT버블 붕괴 후 상황까지 갔으나 2009년 2분기부터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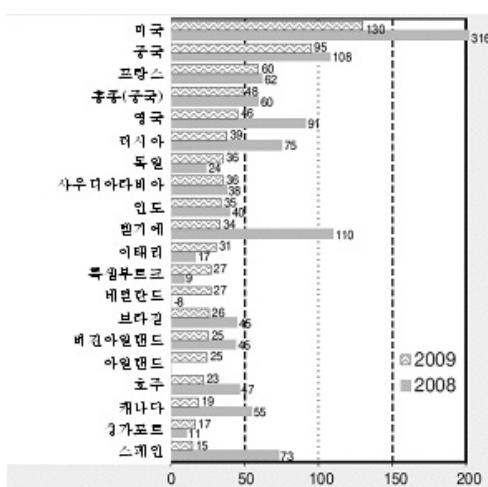
〈그림8〉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 변화 추이



출처: UNCTAD (2010)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을 위시로 한 신흥국 관련 투자만이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홍콩을 합할 경우 그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렸다.

〈그림9〉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출처: UNCTAD (2010)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1/4분기부터 감소하여 2010년 1/4분기 역시 동기대비 감소했다. 2010년 1/4분기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43%가 줄어들었고, 특히 10%가 감소한 제조업에 비해 48%가 감소한 서비스업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화권과 EU의 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대비 89.9% 감소한 40백만 달러,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60.4% 감소한 26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154백만 달러, +877.8%) 및 중화권(159백만 달러, +401.6%)의 투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였으며, EU發 투자 또한 57.4% 증가한 842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및 중화권의 한국 투자는 관광단지 개발 및 물류업, EU 투자는 의약,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세계경제회복세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나 현재 미국의 더블딥 위험, 유럽 재정위기와 그에 이은 은행위기 가능성 등으로 변동 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2010년 1/4분기 회복을 이끈 유럽의 투자는 2009년 1/4분기에 나타났듯이 휘발성이 매우 큰 투자들이다. 중국과 중동 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투자처가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사실상 재무적 투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 IR 강화와 외투기업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이 주요 정책이다.

2000년 미국 IT거품 붕괴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급감에 비해 이번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급감이 더욱 커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직접 투자와 증권투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역사적 경향 역시 주의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직접투자가 ‘장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 중 상당수가 모국 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한 부채 기반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코나 지엠대우와 같은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경제 위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본사가 채무 상환 등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성이 크다.

3)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외국인직접투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국회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현재 타결내용으로 인준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투자환경개선과 대미수출입 전진 기지화를 가져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환경개선의 내용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개방(법률, 회계 등 서비스 산업),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인정,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 교역 증대,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절차 개선, 전자상거래 확대, 금융서비스 거래확대, 노동·환경기준 상호 조화, 입법예고 등을 들고 있다. 대미수출입 전진 기지화의 내용으로는 대미 수출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일본, 유럽, 중국 등에 비해 우

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³³⁾이 유리하고, 우리 수입시장에서 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EU, 일본기업들³⁴⁾의 투자진출 필요성 증대한다고 분석한다.³⁵⁾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0년 말 자동차부문에 개정된 새협정은 기존 효과를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³⁶⁾ 대부분의 경제 언론들도 4년간 관세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관세가 높고,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자동차부품으로 인해 현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무엇보다 재벌대기업들의 수출 증가가 국민 전체의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예를 보자. 현대차는 2000년 18조 원의 매출 중에 7조7천억 원이 수출이었고, 2009년에는 이보다 배가 늘어난 31조8천억 원 매출 중에 15조8천억 원이 수출이었다. 하지만 정작 현대차가 고용한 노동자는 2000년 4만9천 명에서 2009년 5만6천 명으로 14% 증가에 불과했다. 현대차의 국내 투자 수준을 볼 수 있는 유형자산 역시 2000년 8조4천억 원에서 2009년 9조7천억 원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반대로 고용과 크게 연계되지 않은 자산인 현금성 자산은 같은 기



33) 우리의 대미경쟁력 우위산업 :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

34) 우리의 대미경쟁력 열위산업: 과학장비, 정밀화학 등

35) 장윤종(2007)

3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간 3조에서 10조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총생산에 재벌 대기업들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재벌의 매출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벌들의 부일 뿐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부는 아니다.³⁷⁾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재벌들의 국민 경제와 분리된 성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그나마 한국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품 중 일부마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현대차의 곳간은 더욱 커지겠지만 한국 내 고용과 투자는 전혀 늘 이유가 없다. 현지 생산이 강화될수록 기존 한국 공장의 수출 물량은 미국 내 수요 증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에 생산 신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 신축성을 위해 현대차 경영진은 물량 조절에 따라 해고와 재계약이 자유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많이 고용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신규 일자리는 고사하고 기존의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15년 일찍 미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양상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관세 철폐로 지역별 생산 조정이 수월해 진 캐나다의 빅3사(지엠, 포드, 크라이슬러)는 자유무역체결 후 설비투자를 대폭 줄이고 공장을 최소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유지했다. 경기 변동으로 물량이 모자라면 멕시코나 미국에서 물량을 수입해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자리 역시 신축적 생산 조정에 적당한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이러한 결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비정규직이 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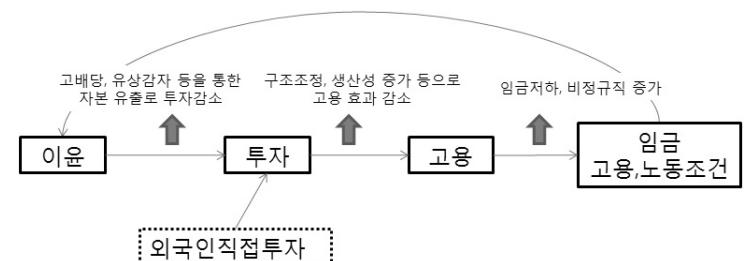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유럽계 초국적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경기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철폐로 인해 부족한 물량을 국외에서 직접 수입해 오는 것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 5. 소결 |

〈그림10〉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 관계



위 그림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자본의 (실물)투자로 짧은 기간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듯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고용 유연화로 전체적인 고용 증가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극단적 반노조 정책, 국제적 외주화, 자본 철수 압박 등으로 저임금을 강

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임금 분배 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은 이윤은 상승시키지만 이 이윤은 다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고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외로 유출된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는 줄어들고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약화된다.

따라서 세계적 경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는 현재, 정부는 투자 유치 일색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본 이동 통제와 초국적 기업의 고용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진영, 제 시민사회운동, 진보정당 진영은 시민들에게 외투기업의 실상을 적극 알려나가 자본 유치와 관련된 사회 통념을 바꿔 나가야 한다.

3장 외투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대응 방안

외투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대응 방안

| 1. 요약 |

지난 1997년 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외국인투자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기업과 금융의 개방성과 시장규율이 강조되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유치가 당면과제로 제시되었다. 외국자본 유치의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외국자본유치와 외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다.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조세감면(Tax holiday)’ 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의 성격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폭과 대상이 각국 정부 사이에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온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영구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정한 지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들은 이

른바 ‘현대판 조차지(租借地)’라 불리울 정도로 각종 규제의 특혜 대상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제도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포기하고 다국적 자본에 의존한 개발발전 전략의 일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 KISC)라는 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알선 조직 그리고 중앙부처에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기획재정부),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소위원회(지식경제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이에 반해 노동조합의 개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방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각국의 정부가 내재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개방화, 자유화 정책을 그 대안 정책으로 추진해 온 탓에 제도적 환경은 친자본적 성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국자본 신화에서 벗어나 고용불안과 조세체계를 왜곡시키는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적 대응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의 정상화

현재의 조세정책은 외국자본에 공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익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자본 유치라는 정책적 목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만 확대시키고 있다.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둘째, 공적 지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는 ‘사전 고용평가’를 의무화

저고용과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고용효과를 배제한 경제운용 정책’은 정당성과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에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시급히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의 도입

우리나라는 외국자본과 외투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준행정기관의 형태로 무수히 존재하지만, 외국자본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 무수히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기관들은 통폐합하고 외국자본의 유입 단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나라,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CFIUS는 의회와 여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고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전 검토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한다.

| 2. 외투기업 지원 제도 현황 |

지난 1997년말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외국인투자 정책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 과잉 투자가 지목되고 정경유착과 같은 이른바 ‘비시장적 관행’이 지목되면서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안팎의 압력이 거세졌다. 기업과 금융의 개방성과 시장 규율이 강조되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유치가 당면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첫째 자유화폭의 확대, 경영 생활여건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업 환경 개선, 둘째 세제 입지지원 등 지원제도 확대, 셋째, 행정 지원제도로서의 절차간소화와 투자유치관련조직의 정비를 추진하였다.(박봉규, 김용덕(2004))

먼저 자유화 폭을 확대하면서 당시 1,19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의무, 국방 등 47개 업종을 제외한 사실상 전 업종을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업과 관광업의 자유화, 부동산 시장의 개방 그리고 적대적 M&A 허용도 이루어졌다.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개방 시기를 사전 예고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제의 도입, 파견근로의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하였고 노조전입자 급여지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는 등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하였다.

〈표27〉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기조의 변화

단계	주요 내용
투자제한단계 (196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보다 차관우선의 외자유치정책 추진
기반조성단계 (198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업종별가방식에서 금지 및 제한업종별가방식으로 전환 •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 지분제한 철폐
자유화 단계 (199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신고제 도입(1991) • 원칙신고, 예외인기제로 전환(1992) • 외국인투자기방 57개년 계획 수립(1993) • 공장설립과 관련 복합민원 일괄합동심의제와 민원자동승인제 도입(1995) • 우호적 M&A 투자 허용(1997)
유지촉진단계 (1998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추가 개방(1998. 4~5)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 • 외국환거래 자유화(1998. 6) • 외국인투자축소 전면 개방(1998. 7) • 규제개혁 및 4대부문 개혁추진

〈표28〉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현황

	내용
기본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지원부 고시)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지원부 고시)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규칙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종전의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운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법 등

출처 :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 재정비 (<http://www.investkorea.org>)
자료 : 흥자법(2008), p.38

외국자본유치와 외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여기에는 국세 지원 이외에도 관세 감면과 각종 지방세의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법령들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에 복무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자유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대외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적용배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제한의 공고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와 관련된 63개 업종(제외업종)을 제외한 1,058개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투자대상 업종 중 28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제한업종)이 있다. 제외업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9〉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제한 현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식량 작물재배업 (01110)	벼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 허용
육우사업법(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근해어업(05112)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연안어업(0511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신문발행업(22121)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22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핵연료가공업(23300)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 원자력발전업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40110)	– 외국인이 한전으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이어야 함
송전업(4012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 일 것
배전 및 판매업(40122)	외국인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음
육류도매업(51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경우 허용
내향여객운송업(61121)	– 허용대상 :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내향 화물운송업(61122)	– 대한민국 선사와 합작될수, 외투비율 50% 미만
정기 항공운송업(6210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부정기 항공운송업(62200)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 이이 소유 하는 주식의 합(의결권주식에 한하며, DR등 의결권을 가 진 주식등기물 및 출자자분 포함) 이 그 발행 주식총수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면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 불가, 5% 미만인 경우는 허용)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증권거래법에 36조 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법인
국내은행(65121)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라디오방송업(87211)	〈미개방〉
텔레비전방송업(87212)	〈미개방〉
방송채널사용업(87221)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동합편성 및 복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872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단, 중계 유선방송사업은 미개방)
위성방송업(87223)	외국인 투자비율이 33% 미만인 경우 허용
뉴스제공업(88100)	외국인 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30)	전기사업법 82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출처 :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 재정비 (<http://www.investkorea.org/>)

자료 : 흥자법(2008), p38

1) 외국인 투자 유인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기타 지원 부문이 있다. 네 가지 부문은 조세지원, 관세지원의 조세 지원과 함께 현금지원과 입지지원으로 분류된다.

가. 조세지원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증자 법인의 경우에는 증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 지원은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투기업,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외국기술자 그리고 외국투자가 주식양도차익이 그것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부록 참조)

나. 관세지원 제도

관세지원제도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특정한 지역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 특정한 지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해당되며, 사업이라 함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투기업의 사업 전체를 말하거나 개발사업이나 제조업, 그리고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지원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까지

도 면제해 준다.

다. 현금지원제도

외국인 투자지원은 현금지원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인효과가 가장 큰 지원제도는 법인세 감면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세감면은 한시적 성격을 띤다. 그런데 한시적 조세감면은 반드시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h & Tabye(1978)). 조세감면의 규모와 방법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불리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금지원은 공적 자금을 직접적으로 사적 기업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그 효과마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공장시설 신·증설)에 대해 외투기업이 해당된다. 투자액 1천 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업, 투자액이 5백만불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산업 분야의 R&D(단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 규모가 20인 이상)라는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금지원 제도는 그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데 예컨대 고도기술수반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지역·국가경제에 파급효과, 프로젝트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현금 지원율은 협상을 거쳐 최소 외국인 직접투자의 5%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상한선은 비공개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지

원받은 현금지원액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토지 매입·임대료,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감시할 기구는 사실상 없다 할 것이다.

라. 산업단지 및 입지지원

2004년 이후부터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입주 기업 외에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산업단지 및 입지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 보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산업 단지와는 별도의 입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과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입지를 임대해주는 형태를 띤다.

업종별로 5~30백만불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활동 공간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하거나 입주기업에 대해선 부지매입비의 1% 범위의 저렴한 임대료와 업종별로 5~10백만불 이상 투자 시 조세감면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 시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주거, 교육, 의료시설을 설치해 주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포괄적인 산업 입지를 제공한다.

마. 기타 지원

이외에도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금지규제나 각종 자본규제 및 환경규제에서 제외시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0〉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타 지원 제도

내 용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임대료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 임대료 : 토지 등의 가액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자역 산업입지 및 개발어판한법률에 의한 국가 - 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cash-grant)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다.
출자총액 제한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함 다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p>〈참고〉2006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2006.4.1기준)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 기업집단</p>
외국인투자자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자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자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밀약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한다. - 외투기업의 예외 적용 :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 - 허용 조건 : 산업용 가스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한함,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일몰조건 : 2007.12.31까지만 허용

총자본(2008), p.52

2) 정책적 지원 현황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조치를 단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단계에 들어갔다. 1998년 11월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국가 간 외국인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cash-grant)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였다.

2005년 5월에는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 업종 기준으로 투자 자유화율은 99.8%로서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는 외환 및 금융 분야도 자유화하고 외국인위 토지취득을 허용하였다. 이제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 없이 국내에서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원과 조세지원 등의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 KISC)는 2003년 12월 Invest KOREA로 재출범하였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 신고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보육과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 유치 등의 알선업무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기획재정부), 외

국인투자실무위원회(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소위원회(지식경제부)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 3. 제도적 환경 변화를 위한 대응방향 |

노동조합의 개입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초국적자본은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개입은 전통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기업 수준에서의 대응력을 기반으로 현실화되어 왔다.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하는 이러한 개입방식은 해당 사업장의 생산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초국적자본의 의사결정은 생산관계의 유지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초국적자본은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또는 개별 기업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대응은 단위 사업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 맥락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노동권을 강화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

둘째, 국제적 노동연대를 강화

셋째, 자본 유출입 통제 강화

넷째, 국가의 산업정책 전환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셋째는 부록에서 그 방안들을 상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시하였다.

FDI를 유치하고자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역으로 가져가는 산업정책의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FDI와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아일랜드는 1960년대에 보호무역 정책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보였으며, 외국기업이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었다. 이와 동시에 고용안정을 중심축에 놓는 재정운용정책과 사회적대타협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외투기업이 갖는 투기적 성향을 제어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에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1980년대 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자문그룹의 보고서는 외투기업 유치과정에서의 국내 산업과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주목하였다.

오히려 선택적 자본유치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본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미 중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아일랜드보다 월등히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에서 더 많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선택적 자본 세계화' 전략이 고용안정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일랜드 정책당국은 재정지원이 실행되기 전에 요구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고용과 관련된 지원의 경우 실제 고용이 발생한 시

점에서 지원금의 반을 지급하고 1년 후 여전히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나머지 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파견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의 진전이나 변화를 모니터링하도록 되어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 기업이 초기에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10년 기간 동안 지원금을 다시 환수하는 조항(cashback provisions)을 신설하였다. 이 환수조항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를 통해 이른바 ‘먹튀 자본’의 남용을 막는 효과는 크게 발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찰과 모니터링은 노자갈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발휘되었다.

1) 실효성 없이 역차별 효과만 발생시키는 조세정책의 전면 재검토

우리나라는 IMF를 기점으로 외자유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자본 유출입의 개방화, 자유화를 가속화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외자유치의 목표가 단순히 자본 확보의 차원을 넘어 기술 도입과 산업 구조조정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외자유치 정책이 기존의 소극적 체제에서 전략적 유치를 위한 적극적 체제의 일환으로 성격이 규정된 것이다.

적극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자리잡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타 국가 또는 지역과 다국적 자본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된 데 있다. 경쟁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 조세지원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추진한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경쟁적으로 조세 감면 수준을 높여 왔다.

한국의 경우 외자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정책의 대폭 확대가 15년에 가까워 올해 따라 기존의 정책들이 갖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비판해야 할 시점이 도래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유치 확대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감면되는 세액 규모는 1999년 455억 원에서 2005년 5,503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155.3억 달러에서 115.6억 달러로 25.6% 감소하였을 뿐이다. 2005년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11조 8,410억 원인데, 감면규모를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규모가 거의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전망은 아직 선부른 상황이나 그 이전인 2007년까지 외자유치는 2004년의 최고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FDI 신고금액 기준) 결국 조세 지원을 통한 유인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세액 감면의 부담만 국민경제가 떠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지원의 효과가 의문시 됨.

조세지원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율에 대한 투자액의 탄력성이나 감면을 고려한 유효세율의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그러하다. 심지어 외국인 투자지원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조세감면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조세가 외국인 투자결정의 제1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조세가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가를 직접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에서도 조세는 여러 고려요소 중에서 중요도에 있어서 그 순위가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은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을 인하하거나 감가상각제도, 각종 세액공제제도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을 인하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유효세율을 인하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외자유치효과는 거의 없고 세입만 감소시킨다면 이는 실효성 없는 정책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국내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효과 발생.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것이 조세감면(tax holiday)의 사전적 의미이기도 하다. 항구적인 조세면제가 아니라 조세감면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현행의 조세지원 제도가 본질적으로 국적 기업을 역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수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어야만 조세감면이라는 역차별을 한시적으로 용인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의 각종 조세지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시행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지원의 확대 추세에 따라 조세지원 대상의 요건이 되는 투자규모와 조세지원의 내용이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 일정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고용평가’를 의무화

가. 고용평가의 필요성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에만 매몰되어 이루어져 왔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이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질서에서 한국 정부는 차별적이고 선택적인 외국 자본 유치가 아니라 무차별적이고 수동적인 외국 자본 유치의 입장에 서 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질서에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BRICs로 대표되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앞장서서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자본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 참조)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저고용과 고실업이 일상화되는 구조로 접어듬에 따라 ‘고용효과를 배제한 경제운용 정책’은 정당성과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에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법제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각 국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는 정부 정책평가의 일부분으로써 접근되어 왔다 (이인재 외(2008) 참조). 정부 정책의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및 환류를 용이하게 하고 애초의 정책목표가 왜곡되지 않고 고용성과로 나타나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각 국의 고용 영향에 대한 평가는 성과관리 및 예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공적 자금이 사적 이익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아래는 외국인 투자와 지역개발에 대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고용 평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31〉 각국의 고용평가 사례

사전평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선택적인 재정보조금 제도	낙후지역내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또는 유 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지원
	영국	선택사업 투자지원제도	일자리 수, 질적 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신규 일자리 1개당 2만파운드 한도내 지원
	웨일즈	중소기업 대상 의회투자보조금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신규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총 임금의 25~50%)
	북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	•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공장건설비, 기계설비 구입비의 50%까지 현금지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창업초기 3년간 차등 고용보조금 지원
	스웨덴	지역개발정책	북부지역(낙후지역)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보 조금 차등지원
	프랑스	지역개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고용창출규모를 기준으로 평가 지원규모 결정시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활용
	독일	지역적 산업구조 개선	낙후지역(동독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미국	일자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중소기업매출액 5억유로 미만, 창업 5년이상) 투자로 일자리 창출시 자금 지원
중간점검	영국	중소기업용자 프로그램	용자금 5만불 당 (제조업은 10만불당) 1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조건부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영국	지역개발정책 선택사업 투자지원제도	지역개발정의사업성과는 년 2회 평가 주기적으로 고용효과 등 보조금 지급조건의 이행 정도를 평가
	독일	일자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감독관이 설문조사
	영국	선택적인 재정보조금 제도	지원 수혜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00여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 실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 선별보조금	보조금에 따른 일자리창출 실적을 사업성과로 발표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스웨덴	지역개발정책	사업성과 및 고용창출상황 파악
	프랑스	외국인투자 유치	고용창출실적을 기준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덴마크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성과를 점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평가
	네덜란드	외국인투자 유치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과지표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발표
	미국	중소기업용자 프로그램	2년 동안 고용창출(유지) 여부 등 융자집행내역을 제출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23일

나. 정부의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사전 고용평가의 요건

사전 고용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기술영향평가제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종 사모펀드와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우리는 이를 바 '먹튀 자본'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음을 목도해 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안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장기 투자와 고용 안정을 해치는 각종 자본의 유입은 수년 이내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개입해야 할 정부로 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의 이익을 대리한다는 기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노동의 개입 지점을 확보해 가지 못한 점은 우리들의 책임 방기 또는 전략 부재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표32〉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한계

주요 내용	기대 효과(이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력 제고를 각종 경제·산업정책의 중심 목표 하나로 선정 • 정책에 대한 사전 – 중간 – 사후 평가 통합적인 접근 추진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중심의 패러다임 확산에 기여 - 정책 평가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 추진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행 동력이 극히 희박 - 이해관계자가 바제된 정책 연구자 중심의 체계

그러나 이 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상의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 한계는 무엇보다 현 정부 스스로가 고용을 파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고용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각종 영향평가제도와 타당성 평가제도가 이번 정부 들어 요식 행위로 전락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쌍용자동차의 예에 적용해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안이 갖는 한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사건의 발단은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4년 상하이 자동차로의 매각 시에 고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던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5,900억 원이라는 혼값에 쌍용자동차를 사들이면서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600명 정리하고, 2008년 350명 희망퇴직 처리에 이어 최종 부도(실제로는 자본 철수 결정)로 이 약속은 완전한 허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먹튀 자본’에 대해 책임을 물고 지분을 소각해야 마땅하다. 또한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004년에 했어야 했던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급하게 법정관리인의 정상화 방안을 따져 보는 일이다.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강경, 점거 파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36% 정리하고’라는 가공할 인력 감축 계획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완성차의 인력 감축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완성차 업체는 하청업체들에게도 자신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연쇄적인 인력 감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폭압적인 인력조정에 대한 개입의 방안으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방안은 이런 점에 있어서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 고용평가’의 핵심 논점을 정리해 보자. 이 제도의 핵심은 자본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해당 자본이 고용창출 또는 유지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제출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제도화, 법제화할 것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사전적 검증’ 이외에 또 하나의 핵심은 대중적인 평가, 공론장에서의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나 기술영향평가가 주는 교훈에서 출발한다. 이들 기존 평가제도가 형식화 또는 요식화된 것은 전문가 중심의 평가라는 데 있다. 전문가 중심의 평가는 제도권화되어 있는 학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주의는 객관성의 외피를 입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전문가(위원회)가 관료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공권력을 보유한 관료의 협조 없이는 전문가들의 결정 자체가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 평가는 채무 조정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와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구조조정이라 함은 법정관리와 회의 신청 등 법적 조치도 포함되며,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는 기업의 유치 또는 인수도 포함된다. 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본은 고용의 유지 또는 창출 규모와 그것의 실행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 계획의 타당성과 진정성을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참고

“사전 고용평가”의 요건

1. 핵심 내용

- 정부 또는 공공 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사전적으로 고용 영향 분석(employment impact analysis)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고용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써 고용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아래 적용 분야에서 법률인의 수정(유형 1), 매각 결정 취소(유형 2), 계획안의 수정(유형 3), 이해관계자 공청회(모든 유형) 등에 대해 권고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결정함

2. 적용 분야

유형 1 : (거시) 경제정책의 수립 과정

- 각 정부부처는 예산 편성 과정의 일부로 고용 목표를 명시하도록 함
- 정부와 의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에는 고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법률안에 대한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음

유형 2 : 구조조정과 연관된 법률적, 행정적 조치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 국책은행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회생 절차(법정 관리)에 돌입한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회생 계획 수립 등

유형 3 : 기타 분야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 공공기관의 장기 복선계획 수립
- 그 외 고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3. 법제화의 필요성

- 사전 고용평가 특별법의 제정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 연계함

3) 개별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가부권을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的 도입

가. 해외의 외국자본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자국기업이 특정한 조건-국가안보, 경제안보, 공공질서유지 등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시장 원리’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 매우 광범하게 외국인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를 규제하고 있다.

아래는 각 국가의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를 정리한 것이다.

*출처 : 전승철 등 (2005)

미국

• 엑스-플로리오 (Exon-Florio)법 (1988)

1986년 일본 후지쓰사가 미국반도체회사인 페어체일드를 인수하려고 하자, 미 의회는 “외국인이 미국기업의 M&A 또는 실질적인 자매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엑스-플로리오(Exon-Florio) 규정을 1988년 도입. 이 법이 발효된 직후 일본 후지쓰사가 페어체일드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었고, 이후 이 법에 따라 매각에 제동이 걸린 사례는 10여 건에 이를.

• 외국인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2007)

- 국가안보 관련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확대, 강화
- 외국정부가 통제하는 인수 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엄격히 함
- 이른바 ‘경제안보’ 관련 조항 6개 요소 추가

일본

• 외환과 무역법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질서유지에 빙하거나 공공 안전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무부 및 관련 산업장관은 심사 후 필요시 해당 투자의 변경 또는 중지를 권고

영국

• 공정무역법

정부가 공공이익에 반하는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 철회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공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는 국내 경쟁관계, 소비자이익, 산업과 고용의 균형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산업법 (1975)

국익에 반하는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의 인수를 규제하고 있다.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군수, 항공과 같은 방위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프랑스

• 화폐재정법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정식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행해진 투자는 제한됨

캐나다

• 캐나다투자법 (1985)

외국인에 의한 소기업 인수나 신규기업설립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나 대규모 기업에 대한 인수는 심사대상

호주

• 외국인 인수합병법 (1975)

외국인 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등 특별한 경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재무부 신고와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 외국인심의위원회는 1999년~2003년 기간 중 외국인 총투자 제안 18,100건 중 298건을 기각

독일

• 외국무역수지법 Foreign Trade and Payment Act. 2008년 8월 13차 개정

- EU 역외국의 독일기업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 공공정책 또는 공공안보의 보장을 위해 대외무역 및 자본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함. EC 조약 46조 및 58(1)를 해석기준으로 함
- Volkswagen 법(2009년 개정)
- 니더작센 주의 M&A 거부권을 유지하려는 의도
-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분쟁 중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이른바 '자유시장 원리'가 가장 잘 지켜진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이다. 미국은 Exxon-Florio 법안(1988년 제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만 규제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은 최근 '경제 안보'라는 개념까지 포함시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진입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은 CFIUS라 불리는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두고 1990년대에 1,000여 건이 넘는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인수 타당성 심

사를 실시하고 8건의 투자철회와 투자금지 처분을 발효시켰다.

Prabhakar(2009)는 이러한 CFIUS의 기능을 ‘거래파괴자(Deal-breaker)’라 규정하였다. CFIUS는 주로 의회를 통해 외국자본 기업인수의 과정에 각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찰시키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나. 한국의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주로 1998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개별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사전에 신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자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미국과 같이 포괄적 규제를 실행할 수 있는 심사기구를 두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있는 위원회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있는 위원회들은 모두 투자유치와 외투기업 지원의 성격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물론 특정 분야별로 개별법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 은행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OECD 자본자유화유보 항목인 항공, 통신, 해운,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그 특수한 예라 하겠다.

OECD 자본자유화유보 항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유사하게 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제한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의 차이는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 유출입과 외투기업 규제를 위해 한국판 엑슨-플로리오 법안을 추진

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왔고 정부 내에서도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검토가 2000년대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일부 외환규제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정책은 폐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서의 검토는 2000년대 초반부터 투기성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및 헐값 매각 사례가 빈발하고 2004년 경 신용대란 위기 이후 급격히 외국자본 유치가 감소한 것이 검토의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투기성 자본의 폐해가 크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정책은 도입되지 않았다.

다.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방향(Jackson(2009) 참조)

최근 세계 각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이로 인한 내수산업의 공동화, 고용불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으로 떠오른 사건 이후 “폭스바겐법”이 개정된 것과 미국에서 엑슨-플로리오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정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고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계 기업의 유출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규제 장치는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的 도입과 독일 폭스바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거부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흩어져 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를 심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는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를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 의회를 통하거나 기타의 절차 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2007년의 법개정을 통해 CFIUS의 공식결정 이전에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잠재적인 이슈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해당 기업은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한다. 이 때 검토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고 CFIUS 위원은 공식 검토 기간 이전에라도 잠재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권한을 갖는다.

CFIUS는 공식 검토기간인 30일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 핵심 기술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의회가 지정한 12가지 요소에 대해 고려하는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는 투자자의 성향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어떤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는지(특히 외국정부와의 관계)와 같은 요소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CFIUS의 모든 위원들이 이상의 요소들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동의할 때에만 검토가 종결된다. 만약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45일간의 추가 검토기간을 갖게 된다.

미국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설치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 또는 의회를 통한 간접 참여를 통해 사회 각 계급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전 검토 또는 투자자의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는 의회 방식이

아니라 거부권을 부여받는 유엔 안보리 방식을 차용하여 전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전원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 검토기간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소수의견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면 된다.

| 4. 소결 |

한국 정부는 1997년 말 이후 외국인투자 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유화, 개방화를 확대하고 적극적 유치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각종의 법령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출입과 외투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외투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조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중심으로 하고 지방정부와 준 행정기관을 동원한 입지 지원,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종합적 지원과 함께 노동, 환경 등 각종 법령에서의 예외적 특혜 지원으로 다방면화되었다.

외투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한국 내의 외국’을 확대하는 정책과 결합되어 있고 이는 국내의 자생적 산업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상의 제도적 환경은 조세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제도적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적 기업에 대한 역차별, 내국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 회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중이다. 외투기업이 국민경제의 충실향한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특혜성 조세 감면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조세 감면(tax holiday)라는 용어 자체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글로벌 경쟁’, ‘외환의 확보’라는 이유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현재의 조세감면 제도는 그 용어가 뜻하는 바대로 시한을 완료시켜 정상화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는 정상화의 방향 위에서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는 ‘사전 고용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저고용과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고용효과를 배제한 경제운용 정책’은 정당성과 국민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에 있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시급히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준행정기관의 형태로 무수히 존재하는 외투기업 지원 기구를 통폐합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유입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CFIUS와 같이 의회와 여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검토와 정보 제공 의무를 외국자본에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먹튀 자본’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4장 외투기업 노자관계의 특징과 쟁점

외투기업 노자관계의 특징과 쟁점

| 1. 요약 |

외투기업의 노자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세계화는 국민국가 정부의 규제 능력을 초월하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민족경제가 하위로 편입되는 세계경제체제를 함의한다. 이처럼 초국적기업이 세계화 운동의 중심에 섬에 따라 외투기업의 노자관계는 세계화와 따로 떼어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 노동의 입장에서는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갖는 특수성과 불리한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응전략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투기업 노자관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배경 가운데 다섯 가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투기업이 일국 내 노자관계 시스템을 교란시킴

외투기업의 이질성은 무엇보다 국경 밖에 의사결정의 정점을 두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다국적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현지의 지사에 있지 않고 본국의 본사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본사가 이를 통제한다는 점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외투기업의 의사결정 분권화를 통해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킴

노자관계의 경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관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관행을 따를지 여부에 대한 지사들의 자율권 수준이 중요하다. 지사의 노자관계에 대한 자율성은 본국이 부여한 지사의 전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작동될 것이다. 심한 경우 지사를 통해 본국 기업으로의 가치 수탈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외투기업의 진출 목적이 노자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종종 작동함

예컨대 그린필드 투자와 증권투자로 외국 자본을 구분한다는 경계가 현실에서는 매우 모호하며, 그린필드 투자라 하더라도 투기적 성향에 따라 자본의 목적은 큰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단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할 경우 노자관계의 안정화에 대한 자본의 관심은 줄어들게 된다.

넷째, 의사결정의 회피가 극단적 노자갈등을 증폭시킴

초국적기업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본사에 간명하게 집중되는 반면, 현지 지사 차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복잡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노동조합은 많은 경우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

해지곤 한다. 예컨대, 현지 경영진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진정한 결정권은 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제가 다수 발생한다. 현지 경영진은 본부의 지침에 따르다고 하고, 본부는 현지 경영진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은 연쇄적인 증폭과정을 통해 노자관계를 전투적 상황으로 몰고 가게 만든다.

다섯째, 경영 정보의 불투명성이 노동조합의 접근성을 떨어뜨림

외투기업은 경영정보 공개의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형태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초국적기업의 복잡한 국제전략과 광범한 활동의 전모를 이해하기 난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초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가격이전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지사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임금 압박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 2. 도입 |

외투기업의 노자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세계화는 국민국가 정부의 규제 능력을 초월하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민족경제가 하위로 편입되는 세계경제체제를 합의한다. 이처럼 초국적기업이 세계화 운동의 중심에 섬에 따라 외투기업의 노자관계는 세계화와 따로 떼어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동반한 세계화가 확대되는 과정은 이전 시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전 시기 외국자본의 진출은 높은 수준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를 저임금국가로 이전하는 국제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국제분업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부문까지 해외로 이전하는 형태를 종종 드러낸다. 종래의 구 국제분업이 주변국가의 저임금과 낮은 고용조건을 이용한 저비용의 제품을 생산하여 중심국가로 재수입하는 사회적dumping(social dumping)의 형태를 취했다면 새로운 국제분업에서는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신국제분업체계에서는 외국 투자자본이 주변국과 중심국 사이에서 뿐아니라 북미 유럽 동아시아로 구성되는 소위 ‘삼각지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선진국-후진국보다 삼각지대 내부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화와 외투기업은 구 국제분업과는 달라진 자본전략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외투기업의 자본진출 목적이 단순히 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출대상국의 시장침투나 고급 기술력의 활용 등 여러 요소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국들(NICs)이 사회적dumping의 대상국가로부터 탈피하였고, 확대된 구매력-주로는 자본재 구매력-을 보유함에 따라 국내시장을 겨냥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상의 맥락에서 외투기업 노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범주들을 고찰해 보자. 아래의 범주들은 외투기업 노동조합의 규제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배경에 관련된 것들이다.

| 3. 외투기업과 일국 내 노자관계 시스템의 교란 |

외투기업은 국민경제 단위로 형성되는 노자관계 시스템에서 이질적인 존재임에 분명하다. 외투기업의 이질성은 무엇보다 국경 밖에 의사결정의 정점을 두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다. 다국적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현지의 지사에 있지 않고 본국의 본사에 있음을 분명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본사가 이를 통제한다는 점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본사의 경영진은 일국 단위의 시스템 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의 국경을 넘어서서 이동하는 선택지를 가지고 전략적 결정을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 지사의 경영진은 일국 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율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본사의 전략적 결정은 일국 경제 내의 집단들의 통제 영역 밖에 위치하게 된다.

결국 각국의 정부와 노동조합들은 다국적 거대 기업의 촉수만을 대응하게 되고, 일국적 노자관계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운 다국적 거대 기업의 일방적 국제 전략 구사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국적기업이 노자관계에서 갖는 힘은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생산을 국제적 차원에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한 나라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축소, 폐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지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지사로 생산설비를 일부 이전시킬 수 있다. 어떤 지사의 노자관계가 갈등적 상황으로

치달아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나라 생산설비를 이용해 이를 보충하는 선택지를 가지기도 한다.

초국적기업이 자본철수나 축소를 무기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적 생산조직을 통해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자본의 이동성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본국에 두고 주변부 역량만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세기 후반 이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 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유연생산 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만큼 초국적기업으로서는 생산설비의 이전, 축소, 폐쇄가 용이한 체제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해 온 외환 자유화 조치와 외자유치 촉진 조치들도 노자관계에 있어 초국적기업의 협상력을 상승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자율조정을 최우선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한 조정은 배제시키는 것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정부 규제 역시 약화되고 있다.

이상의 맥락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다국적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은 집단교섭과 단체행동이라는 비(非) 시장 기제를 통해 고용과 노동소득을 확보하는데, 그러한 활동방식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 또는 사업장 수준의 노자관계 문제로 한정

되지 않으며 일국의 노자관계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키게 된다. 자유로운 자본이 동, 글로벌 공급체계, 신자유주의화하는 정부를 배경으로 다국적 외투기업들은 일국의 노자관계 시스템이 함축하고 있는 임금체계, 문화적 관행을 종종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 4. 외투기업의 현지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 |

초국적 기업이 모국과 진출국 사이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은 노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표준적인 제품 생산 글로벌 생산체계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지사들 간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반면, 각 지사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현지 제도와 문화에 적응하는 현지화를 필요로 한다.

현지화의 필요성은 초국적 기업의 각 지사들에 대한 의사 결정 위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노자관계의 경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관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관행을 따를지 여부에 대한 지사들의 자율권 수준이 중요하다.

이전 시기와 달리 1980년대 이후에는 노자관계에 관한 지사들의 자율권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60~70년대에 미국이나 일본의 초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들 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조직의 정점에서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집권적 노사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점차 확인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사 경영진이 현지 노자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변동에 더 잘

적응할 때 긴장과 갈등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보고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노자관계에 대한 자율성은 본국이 부여한 지사의 전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작동될 것이다. 외투기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주로 투자 및 예산 규모, 고용규모에서 드러나며,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또한 초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합되어 있는가가 현지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사들 간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노자관계 정책은 본사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사들이 국제 분업의 형태로 상호의존성을 밀접히 갖게 되면, 한 지사에서의 파업은 통합된 생산망의 다른 노드(node)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분업의 형태를 떠지는 않으나, 자동차 산업과 같이 생산사슬의 일부분을 복제하기 용이한 경우나 소매점이나 금융기관처럼 높은 수준의 수평적 통합을 보이는 부문 역시 본국으로의 집권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지사가 모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부로의 집권화 경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모기업에 대한 역투자는 지사의 수익을 수탈해 가는 것과 현실에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지사의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를 종종 쟁점화하려고 하고 지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함에 따라 노자관계의 갈등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 5. 외투기업의 진출 목적과 노자관계에 대한 태도 |

외투기업 노자관계 연구에 있어 오랫동안 관심 사항이 되어 왔던 주제는 초국적기업의 진출 행태와 노자관계 사이의 함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단 장기투자 목적의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인가 아니면 단기수익 목적의 증권(portfolio) 투자인가가 노자관계에 대한 외투기업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이 단기수익을 올리는 데 몰두하고 극단적으로는 기업 자체에 대한 매수와 매도를 목적으로 할 경우 당연히 노자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권투자 목적의 지분비율이 높은 외투기업은 그린필드 목적의 지분 비율이 높은 외투기업에 비해 노자관계 안정화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린필드 투자와 증권투자로 외국 자본을 구분한다는 경계가 현실에서는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보통 10% 이상의 지분 매입을 통한 외국 자본 투자를 그린필드 투자로 보지만, 이는 편의적인 기준일 뿐이다.

이보다는 외국자본이 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가 그린필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데 더 적실성이 있다. 예컨대 유입된 자본이 본국에서 관련 산업의 산업자본인지 아니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한다 하더라도 투자 목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그린필드 투자라 하더라도 신규투자의 형식을 빌어 진출했느냐 아니면 인수 합병(M&A)의 형식으로 진출했느냐도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인수 합병

(M&A)의 경우에는 현지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 합병(M&A) 시에는 본국 문화와 경영방식을 이식하려는 경향이 높아 노자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6. 의사결정구조와 노자관계의 비효율성 |

초국적기업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본사에 간명하게 집중되는 반면, 현지 지사 차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복잡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효과적인 교섭 또는 자본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한이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많은 경우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곤 한다. 예컨대, 현지 경영진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진정한 결정권은 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제가 다수 발생한다. 현지 경영진은 본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하고, 본부는 현지 경영진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은 연쇄적인 중폭과정을 통해 노자관계를 전투적 상황으로 몰고 가게 만든다. 현지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가 모호하게 되면 먼저, 현지 노자관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교섭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심한 경우 결론을 회피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결국 교섭의 비효율성이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구조의 모호함을 이유로 자본이 실질적으로 노사교섭을 회피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은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된다.

결국 노동조합은 이처럼 객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보다 전투

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의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요구하게 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게 된다. 한편 외투기업의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시점부터 해외 본사에의 이른바 원정투쟁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원정투쟁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언제나 효과가 확실한 투쟁 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노동조합이 원정투쟁 전략을 종종 사용하는 것은 그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 지사의 지불능력을 축소시켜 현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때에는 주로 가격이전의 형태를 취한다. 가격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수익성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 이전을 통한 임금 압박은 노자관계를 갈등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우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은 노동조합에게는 대단히 어렵다.

| 7. 경영 정보의 불투명성 |

외투기업의 경영정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접근성은 국내기업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해 보자. 먼저, 외투기업의 경우 비상장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경영정보 공개의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 알려진 정보조차도 정확성에 있어 기업의 책임이 적어지게 된다.

둘째, 초국적기업의 복잡한 국제전략과 광범한 활동의 전모를 이해하기 난해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조합으로써는 정보가 주어진다 해도 해독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위 두 가지 측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초국적기업의 지사들간 이익 이전의 측면이다. 초국적기업은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경영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때문에 개별 지사의 수익성에 관한 실상이 왜곡될 수 있다.

5장 **초국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응 전략

초국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응 전략

| 1. 요약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초국적기업들은 인수합병부터 기업운영, 자본 철수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의 인수합병, 국제적 자본 전략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자본 유출 과정에 대한 규제 부족 등으로 노동조합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초국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국제적 수단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유럽계 초국적기업과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국제기본협약(IFA)이다. 둘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으로 대표되는 국제 기준이 있다. 셋째 노동조합 네트워크다.

초국적기업의 국제적 이동과 이로 인한 노동권 파괴를 최소화할 법제도는 법

적 주체의 모호함으로 인해 더욱 그 효과가 미약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나마 국제기준들이나 국제기본협약 등도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와 현장에서의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만 현실에서 미약하게라도 힘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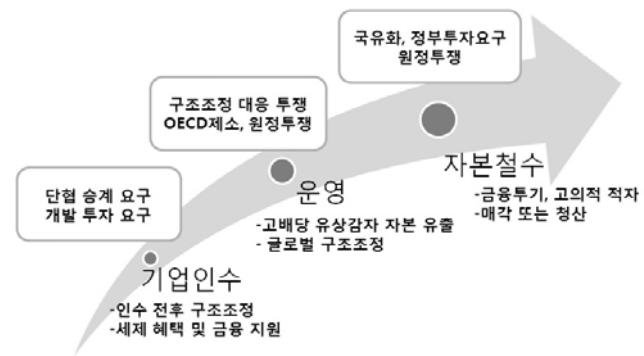
초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 네트워크에서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초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내 공급사슬망에 대한 산별 차원의 대응, 그리고 초국적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 2.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대응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중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은 국제적 생산 판매 기지를 거느린 거대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국제적 경제 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자본 철수 압박으로 국내에서 노동탄압의 선봉에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 장에서는 이들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노동권 탄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의 외투 기업들은 신규 투자가 아니라 98년을 전후로 인수 합병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초국적 기업들이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에서 20%를 차지하는 외투 사업장 중 90% 이상이 IMF 외환위기 직후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이다.

〈그림11〉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일반적 대응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부터 기업운영 자본철수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킨다.³⁸⁾

우선 인수합병을 전후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은 채권단을 통해 인수 전부터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인수 후에도 기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지방정부로부터 공장, 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까지 얻어내는 것은 물론 정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 지원까지 받지만 정작 납세자들의 직접적 문제인 고용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38) 한지원(2010)

인수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인수자 및 채권단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크게 약화된다. 노동조합은 기존 단협의 승계, 고용보장, 추가적 투자 약속 등을 요구하지만 단협 승계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국적 기업들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2장에서도 보았듯이 고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해 한국에서 창출한 이윤의 대부분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은 기본이고, 본사 및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고가 매입, 저가 매출을 일삼으며 보이지 않게 국내에서 생산된 부를 본사로 유출하는 것도 다반사다.

노동조합은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이러한 자본 유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투기업 대부분은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기업 공시 의무가 국내 상장 기업에 비해 적다. 또한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거래하는 초국적기업의 특성 상 국내 기업 정보만으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초국적 기업이 어떻게 생산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속적 자본 유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 이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통상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다른 몇 가지 추가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내 경영진이 본사 지침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 기업의 자본 철수 압력으로 국내 자본에 맞선 구조조정 투쟁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국제적 원정 투쟁을 진행하고,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국제기준을 근거로 국제기구에 제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그리 성공적인 사례는 많이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초국적 기업이 자본 철수, 공장 이전을 단행하는 경우 노동자들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자본 철수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선택권 역시 제한된다.

노동조합은 자본 철수가 이루어져 기업 존폐가 문제가 될 경우 매각을 주관한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정부에 구제금융 혹은 국유화를 요구하지만 이 또한 국민 경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는 요구다. 또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쌍용차나 지엠대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후 재매각과 구조조정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에 대한 이전의 대응 과정을 볼 때 여러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앞으로 세계경제가 더욱 잣고 빠른 위기와 회복을 반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3. 초국적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한 기존 논의들 |

외국인직접투자로 들어온 초국적기업에 대한 규제 혹은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노조와 초국적기업간의 단체협약인 국제기본협약이다. 두 번째는 국제기준에 의한 규제 방안이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ILO기본협

약 등은 정부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제 협약이고, UN 글로벌컴팩트, ISO26000의 경우 기업이 직접 가입하여 자율 준수 하는 협약이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있는 노동 단서들 역시 정부가 당시국과 거래에서 지켜야 할 노동 기준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초국적기업 각국 노조들의 네트워크다. 각국의 노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1) 국제기본협약

‘국제기본협약’은 초국적기업의 전 세계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초국적기업과 각 산업별 및 세계 노동조합연맹이 노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010년 말 현재 약 50여 개 기업이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33〉 국제산별 신하 국제기본협약 체결 기업들
(2010.12월 현재)

BWI
Italcementi
VolkerWessels
Staedtler
Royal BAM
Impregilo
Lafarge
Stabilo
Veidekke
Ballast Nedam
IKEA
Skanska
Hochtief
Faber-Castell
Wilkhahn
GDF SUEZ

ICEM
Umicore
RAG
Statoil
Freudenberg
Endesa
AngloGold
Norske Skog
Eni
SCA
Lukoil
Edf
Lafarge
Rhodia

IUF
Indesit
Volkswagen
DaimlerChrysler
Leoni
GEA
SKF
Rheinmetall
Bosch
Prym
Renault
BMW
EADS
Röchling
Arçelik
PSA
Brunel
Umicore
Vallourec
Aker

PSI
EDF
Elanders
Falck
FranceTelecom
ISS renewed
Metro
Nampak
PortugalTelecom
Securitas
Telefonica
UPU

〈자료: GUF에서자구성〉

지금까지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유럽계 초국적기업이 대부분이다. 현재 90% 가까이가 유럽계 기업들이다. 유럽계 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최소한 2개국에서 1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다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그룹을 포함하여 회원국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그룹”은 유럽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해서 한 나라에 경영 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기업의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는 협정 때문이다. 사실상 국제기본협약은 유럽종업원평의회의 확장인 측면이 강하다.

국제기본협약의 내용은 광범위한 수준에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기본협약에서는 1998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채택된 ILO ‘핵심 노동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일자리 보호, 임금, 노동 시간과 유급 휴가,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기본협약을 통해 투쟁에 성공한 예는 터키에서 다임러-크라이슬러 공급업체인 디아트(Diat)는 2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계획을 가졌고 집회와 결시의 자유를 위반한 사례다. 이에 다임러크라이슬러 세계종업원위원회(World Employee Committee)와 체결한 국제기본협약 조항을 지킬 것을 협력 업체에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는 달리 실패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1995년 아코르와 국제식품노련은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국제식품노련은 필라델피아에서 지역 노조는 270명의 소피텔 노동자를 조직화하려고 했다. 경영진이 이에

저항했을 때, 지역 노조는 이것이 국제기본협약 위반임을 지적했으나 노동자들은 회사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노조 조직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³⁹⁾

한편 한국 르노삼성의 경우는 명시적 위반은 없지만 암묵적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경우다. 르노그룹은 2004년 10월 국제금속노련, 르노그룹위원회, 유럽의 9개 노조와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르노삼성 역시 이에 적용된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르노삼성은 철저히 무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르노-IMF간 국제기본협약의 “노동자 대표” 조항 부분 중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의 자유 보장 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본협약의 가장 치명적 약점은 유럽연합 내를 제외하고는 국제기본협약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 주체가 부재하며, 국제기본협약 내용 역시도 대부분이 임금, 노동조건, 공장 이전 등에 대해 상징적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역시 이의 적용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제기본협약은 협약의 법적 성격보다는 이 협약을 국제연대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국제적 캠페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9) 금속노조(2008)

2) 국제기준에 의한 규제

① 국제기구에 의한 기준

국제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34〉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기준들

범주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
적용대상	회원국	회원국 및 참여국	참여기업
주체	노사정	노사정	기업(사)
구속력	국제협약 법률적 성격	자발적 기준 행정적 절차	자발적 기준

출처: 금속노조(2008)

ILO는 현재 184개의 협약과 194개의 권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86차 총회시(98) 채택된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하여 4개 부문(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에 관련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약은 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국내조치의 참고사항으로서 비준의무는 없다. 협약의 비준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비준한 협약에 한해서만 발생하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현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이러한 ILO협약은 국제기본협약을 비롯하여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의 기본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협약의 내용이 실제 구조조정과 자본철수 등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또한 협약의 강제력이 현실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의 일부분으로서 체약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1998년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이후 2000년에 시민사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되었다. ▶ 일반정책 ▶ 정보공개 ▶ 경쟁 ▶ 조세 ▶ 노사관계 ▶ 환경 ▶ 과학기술 ▶ 자금운용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다국적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정보의 공개, 경쟁, 조세, 고용, 산업관계 및 환경과 관련한 체약국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 주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직접 승인한 포괄적 다자간 공동행동지침이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절차는 국내연락소(NCP)에 제소 → 연락사무소에서 해석 → 해당국 연락소와 협의 → 권리안 또는 사건 공개 여부 결정 → (해당국 간 의견 합의가 안 될 경우) OECD투자위원회 해석과 권리로 이어진다.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편이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53건이 받아들여져 105건이 결론 맺어졌다. 제소 건 대부분은 가이드라인 4조(고용과 산업관계)에 관한 것이다.⁴⁰⁾ 하지만 결론 맺어진 사건 중 2~3건 정도만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

는 결정이었다.⁴¹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연락사무소가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사건 해결까지 이루지 못하더라도 연락사무소를 통해 국제적 여러 사회적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연락사무소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업무 담당자가 한 명 있을 뿐인 유명무실한 사무소다. OECD의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는 한국, 미국, 일본을 가이드라인 현실 적용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고 있기도 하다. 한국 연락사무소에 접수된 노동관계 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7건이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한국 연락사무소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표35〉 한국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의 제소 건 처리실적

NCP 역할	
2003, 한국 네슬레	한국에서 기각 스위스에서 기업제소건 공개 및 중재
2006, 라파즈한라	한국에서 노동위 편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보류
2007, 한국 테트리파	한국에서 기각 스위스에서 3자 중재
2009, 하겐다즈	노사 합의 후 제소 취하
2009, 에보트코리아	한국에서 처리 지연
2010, 벨레오공조	한국에서 기각 프랑스에서 제소
2011, 아콘트글로벌	진행 중

자료 : OECD(2010) 및 언론 종합



40) OECD-TUAC(2009)

41) 강연배(2008)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OECD에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재개정 건이 논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 역할 강화, 국내연락사무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 공급망(supply chain)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⁴²⁾

한국의 경우 국내연락사무소 개혁 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연락사무소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실무는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연락사무소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⁴³⁾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최소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 경우도 노사정+시민단체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단점은 있으나 정부 혼자 사건을 묻어 버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인다.⁴⁴⁾

유엔글로벌컴팩트(UNGCR)는 2000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 10대 원칙⁴⁵⁾을 제시하고 기업과 단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한다. 약 5천개 기업과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42) John G. Ruggie(2010)

43) OECD-ILO(2008)

44)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사정 협의 방식 운영, 칠레 핀란드는 노사민정 협의방식이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기업 중심의 활동을 주로 펴는데, 사실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홍보하는 역할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180개의 기업과 단체가 가입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대표적 노동탄압 사업장들인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철도공사 등이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컴팩트와 비슷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제로 ISO26000이 최근 각광 받고 있다.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기준을 담은 국제인증으로 특히 노동관련 조항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관련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의 기본권을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노동관행(Labour Practice)이 아니라 인권(Human Rights)으로 규정하여 인권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노동관행(Labour Practices)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의 채용 및 승진,

규율 및 고충절차, 노동자의 이직 및 전근, 고용기간의 만료 등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조작을 인정하고,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단체교섭, 사회적 대화, 노사정 협의에 있어서 그러한 노동자 조직의 대표성과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법과 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⁶⁾

하지만 ISO26000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을 지닌 지침표준(Guidance Standard)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② 무역협정 내 노동 조항

자유무역협정에서 임금 노동조건 하향을 통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해 노동관련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단서 조항은 크게 분류해 멕시코 모델과 캐나다 모델이 있다.⁴⁷⁾

멕시코 모델의 경우 표준 하향 금지(no lowering of standards) 단서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 간 투자 유치를 위해 건강, 안전, 환경 관련 기준을 약화시킨면

45) ① 인권 Human Rights

-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③ 환경 Environment

-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④ 반부패 Anti-Corruption

-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46) 권순원(2008)

47) Bonnie Penfold(2004)

안 된다는 것으로 이미 약화되어 있는 국가의 노동 관련 기준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해결책 역시 국가 수준의 외교적 해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상대방 국가가 노동 기준을 하향했다고 느낄 경우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캐나다 모델은 자유무역협정에 부속 협의(side deal)를 하는 것으로 무역 및 투자 조항을 사회적 쟁점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노동 부속 협의는 11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각국은 자국의 법률을 유지하되 기본 원칙이 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이와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회 조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는 기업 및 관련 당국이 정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국 정부 노동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후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한다.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사회 조항 위반이 있다고 판정된 국가는 이를 시정해야 하며, 관련 시정 방법을 중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재산권과 이동의 자유를 우선 보호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관련단서 조항들은 대부분이 사문화되거나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다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예를 보면 노동 부속 협의는 무역 협정 외부에 존재하는 이유로 무역 거래와 관련한 제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며,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고, 무역 협정과 달리 국내 정책이 우선시되면서 노동권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는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⁴⁸⁾



48) Thierry BAUDASSE(2006)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19조에 노동 조항을 두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철폐,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 상의 차별 철폐 등이 주요 골자다. 양 당사국이 투자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조항들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 국가가 이를 입증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노동 관련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협의회에서 이를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단서와 비슷하게 노동협의회를 통한 해결 또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문제제기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반노조 정책 기조가 강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노동 관련 협의를 성실히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투자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 탄압이 제한적이라는 점, 특히 초국적기업의 이동으로 인한 고용, 임금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초국적기업이 노동권 탄압을 자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동성에 있기 때문이다.

3) 노동조합 네트워크

초국적기업의 노조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초국적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여러 수준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왔다. 노동조합 국제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각국 노조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며,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왔다.

한국에서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중 하나는 테스코국제

노조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홈플러스테스크 노조다. 영국계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의 노조 협의회인 테스코국제노조동맹(Tesco Global Union Alliance)는 2008년 6월에 UNI Global Union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현재 체코, 터키, 헝가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영국,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 12개 국가의 노조가 함께 하고 있다. 테스코국제노조동맹은 각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테스코국제노조 동맹은 2009년 6월에는 국제회의를 통해 태국, 한국, 미국에서 테스코가 벌이고 있는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 교대제 개악과 추가근로수당 삭감, 한국에서 강제적인 추가근로 요구와 비정규직 차별 대우, 미국에서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만 받는 단기계약직 확대, 노사교섭해태 등이 지적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행동을 결의했다.⁴⁹⁾

또한 직접적 행동으로 2009년부터 터키 Tesco Kipa의 노조 탄압을 막아내고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국제적 행동에 집중하며 51% 가량의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협력했으며, 태국에서 역시 노조 탄압이 자행되자 테스코와 UNI간에 맺어진 협정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 탄압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49) Uni Global Union(2009)

50) CUT(2009)

브라질노총(CUT)의 경우 노총 차원에서 초국적기업 노조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사례다. CUTMulti 프로젝트라 불리는 브라질노총의 국제 행동 계획은 2001년 네덜란드 FNV와 국제협력회의를 하면서 시작되어 현재 30개 기업의 노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⁵⁰⁾

〈표36〉 브라질노총이 주도하여 만든 초국적기업 노조 네트워크들

COMPANIES		
ABN Anro Bank	Brinks	Novartis
Accor	C&A	Prosegur
Akzo Nobel	Carrefour	Santander
Alpargatas – Santista	Dow Chemical	SHV Gas
Ambev – Inbev	Dupont	Sdway
ArcelorMittal	Gerdau	Suzano
Banco do Brasil	HSBC	ThyssenKrupp
Basf	Iberdrola	Vale
Bayer	Ibau – Unibanco	Votorantim
Braskem	Lanxess	Wal Mart

자료 : CUT(2009)

브라질노총은 CUTMulti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에 있는 노조들이 국제적 기업 정보 조사, 국제적 공장 현황 파악, 공동 행동 계획의 조직과 경험 축적, 노조 간 대화 확대, 국제적 노조 위원회의 관리와 활용 등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초국적기업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단지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9차 전국대의 원대회에서 비중 있게 심의되고 결의된 사항이며, 또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

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CUTMulti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프랑스노총(CGT)과 양국 초국적 기업의 양국 노동조건 파괴에 맞선 전략 대회를 시작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논의된 양 노총간 전략 대화는 2010년 Alstom, Valeo, Panex, Sanofi Aven, Michelin, Carrefour, Lafarge and Sodexo 7개 기업을 샘플로 하여 양국 노총간 고용, 임금 등 노동 조건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하고, 매년 공동 워크숍과 노조 간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제기본 협약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조정, 기업경영에 관한 참여 문제, 국제공동행동 계획 등을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현대-기아차 국제노조네트워크 구성이 현재 추진 중이다. 국제 금속노련(IMF)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네트워크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슬로바키아, 체코, 미국, 터키, 독일, 인도의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 네트워크는 몇 차례의 모임을 걸쳐 네트워크를 체계화 안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 고용, 임금, 노동시간, 단협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격월 또는 분기 단위의 각 공장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럽직장평의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국제기본협약(IFA)을 체결하기 위한 사측과의 논의 수순을 고민 중에 있다.

한국의 초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그리고 국제금속노련이 추진 중인 국제노동조합 네트워크는 아직 추진 속도나 실내용에

있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 노동운동이 초국적기업에 맞선 싸움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해 나가는 진전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내실 있게 꾸려지느냐는 단지 현대-기아차만의 문제 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초국적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 기존 도구들의 장점과 단점

국제기본협약, 정부규제, 노조 국제네트워크 등은 모두 장단을 각각 가지고 있다. 국제기본협약의 경우 국제노동조합과 초국적기업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제 노동 문제에 관해 투쟁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단협 내용으로 노조가 없는 국가에까지 효력을 확장할 수도 있어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권 향상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국제기본협약은 여전히 ILO기본협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며 노동조건, 임금 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 대부분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럽종업원평의회와 같은 실질적 국제 감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국제기본협약이 사실상 무력화되기도 한다.

국제기준은 제도적 해결을 제시하지만 협약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규제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의 협약 자체가 구체적 현실을 다루고 있지 못한 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다국적기업에 관해 상대적으로 특화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역시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국적기업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경우 노동조합 간 연대와 투쟁을 통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 정보 공유와 연대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의식 역시 확대된다.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투쟁에 따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OECD다국적가이드라인 등을 실천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의 노조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 노조가 네트워크에 부정적일 경우 네트워크가 힘을 받기 힘든 한계가 있다. 각국 노조의 집행부 교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연대가 불안정해 질수도 있다는 점 또한 한계라 할 것이다.

〈표37〉 국제적 도구의 장단점

	국제기본협약	국제기구 규제	노조간 네트워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의 효력 확장 투쟁의 장당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력의 범위가 넓음 제도적 해결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투쟁을 통한 해결 노동자간 연대성 확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적 노사 관계 배경 노조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력 없음 노조감시가 없으면 무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사 노조 역할 중요 연대의 불안정성

| 4. 초국적 기업의 노동 탄압과 승리 사례 |

– 캐나다 Vale Inco의 예 –

초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많은 투쟁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승리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된다. 여기서는 브라질 Vale 기업이 캐나다 계열사인 Vale Inco에서 벌인 구조조정

과 이에 맞선 캐나다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국제 연대를 통해 승리한 사례를 살펴본다.

캐나다 빌레 인코는 2006년에 캐나다 니켈 광산 회사를 세계 2위의 철강업체인 브라질 빌레가 인수하며 설립되었다. 빌레 인코는 국제적인 천연자원 가격 급등에 힘입어 기준 10년간 보다 더 많은 이익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벌어들였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며 구조조정을 계획하게 되었고, 2009년 서드버리(Sudbury) 니켈 광산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미철강노조(USW, United SteelWorkers) 소속의 캐나다 빌레 인코 노조가 2009년 7월 13일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사측이 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노조 요구를 수용한 2010년 7월 19일까지 1년 동안 파업이 진행되었다.

사안이 공장(광산) 폐쇄 건이었던 만큼 이 투쟁의 관건은 처음부터 해당 공장의 문제보다는 얼마만큼 빌레 기업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전미철강노조는 처음부터 대부분의 보도자료와 소식지들을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등으로 번역되어 알렸다. 빌레는 브라질,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십 여개 국가에 광산을 운영 중에 있었고 30개가 넘는 국가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철강업체의 대표적 초국적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빌레인코 노조는 파업 3개월 후 빌레가 계획하고 있었던 뉴칼레도니아 지역의 신규 공장에 대한 여론전을 시작하였다. 호주 근처에 있는 프랑스령 자치주인 이섬은 빌레인코가 캐나다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새롭게 니켈 공장을 지으려 했던 곳이다. 전미철강노조와 특히 빌레인코 가족 대책위 회원들이 호주에서 공장 노조 대표자들과 만나 이들의 투쟁 지지와 빌레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호주 노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칼레도니아 지역에서 투쟁 지지 여론을 이끌어 내는 일들을 조직했다.

다음으로 전미철강노조는 뉴욕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발레의 영업 실적 발표회를 조합원들의 항의 시위를 통해 연기시켰고, 한국,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영국, 미국 등에 조합원들과 국제연대 담당자들을 조직해 항의 시위를 조직했다. 발레 임원에 대한 국제적 그림자 투쟁을 실제로 조직한 것인데 이는 이후에 스페인, 멕시코, 스웨덴, 독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 1년 내내 발레 기업은 국제적 연대로 인한 그림자 투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연대를 조직하여 투쟁한 나라의 노조들은 2010년 3월에 있는 캐나다 시위에 실제로 파견단을 보내 국제적 연대의 힘을 캐나다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⁵¹⁾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CUTMulti 프로젝트가 조직한 발레 노조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미 구성되어 있었던 발레 노조 네트워크는 2009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오드자네이로에서 회의를 열고 캐나다 발레 인코 투쟁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본사가 있는 브라질에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캐나다와 브라질의 단체협상을 상호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캐나다의 공장폐쇄 건과 브라질의 임

금 협상을 가능한 함께 엮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었다. 발레 노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회의 이후 브라질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2000여명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발레의 노조 탄압과 공장폐쇄 부당함을 알리고 큰 지지를 이끌어 냈다.⁵²⁾

이러한 네트워크의 논의는 이후 10월 26~27일 브라질 발레 총파업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다. 브라질 발레 노조는 임금 및 성과공유를 주요 이슈로 한 이틀간의 파업에서 캐나다 발레 인코 노조의 요구안을 발레 본사가 성실하게 협상 할 것을 교섭 요구안에 삽입했다. 몇 일 후 파업에 들어간 독립노조 소속의 노조(Conlutas)들은 파업 현장에 캐나다 가족 대책위를 초청하여 조합원들의 대대적 연대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캐나다 발레 인코 노조의 국제연대에 대한 혁신적 노력과 발레 노조 네트워크와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레 인코 노조는 결국 파업 1년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경제위기와 공장 폐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거대한 초국적 기업에 맞서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초국적 기업에 맞선 전략은 강고한 투쟁 의지와 더불어 강고하고 효과적인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준 투쟁이었다.

| 5. 소결 |



51) <http://linksorgau/node/1356>

52) <http://www.cut.org.br/secretarias-nacionais/artigos/4683/rede-vale-brasil-recebe-companheiros-do-canada-no-rio-de-j>

초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

다.⁵³⁾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에서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초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국내 공급 사슬망에 대한 산별 차원의 대응, 그리고 초국적기업을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까지 국제이동, 국내 공급사슬망, 법제도 규제 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38〉 초국적 기업 대응 전략의 제약 조건과 극복방안

조건		내 용
기업연수	제약조건	채권단 중심의 인수작업으로 인한 노조 가입력 제한
	법제도	외투촉진법 개정을 통해 고용 의무 강화
	대응방향	국내 산별 대응을 통한 사회적 간접화
	국제	국제적 연대를 통한 노동권 상황 평준화 요구
운영	제약조건	경영정보 접근 제한과 국제적 자본 전략에 대한 정보 제약
	법제도	OECD가이드라인 개정과 연례사무소 혁신
	대응방향	국내 기업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국제	국제노조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합과 국제기본협약 체결
자본출수	제약조건	인수합병 여부에 따른 기업존폐 상황과 극단적 고용불안
	법제도	정부 및 채권단 책임성 강화
	대응방향	국내 산별 노조 차원의 공급 사슬망 압박
	국제	국제연대를 통한 본사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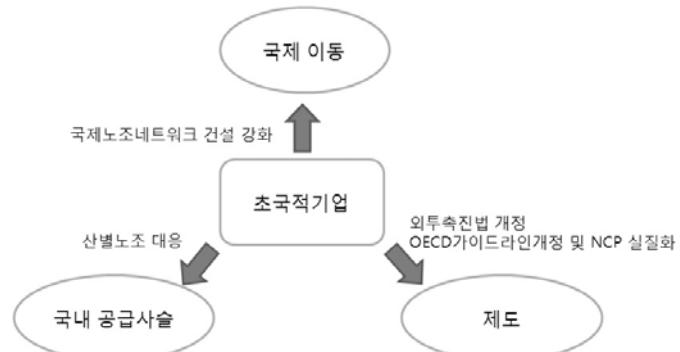


53) Sarah Ganter(2010)

- 국내 산업 수준에서 초국적 기업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별 대응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OECD가이드라인 개정 및 국내사무소 운영 개선
- 본사 및 타국 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 국제 네트워크

유럽에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초국적기업은 산별교섭을 약화시키기 위해 특히 노력하는 경향이 크다. 국제적 생산 이동, 국제적 생산성 비교를 통한 임금 경쟁 가속화 등에 산별 교섭이 불리하고, 또한 산별 투쟁으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작년 발레오만도 투쟁 시에 산별협약을 통해 현대차까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발레오만도 사측이 파업 대비책으로 중국, 프랑스 등 국외 공장을 통한 현대 납품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산업적 교섭을 통해 공급망(supply-chain)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초국적 기업의 이동성을 무기로 한 노동탄압 방어에 효과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림12〉 초국적 기업에 맞선 노동조합의 다층적 대응



초국적기업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경우 노동조합 간 연대와 투쟁을 통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 정보 공유와 연대 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의식 역시 확대된다. 노동조합 네트워크의 투쟁에 따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OECD다국적가이드라인 등을 실천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의 노조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 노조가 네트워크에 부정적일 경우 네트워크가 힘을 받기 힘든 한계가 있다. 각국 노조의 집행부 교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연대가 불안정해 질수도 있다는 점 또한 한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여러 국제적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며, 특히 무엇보다 자본의 구조조정 계획에 기민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개별 기업의 능력 제한 때문에 총연맹이나 산별에서 국제조직의 도움을 받아 해당국 노총, 산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참고

유럽에서 초국적 기업의 단체교섭 회피와 노조의 대응

* 유럽의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이 일반화되어 있고, 유럽 차원의 기업 종업원평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초국적기업에 대한 대응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대응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국적기업들 주도 하에 이러한 국제적 연대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단체 협상을 기업별 수준으로 분권화시키려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별교섭의 중요성,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유로재단의 보고서 “Multinational compan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EU”를 짧게 요약하여 싶는다.

대부분의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은 노조와 산별 임단협을 하는 사용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만 절반 정도의 다국적기업이 산별교섭 대신 개별교섭을 벌인다. 이 밖에도 포르투칼의 오토유로파(폭스바겐),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독일의 폭스바겐 등이 산별 대신 개별교섭을 벌인다. 노동조합은 다국적기업들과 산별 교섭을 체결하지만 많은 경우 개별기업교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투쟁한다. 다국적기업의 임금 및 단협 수준이 국내기업보다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여러 다국적기업들의 노조들이 대표적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기업별교섭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수준에서 교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기업별 교섭의 여지가 많은 나라들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업별 교섭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교섭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압력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전체의 요구로 인한 변화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자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기업 교섭 확대 압력을 주도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산별교섭 이후 보충임금교섭에 관한 개방 조항이 금속화학 분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2차원 교섭구조(전국교섭+지역교섭)에서 생산성 연계 보상제도에 관한 기업별교섭 개방을 위해 다국적기업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다국적금융기업들이 변동급제도 도입을 위해 개별기업교섭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포르투칼과 키프로스 등은 개별교섭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오토파의 특수한 예외]

네덜란드의 다국적은행들은 2001년 은행산별협약을 종료시켰다. 2008년 겨울에는 독일계 다국적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Infenion)이 금속산별협약 해지를 하기 위해 금속사용자단체를 탈퇴하였다. 산별협약 해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산별협약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존재한다.

동유럽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임금 수준이 자국 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다국적기업

의 기업별 교섭이 산별 및 내국 기업의 교섭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국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무노조를 원한다. 2006년 영국에서의 조사를 보면 3년간 신규 설립된 다국적기업 사업장에서는 40%가까이가 노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불가리아에서는 기존 노조는 허용하지만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기업들이 발트해 국가들(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반노조 정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에스토니아의 금속노조가 핀란드 금속노조와 협력하며 동일협약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보상방식과 노동시간과 관련한 임단협 개악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벨러우도흘름과 같은 다국적 기업은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이윤연동급여제도 도입에 성공하였다. 네덜란드의 필립스는 변동급여제도 시행을 추진하였고, 벨기에의 포티스(Fortis)가 개인성과가 반영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파급 효과를 미쳤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변동급여제도 도입의 선봉에 서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압력으로 기업별로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자와 직장위원회가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탄력적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교섭 혁신이 눈에 띈다. 벨기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임시파견근로자 활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가 기업의 단체협약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화학산업에서는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에서 다루고 있다.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은 임시파견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시파견근로자 활용을 규제하는 기본 틀을 협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임시파견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식품 제조사인 일부 기업의 단체교섭에서 이를 근로자의 활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불가리아에서는 다농(Danone)과 크라프트 푸드(Kraft Foods)의 사업장에서 임시파견근로자의 활용에 관한 협약이 타결되었다. 영국에서는 자국 기업보다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임

시파견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규모 제조업 다국적 기업에서 임시파견근로자 활용을 규제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다국적기업은 국제적 비교를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다국적 기업의 노동비용, 유연성,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에서 관심의 대상은 산업부문 및 또는 특정 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 세계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유럽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을 비교할 때는 해당 지역이 중심이 되지만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생산이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까닭에 지역 교섭에서 국제적 비교의 활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발트해 연안국가에서는 국제적 비교를 한다고 알려진 바 없다. 이들 국가의 경우 유럽경제지역(EEA)의 다른 EU회원국에 비해 노동비용이 낮기 때문에 지역 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는 쪽이 있다면 오히려 노조이다.

지역 교섭에서 경영진이 국제적 비교를 활용하는 경우 이는 비용감축과 유연성 강화 조치 도입을 찬성하는 단체협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로조건의 양보, 산별협약이 우선하는 국가의 경우 기업별 보상수준과 조건의 축소, 탄력 근로시간 제도 도입이 포함되기도 한다. 기업이 위협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보장하기도 한다.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비용 대비 생산성 우위가 저비용의 중앙유럽국가보다 떨어지는 독일의 경우에는 특히 관련 협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기업이전 위협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 교섭에서 암묵적으로 이를 인지하기도 한다. 일례로 스웨덴의 제조업 부문에서는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비용을 감축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브라질노총이 제안하는 초국적기업 노조 네트워크 구축 방안

브라질노총이 2001년부터 진행한 초국적기업 노조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CUTMulti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Guide to the Construction of Union Networks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 Systemizing CUT's Experiences)을 소개한다.

1. 네트워크 구축하기

1단계_동기부여

- 목표 :** 각국 노조의 관심을 유발하고 각 노조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우선 산별노조가 노조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을 찾고 기업 정보에 대해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 산별노조 단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조를 포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모든 노조들에 대한 조사
- 자국 노조에서 기업 상황에 대한 토론
- 관계된 모든 노조의 간부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노조 내외부의 지원을 조직
- 국제노조와 자국 노조의 통합적 운영 방안
- 초국적 기업의 본사 노조에 대한 접촉과 토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산별노조, 서로 다른 국가들의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밝혀나가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성공적인 투쟁을 벌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2단계_토론, 설득과 네트워크 프로세스 구축

- 목표 :** 정보 교환과 조직 대상 사업장(노조) 방문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평조합원들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힘을 쏟아야 함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네트워크 건설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에 꼭 함께 해야 할 목표 사업장을 설정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목표 사업장의 이해가 다르지 않은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해 나가야 한다. 정보를 공유할 경로를 만들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토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3단계_노조 네트워크의 상태 파악

- 목표 :** 정보 수집과 노조 네트워크의 현 상태 파악

네덜란드노총(FNV)가 개발한 ADOS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신의 노조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 리스트는 민주주의, 재정 상태, 정보접근도, 상근간부 및 임원들의 적절한 업무 수행, 계획과 감시 시스템, 조직 내 평등 등이다.

2. 네트워크의 발전과 관리

조사

- 목표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초국적기업에 대한 활동 정보는 네트워크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활동가들과 조합원 사이에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보 수집은 노조가 전문 연구 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2008년 Gerdau's network는 8개 국가 30개 공장에 대해서 노조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대규모 직접 조사에 나서 완벽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다. 각 나라의 공장별로 노동시간, 임금 정책, 외주화, 노동안전, 그리고 단협 내용을 수집했다.

- 작업장 상태에 대한 분석

목표한 초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 조사 이후에는 실제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각 공장 별로 임금, 각종 수당, 업무 계획, 휴가, 노동안전 등 여러 노동조건을 조사한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조 상태에 대한 조사도 필수다.

계획 수립

- 네트워크 미팅

주기적인 회의 또는 워크숍을 만드는 것은 노조 네트워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러한 주기적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의제 :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제들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은 네트워크 참여 노조들에게 미리 제공되어 합의가 되어야 한다.

■참여자 : 네트워크 소속 노조 간부들 외에 간사,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사무국 : 네트워크 유지 및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필요하다. 회의자료와 회의장소 준비부터 참석자들에 대한 통보까지 책임을 분명히 지는 사무 역할을 부문이 조직되어야 한다.

■주기성 : 브라질의 대부분 네트워크들은 연 2회의 정기 모임이 있다. 정세나 네트워크 특징에 따라서 더 자주 있을 수도 있다. 주기적 회의를 조직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하다.

- 행동계획

행동계획은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 참여 노조들이 함께 계획하고 결의해야 한다. 여러 행동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와 목표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행동 계획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계획되고 결정된다. 행동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공동 행동을 통해 상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 네트워크 뉴스레터

행동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필요하다. 뉴스레터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행동들을 알리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뉴스레터는 여러 국가들 노동자의 기본적인 관심사를 담고, 특히 각국의 구체적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을 위한 전문 기자를 채용할 수도 있다. 이 뉴스레터는 네트워크 참여 노조의 모든 조합원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공장 게시판에 종이 매체를 개제하는 것부터 인터넷 배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3. 네트워크의 강화

행동계획과 평가

공동행동 이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네트워크 강화의 기초 중 하나다. 행동이 올바른 목표를 가졌는가?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행동으로 인해 미친 효과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었다면 이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다음 행동이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조는 이미 수차례 했지만 단지 수단적 의미만이 아니라 이는 네트워크 생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이메일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연락처의 공유, 자신의 공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열정, 상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공동 홈페이지의 제작까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로부터의 네트워크 인정

노조 네트워크의 큰 목적 중 하나는 회사로부터 네트워크를 인정받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일반 평조합원들로부터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공동 투쟁을 강화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 노조의 각종 결정 체계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국의 단체협약에서 네트워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조항을 담는다. 이 때 본사가 위치한 노조가 압력을 행사할 경우 보다 쉽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의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다.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사회에 제공하고, 회사에서 노조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특히 유럽계 초국적 기업들에게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독일계 화학 회사인 BASF는 노조 네트워크와 15개 이상의 세션으로 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약 1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으며, 독일 본사의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책임을 질 내용들, 책임 범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할 참가자들의 규정, 감시 역할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재정

CUTMulti가 초기에는 많은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네트워크에 투여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최근에는 많은 네트워크들이 각 노조의 재정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네트워크 담당자들은 네트워크의 재정 운영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업 효과 등을 선전하여 필요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모아야 한다.

회사로부터 네트워크를 인정받을 경우(또는 인정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정 지원을 직접 받을 수도 있다. 독일 화학 기업 Bayer가 대표적인 경우다. Bayer는 노조 네트워크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장 **초국적 기업의 노동탄압 사례와 교훈**
– 한국 금속노조의 사례

한국 금속노조의 사례

| 1. 금속노조 초국적기업 현황 |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사업장들이 부도위기를 겪었다. 1997년 기아그룹 부도와 해체, 한라그룹 부도가 이어졌다. 한라그룹의 경우 계열사였던 만도기계와 한라공조가 부도로 인해 각 공장별로 해외매각이 진행되었다.⁵⁴⁾

이러한 상황은 2000년 대우그룹 부도로 인한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해



54)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53.1%로 서비스산업의 비중 44.1%보다 약 10% 정도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재벌그룹사의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매각의 결과이다(노광표, 김현우(2005))

55) 아시아시피 쌍용자동차는 2010년 인도 마힌드라로 재매각되었다.

56) 금속노조(2010)

외매각 과정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지만, 대우자동차 승용부분은 GM, 상용차부분은 타타로 매각되었고, 쌍용자동차는 상하이기차에 매각되었다.⁵⁵⁾(삼성자동차의 경우 르노가 인수하였고, 삼성상용차는 볼보로 인수되었다)

자동차부품사도 경영위기로 인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부품업체들에 인수합병되었다. 델파이, 비스테온, TRW, 보쉬, 지멘스, 발레오, 콘티넨탈, 포레시아 등이 이 시기에 한국에 진출하였다. 기계, 전자, 제지의 경우도 하이디스(대만), 티센크루프(독일), 보워터(미국) 등이 한국에 진출하였다. 그러한 결과 외국인투자사업장 비율이 2010년 5월 현재 29,000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대비 20%에 달하고 있다. 국적별로 분류할 경우에는 미국 – 독일 – 일본 – 프랑스 순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비율을 볼 경우 미국 국적 사업장이 제일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9〉 자부별 외국인투자사업장⁵⁶⁾

자부 (사업장, 조합원수)	외국인투자 사업장수	조합원수	사업장 비율	조합원비율
경기(29개, 4072)	8	2,249	27.6%	55.2%
경남(41개, 14528)	6	3,243	14.6%	22.3%
경주(22개, 3243)	4	831	18.2%	25.6%
광전(22개, 8158)	4	1,303	18.2%	16.0%
구미(4개, 1259)	1	213	25%	16.9%
대구(9개, 2427)	2	991	22.2%	40.8%
대충(15개, 3163)	6	1,971	40%	62.3%
부양(15개, 3186)	4	193	26.7%	6.1%
서울(28개, 1111)	2	307	7.1%	27.6%
울산(12개, 2763)	2	696	16.7%	25.2%

인천(14개, 2127)	3	308	21.4%	14.5%
전북(12개, 1906)	2	1,156	16.7%	60.7%
충남(26개, 5910)	6	1,090	23.1%	18.4%
포항(6개, 382)	1	18	16%	4.7%
상용자동차(3500)	1	3,500		100%
대우자동차(10216)	1	10,216		100%
만도(2267)	1	106		4.7%
조합직っぽ(7개, 5254)	1	924	14.3%	17.6%
계 (267개, 143133)	55	29,315	20.6%	20.5%

※사업장 수는 지부별 사업장수를 합산한 수임(법인수로는 47개)

〈표40〉 국적별 외국인투자사업장⁵⁷⁾

국적	사업장(법인)수	사업장 비율	조합원수	조합원비율
미국	20	42.6%	18,518	63.2%
독일	10	21.3%	3,172	10.8%
일본	6	12.8%	862	2.9%
프랑스	5	10.6%	850	2.9%
스웨덴	2	4.3%	706	2.4%
중국	1	2.1%	3,500	11.9%
인도	1	2.1%	1,108	3.8%
영국	1	2.1%	22	0.07%
대만	1	2.1%	577	2.0%
계	47	100%	29,315	100%

※법인수 기준이며 두 개 나라 이상 자본투자사업장은 최대주주를 기준으로 분류

| 2. 초국적기업의 노사관계 |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에는 두가지 신화가 존재한다.

하나는 외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좋은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한국의 대립적 노사관계이며, 그 직접적 장애요인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코트라에 따르면 여전히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년간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99건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노사분규 1,216건 대비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외투기업의 노사분규 사업장은 총 149곳이며, 우리나라 전체 노사분규 사업장 1,534곳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외투기업 노사분규 사업장 149곳을 다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금속노조 산별 교섭 참여 사업장으로 나타났다.⁵⁸⁾”

노동조합이 경영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자료에 의하면 시장상황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57) 금속노조(2010)

58) 류성민, 노용진, 오계택, 강병석(2009)

“우리나라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상황의 악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축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투자 축소 이유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87.1%)’로 나타났으며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축소의 중요한 이유로 꼽히지는 않았다.⁵⁹⁾”

이들이 한국에 진출한 이유가 한국시장에 대한 고려와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위해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서 항상 제기되는 것처럼 노사관계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진출한 동기로는 ‘한국시장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중국이나 아시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위해서 와 ‘양질의 노동력 활용’,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⁶⁰⁾”

오히려 노사관계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초국적기업의 노사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어떤 노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모국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로 불리는 초국적기업의 모국의 경영관행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59) 류성민, 노용진, 오계택, 강병석(2009)

60) 류성민, 노용진, 오계택, 강병석(2009)

“미국 기업들은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적 미국 문화에 기초한 단기적 업적에 기초한 성과주의적 경영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관행으로 인해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은 업무 절차의 표준화와 성과를 통한 통제를 많이 구사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일본 기업들은 단기적 재무적 성과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 고용관행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 고용관행에 기초한 연공에 기초한 보상체계와 잘 발달된 기업 내부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다.⁶¹⁾”

국적에 따른 기업의 관행과 노사관계 유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 노조는 불필요하거나 하위 파트너로 용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선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조사 결과는 ‘현지 순응형과 절충형이 지배적인 노무관리 현지화정책⁶³⁾’ 또는 ‘현지 순응형이 가장 높은 형태⁶⁴⁾’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61) 노광표, 김현우(2005)

62) “노조 조직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율이 높다. 자국에서는 노동조합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도 왕왕 다른 나리에서는 무노조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상의 결과들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노광표, 김현우(2005))

63) 노광표, 김현우(2005)

64) 류성민, 노용진, 오계택, 강병석(2009)

노시관계의 현지화와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것이 현지법인이 누리는 자율성의 수준인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 책임이 주로 한국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략적 의사 결정의 경우에는 모국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확인되고 있다. 국내 경영진이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낮고, 결국 전략적 의사결정의 ‘원격성 문제’는 초국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시관계의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3. 초국적기업에서 나타나는 노동탄압의 유형 |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단위라고 한다.

한편 자본주의는 경제순환을 거치게 되고 기업은 호황기에는 기업 확장을 꾀하고 불황기에는 위험 회피를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의 투기화⁶⁵⁾와 더불어 기업에도 ‘주주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단기적 이윤추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시장이 글로벌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초국적기업만이 아니라



65) 헤지펀드는 이미 일 국기를 넘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66) 마힌드라는 5,225억원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1,160억을 탕감해달라는 번경회생계획인을 제출해서 2011년 1월 11일 채권단의 동의를 받았다.

금융자본의 제조업 인수합병이 대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상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물론 외국자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예전에도 있었다. 정부가 수입대체 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법적 조치부터 외국자본의 철수로 인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어왔다.

금속노조의 사례를 살펴 볼 경우 첫째 경제위기 시기 기업의 부도와 경영악화를 틈타 금융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하고 차익을 실현하고 튀어버리는 이른바 ‘먹튀자본’이 종종 자행되었다.

오리온전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계펀드 MP는 인수 이후 8개월만에 회사 분리와 청산을 종결지었다. 인수 당시에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3년 이내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투기자본은 1조 3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지만, 결국 1,300명 노동자가 일거에 해고되었다.

쌍용자동차의 사례는 ‘먹튀자본’이 금융투기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례를 보여준다. 상하이기차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노동조합과 특별협약을 맺고 고용안정과 회사 장기발전에 대한 투자 등을 합의했다. 그렇지만 투자약속은 지키지 않고 RV 기술을 빼가고, 회사 스스로 법정 관리 신청을 하였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무자비한 정리해고를 자행하였다. 결국 2010년 쌍용자동차는 인도의 마힌드라에 재매각되었지만, 기술 유출과 먹튀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⁶⁶⁾

두 번째는 일방적인 자본철수이다. 발레오공조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가 오자 적자가 예상된다며 회사청산을 결정하고 청산을 발표하였다.

발레오공조의 경우 2007년부터 경영이 어렵다면서 단체협약 축소, 임금동결, 인원 60명 희망퇴직, 임금 20% 반납, 유료비 및 회식비 반납 등을 노동조합에 요구하였다. 2009년에는 92명 희망퇴직과 임금 41% 삭감, 복지축소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회사의 청산을 준비한 사례이다.

퇴직증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각 가정으로 쿠서비스를 동원하여 가정으로 통신문을 배달하였는데 통신문에는 퇴직서를 동봉하였다. 결국 다시 쿠서비스를 통해 해고통보를 남은 조합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발레오지회 95명은 전원 해고되었다. 발레오공조지회는 공장을 점거하며 프랑스그룹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발레오지회는 4번의 해외원정투쟁을 진행하였다. 한편 발레오자본의 만행에 대해 OECD가이드 위반으로 한국 NCP에 제소하였다.⁶⁷⁾

이렇게 회사를 청산한다는 발레오가 다른 법인을 통해 영업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발레오씨멀시스템코리아(주)가 그것이다. 법인의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9번지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이다.

“발레오 그룹이 발레오공조코리아를 청산한다면서 발레오씨멀시스템코리아(이하 씨멀시스템)을 통해 완성차(르노삼성 등)에 자동차용 에어컨 컴프레셔 영업과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씨멀시스템은 생산기지 및 사무소조차 없는 유령회사이며, 단순한 수입판매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시장상황이 어려

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사명만 변경해 계속 완성차에 납품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에 납품되는 시스템 및 컴프레셔는 발레오가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⁶⁸⁾

발레오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발레오 그룹이 청산이 아닌 ‘신종위장폐업’을 하고 있다고. 한편 발레오노동자들은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단기적 이윤추구 경향이다. 앞서 투기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외자기업의 경우 ‘먹튀논란’에 차이가 없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자기업들은 R&D 보다는 배당을 통해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기본 경영전략으로 하고 있다. 만도기계를 인수한 선세이지의 경우 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주 목적이었다는 것이 만도 경영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던 지난 9년간 신기술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 대주주를 비판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보니 선세이지가 중·장기 계획은 하나도 없이 단기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했다”며 “주주 배당을 늘리고 직원들을 쥐어짜기에만 바빴던 것 같다”고 말했다.’⁶⁹⁾



67) 한국 NCP에 제소한 것은 기록되었고 현재 프랑스 NCP에 제소한 상태이다.

68) 정재은, 2010. 9. 7, 미디어총청

69) 한국경제신문, 2010.4.19

발레오만도의 경우도 발레오가 인수한 이후 매년 배당을 통해 초기 인수자금을 회수해 갔다. 영업권 상각이라는 명목으로 5년간 750억 원을 빼갔다. 그리고 유상감자 두 번과 10년간의 당기 순이익 배당형태로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쓰리엠의 경우도 당기순이익이 960억 원에 배당금은 2,100억 원이었다.

이렇게 이익을 본국으로 보내다 보니 현지에 대한 설비투자, 기술투자는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자본 철수 등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는 끊임없는 일상적 구조조정이다.

외자기업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의 면제, 특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임대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구조조정을 일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⁷⁰⁾

노사합의 파기, 단체협약 축소 및 단체협약 해지, 임금 삭감, 복리후생 중단,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 다양한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본철수를 가장 큰 무기로 노동조합을 위협하고 있다.

“외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철수 논란은 갈등적 노사관계에 대한 단기적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보이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등거리 화해적 노사관계(arm's length accommodation)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¹⁾

위 보고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자본철수의 문제는 갈등적 노사관계에 기인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소위 다국적 기업의 HRM모형을 준용한 인사제도 기법을 도입해서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카한일유압의 경우 회사를 인수한 이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사무직과 현장을 분리하는 것이었다.⁷²⁾

“사무직은 연봉제, 현장은 일급제, 그리고 사무직에게 대우, 관리 잘 해준다고 심어주고, 그런 상태에서 회사이야기만 듣고, 조합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하니깐 실제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일단 외주화정책을 젤 많이 썼다. 비정규직 숫자를 매우 늘렸다. 몇 달사이에 15명까지 늘어났다. 일부는 나가신 분이 있고, 10명 정도. 그리고 물량이 늘어나는데 증설안하고 주야 2교대로 하고, 그리고 외주화 정책, 이렇게 3가지이다.”



70) “대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자들이 정부나 노동조합에 대해 국내자본보다 더 많은 요구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 (Ferner, 1994).

71) 노광표, 김현우(2005)

72) 파카코리아는 장안외국인산업단지에 고도기술수반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정받아 공장 부지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의 확대, 고용보조금과 시설보조금에 대한 현금지원 특혜를 받았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회사인 파카하나핀이 ‘한일유압’을 인수하여 파카한일유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미 그 기술은 한일유압 시절 개발한 ‘굴식기용 메인콘트롤밸브’ 제조기술이었다. 결국 파카코리아 장안공장은 ‘파카코리아 기흥공장’에서 생산중이던 산업용 필터 생산부인 일부 이전과 파카한일유압 시회공장에서 생산중이던 세계 일류상품 ‘굴식기용 메인콘트롤밸브’ 제조기술을 빼돌려 그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파카한일유압 시회공장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파카자본은 파카한일유압에 2008년 공격적 징집폐쇄 2009년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조합원들퇴공장을 벌였다. 2010년 4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명 직원중 40% 정도가 감원되었다.

현장 관리체계는 “셀리더체계를 두었다. 부서를 셀이라고 하고, 기준의 조반장을 명칭만 살아 있고, 업무지시권은 조반장에게는 없다. 셀리더가 다 관장한다.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셀리더 중에는 조합원이 한분 계셨었는데 직장폐쇄 때 파업을 같이 했는데 파업 직후 불러서 셀리더 빼았고, 연봉제였는데 일급제로 바꾸라고 하고, 강제로 일급제로 바꿨다. 연봉제때보다 월 50만원 적게 받았다. 결국 회사가 장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무직을 연봉제로 바꾼 것. 사무직을 자기 손아귀에 절 수 있게 한 걸 제일 먼저 했다. 연봉제를 하니 더 이상 조합원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임금에 대해 이해관계도 없고, 개별계약이니, 사무직을 현장과 분리하고 통제권한을 회사가 쥐게 되는 것이었다.”⁷³⁾

포레시아의 경우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조반장 체계를 바꿨다.

“현장으로 봤을 때는 조반장체계였는데 슈퍼바이저, 텐미저, 슈퍼바이저가 반장역할. 조장역할을 텐미저. 그리고 2004년경 그동안 있었던 조반장 없애고 보직해임하고 개인이 신청하도록 하였다. 슈퍼바이저는 이런 역할이라고 하면서 그걸 신청하라고 하였다. 사전에 작업이 됐을거고, 사람들이 신청하였다. 그리고 면접을 봐서 발령을 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갔다. 현장내에서도 물류를 또 만들었다. 물류부서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로스틱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박스를 본인이 들어서 했는데, 현장에 다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고, 지계자 등도



73) 파카한일유입지회장 인터뷰

74) 포레시아지회장 인터뷰

75) 회사는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모임) 만들어 이들을 앞세워 천막농성장을 파괴하고, 금속노조 투쟁과 새로운 회사노조 건설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노조탈퇴 공작에 활용되었다.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만하라고 했다.”⁷⁴⁾

이들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행할 때 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조합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회사 그만두라고 이야기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번째는 노동조합 배제와 금속노조 탈퇴공작이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자본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지화와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고, 합리주의(?)와 규칙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현장을 지배하고 포섭하려 한다.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조합을 배제하거나 탄압하고 나이가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다.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노사관계가 합리적이라고 알려진 유럽계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특히 본국 철수를 삼아 노조 무력화와 극단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외자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자본 스스로 신청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정리해고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노사간 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풀자 곧바로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자행하였고, 노사간 합의사항이었던 무급휴직자의 복귀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기차는 목적을 달성하고 본국으로 철수 하였다.

발레오만도의 경우 투쟁의 촉발은 아웃소싱으로 시작되었지만 회사가 준비된 계획에 의거 자본철수를 노동자에게 압박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노노갈등을 유발하여⁷⁵⁾ 금속노조 탈퇴와 새로운 기업노조 건설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금속노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되었다는 악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사노조가 들어선 지금 현장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합

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회사는 천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흔들어주지 마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애기한다”며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던 동네 형님, 친구들과의 오랜 관계가 다 깨졌다. 그것은 해고된 사람들은 물론 복귀한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복귀자 그씨는 “어른들 탓에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사택아파트에 살다보니 어른들끼리도 친했지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커왔다”며 “하지만 파업 이후, 아버지의 복귀여부에 따라 아이들 속에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졌다.”⁷⁶⁾”

포레시아의 경우 2개의 법인을 유지하다(각각 법인에 민주노총 노조와 한국노총 노조가 있었다.) 두 개의 법인을 2010년 3월 1일자로 강제 통합하면서 금속노조 지회를 무력화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가 희망퇴직관련 협의를 요구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대표이사 만났는데 우리끼리 잘해볼 생각없나? 금속노조 이런거 떠나서, 그러면 금속노조 탈퇴하라고 하는거냐고 이야기 하면서 못받아들인다고 했다.”⁷⁷⁾



76) 박형주, 2010.1.12, 노조 있고 없고 차이 이제 느낀다(금속노동자 labor.org)

77) 포레시아사회장 인터뷰

78) 백일자, 2010.12.17, 미디어충청

대표이사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금속노조 탈퇴만 하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조의 요구에 대해 포용 할 것처럼 하고 있다. 이처럼 금속노조에 배제에 대한 흐름이 각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3M지회는 처음에는 노조를 인정하는 듯하더니, 외국계 기업 노조파괴 전문가를 영입해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용역폭력, 원거리 전환배치 등 반노동자적 경영정책을 펴왔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명의 해고됐고, 200여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다. 노조 조합원 회유와 용역을 투입한 조합원 폭행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3M의 2009년 노사 단체교섭은 2010년 12월 14일, 100회차로,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다.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휴게실에서도, 천막 농성 중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노조 활동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을 물으니 사무장은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나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⁷⁸⁾

| 4.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에 대한 제언 |

초국적 자본의 노동탄압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던 외자기업이던 노자간 대립에 있어서 초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초국적 자본에 대한 자본에 대한 대응전략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일상적 조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은 모국 자본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조직강화 활동 외에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단체협약에 경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⁷⁹⁾ 그리고 배당 등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견제장치가 내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법 제도를 개선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외자기업이라고 혜택을 주고 사후 감시가 불철저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할 것이다.

한편, 초국적기업의 경우 사전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가 준비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속노조의 원정투쟁이 잣아지고 있다. 그런만큼 일이 생겼을 때 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기업의 경우 평소에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국제사업과 연대에 대한 고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조직해 가야 한다.



79) 발레오만도의 경우 노동조합측 추천 사외감사 1인이 참여가 보장되었으나 이러한 것으로 발레오만도사측의 공서를 미연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80) CKD는 Completely Knock Down, 원제품을 수출하는 대신에 해외 현지에 조립공장을 설치하고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 수출하는 방식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국제단협, 국제협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금속노조의 지속적 관심과 역할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제기되어왔던 금속노조 차원의 외자기업 대응팀을 상설적으로 가동해서 금속노조와 연결된 초국적기업에 대한 일상적 흐름 파악과 국제연대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 5. 국내기업의 초국적기업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한국자본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자본들도 초국적기업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해외 각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이익추구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2010년에 573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중 현대자동차는 2010년 국내 생산 물량(174만대)보다 해외 공장 생산물량(188만대)이 더 많은, 전체 판매량의 52%를 차지하였다.

2011년 현대기아차그룹은 전체 633만대를 판매 목표를 밝혔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1년 국내 생산계획 183만대, 해외공장 생산계획 207만대로 전체 399만대 중 해외공장 생산 증가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미국, 중국, 인도, 터키, 슬로바키아, 체코에 자동차생산공장이 있고, 러시아와 브라질에는 자동차조립공장을 건설중이다. 이외에 CKD⁸⁰⁾ 공장이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단, 대만, 러시아, 이란, 베트남,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에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공장에서는 이미 노사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인도공장의 경우 2007년 7월에 인도현대자동차노조가 설립되었지만,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활동가를 해고 하는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인도현대차노조는 2009년 1월 '노조불인정, 노조탄압,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도로점거 등의 지역연대투쟁을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벌였고, 4월에는 인도현대자동차공장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집을 찾아 다니며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인도현대자동차 사측은 인도인들의 종교를 멸시하고 노동자들을 개로 묘사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상식 이하'의 관리로 '한국인'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회의는 2009년 3월, 한국에서 진행되었고, 2차회의는 2010년 9월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현지의 경영진들이 현지 공장 및 전세계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존중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벌어지는 반노동자적 행위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론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현대·기아 국제노동자네트워크는 상호 정보 공유와 교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모든 자료는 영어로 번역하고, 정보교류에 있어 설문지부터 시작한다. 기초조사 설문지는 각 공장별 1년에 두 번 작성하여 '각 공장의 고용문제, 불안정 고용문제', '임금문제', '노동시간', '노조조직 및 단협체결'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두 번에 걸친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출발 정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에 걸쳐 결정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면을 봐도 그렇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자동차자본은 이러한 모임 자체의 성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에 온 인도동지가 월치를 내고 왔는데 회사에서는 징계하겠다고 했고, 해명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의 당면 과제는 어떻게 현대-기아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해외공장에서 모국 노조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사간에 국제기본협약(IFA)을 맺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대·기아자동차 국제노동자네트워크회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례에서 보더라도 모기업노조가 어떻게 활동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문제로 해외원정투쟁을 가서 해외노조로부터 연대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은 있으나 우리 스스로 해외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기업노조로서 제대로 실행한 바는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국제연대에 대한 현대·기아자동차지부 차원에서 국제 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배치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현대·기아자동차 국제 노동자네트워크회의의 결정에 따른 각 국가별 공장 상황 공유와 상호 소통 체계의 확보부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대의 관점을 갖지 못할 경우 자본이 해외공장과 국내공장간 물량 경쟁과 차종 경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많지 않게 된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해외공장 규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럴수록 각국에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 체적 대응 능력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제협약에 대한 전망을 현대·기아자동차 국제 노동자네트워크회의를 통해서 발전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7장 결론

금융위기 이후 초국적자본은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 자본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전략이 거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자본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은 초국적자본의 노자관계를 개별 기업 내의 노동권 확보라는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에서부터 전 지구적 차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연대에서부터 자본통제 이르기까지 실천과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네 가지 맥락에서 범주화를 시도하면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노동권을 강화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
- 둘째, 국제적 노동연대를 강화
- 셋째, 자본 유출입 통제 강화
- 넷째, 국가의 산업정책 전환

언제나 그렇지만 이들 네 가지 맥락은 각각이 모두 제도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양자를 통합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즉, 노동이 초국적자본의 움직임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초국적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외투기업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한국 법률 상의 제도는 외투기업을 '외국인자본유입'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분율이 몇 % 이상이면 외국인 직접투자이고,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기업이 외투기업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노동의 입장에서는 단순 지분율 이상의 전략을 파악해야만 한다. 외투기업의 설립동기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투기업이 설립되는 당시부터 외국자본의 유입 동기를 파악해야만 향후 고용불안과 노동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외투기업 성립과정의 차이는 이후 자본전략의 경로 차이로 나타난다. 현재 약 15,000여 개의 등록 외투기업 가운데 약 3,000 개 정도가 한국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업으로 추정된다. 즉, 법률로써 개념화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외투기업 15,000여 개 일반이 아니라 특별히 경제권력을 보유한 3,000 여 개 초국적자본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제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초국적자본은 한국 자본주의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장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외자유치 목적이 시대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전면적인 자유화, 개방화로 진화해 왔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전 시기 극심한 자본 부족의 필요성은 소멸되었고, 현 시기 자유화, 개방화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매매차익을 노린 증권 투자이거나 인수합병 목적의 직접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외에서 유입된 자본의 (실물)투자로 짧은 기간에는 축적률을 높여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듯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전체적인 고용 증가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극단적 반노조 정책, 국제적 외주화, 자본 철수 압박 등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임금 분배 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확보된 외투기업의 이윤은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약화된다.

이런 현실에서 실천적 대응 이외에 필요한 제도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먼저, 외투기업과 관련된 제도의 핵심은 조세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특혜의 성격 때문에 시헌을 정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폭과 대상이 각국 정부 사이에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온 추세를 볼 때 사실상 영구화되고 있다. 조세지원은 이른바 '현대판 조차지(租借地)'라 불리는 각종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등의 공간 정책

과 자주 연계된다. 이런 각종의 '지역' 정책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쟁적 자본유치에 나서게 하고 자체의 산업정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특혜적 조세지원정책은 정상화시켜 전체 조세와 지역 산업정책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난립된 외국인투자 관련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실질적 거부권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의회의 참여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사전 검토와 정보 제공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제도적 대응 방향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전 고용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원이 투입 또는 매개되는 외투기업의 설립 또는 철수에는 사전 고용 평가를 법률로써 의무화해야 한다.

이상의 제도적 방안 못지 않게 노동의 실천적 대응이 구체적으로 평가되고 계획되어야 하겠다. 외투기업의 노자관계는 국내기업의 노자관계와는 다른 세력 역관계와 정보 비대칭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외투기업이 일국내 노자관계 전체를 교란시키는 데까지 종종 나아간다. 이미 노동의 개입력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조직노동은 안팎으로 포획당하고 있다. 조직노동이 대 자본, 대 정부에 대한 규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 정부의 정책실패 은폐, 간접 통제를 통한 압박을 해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은 초국적 자본의 구조조정에 지난한 투쟁 역사를 갖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싸워온 전 세계 노동의 경험은 여러 대응 전략이 갖는 장점과 제약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초국적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별도의 수단들은 첫째, 유럽

계 초국적기업과 노동조합이 추구했던 국제기본협약(IFA), 둘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으로 대표되는 국제 기준 그리고 셋째 노동조합 네트워크 등이 있었다. 각각의 수단들이 갖는 장점과 한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우리 연구진은 다차원적 접근이라 부른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에서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초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국내 공급사슬망에 대한 산별 차원의 대응, 그리고 초국적기업을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까지 국제이동, 국내 공급사슬망, 법제도 규제 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노동의 대응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정리해 보자. 먼저 연구진은 초국적 자본이던 외자기업이던 노자간 대립에 있어서 초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 조합활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다.

한편 초국적 자본은 모국 자본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경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자본유출에 대한 일상적 감시는 국제연대와 결합될 필요가 있고, 이는 연맹이나 총연맹 차원에서의 상설 대응팀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역설적으로 국내기업의 초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연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으로만 끝날 수 없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예만 보더라도 한국의 노동이 해외 노동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직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문제로 해외원정투쟁을 가서 해외노조로부터 연대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아본 경험은 있으나 우리 스스로 해외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기업노조로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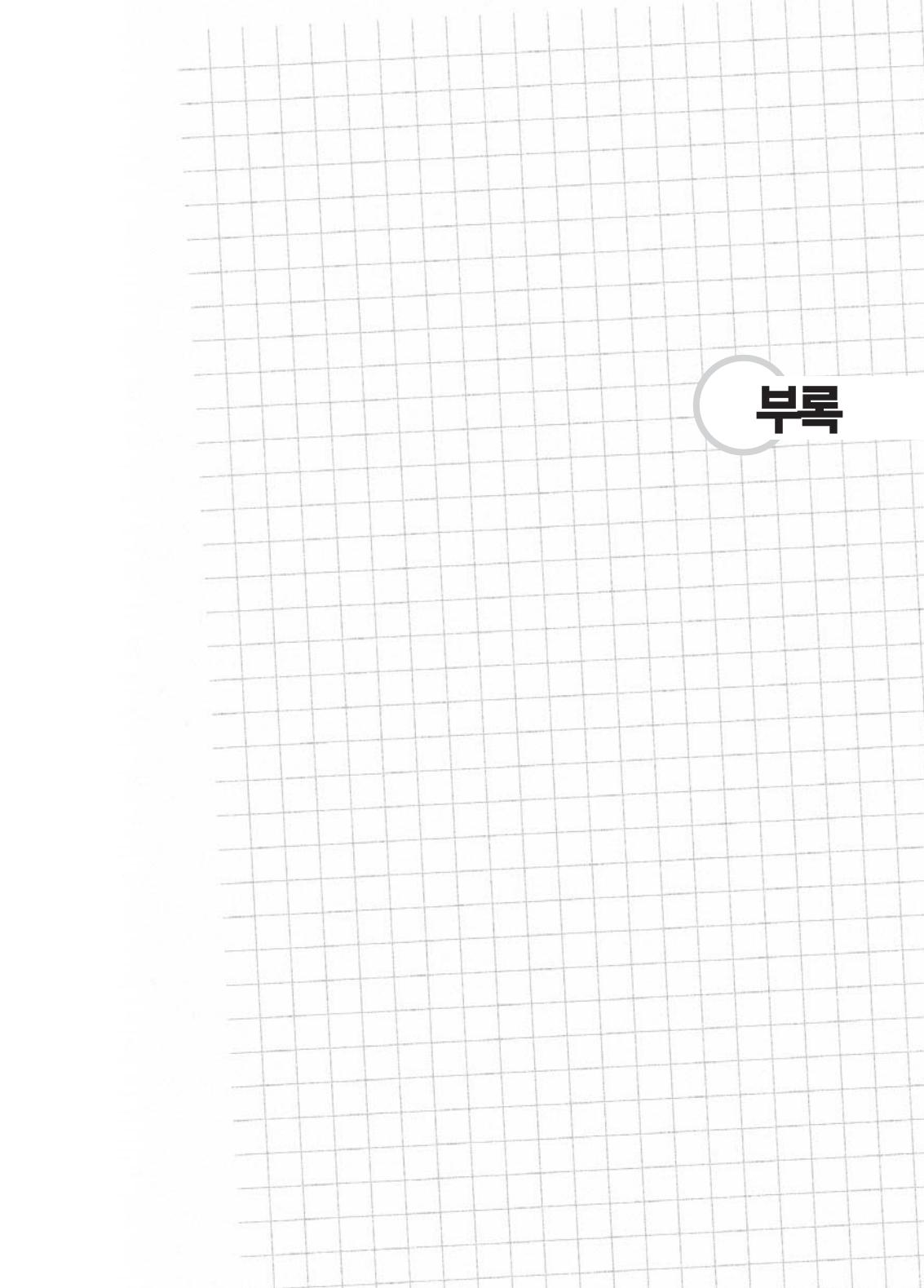
대로 실행한 바는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초국적자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의 대응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투기업들은 초국적자본의 이해에 따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양상을 종종 극단적 형태로 몰아가곤 한다.

노자 사이의 힘의 역관계가 갈수록 비대칭화되고 있는 근본 배경에는 초국적 자본이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업에서 연상되는 바는 기존의 사업장이나 생산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노자 양쪽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초국적자본은 더 이상 기존의 생산관계에 얹매이지 않는다. 초국적 자본은 단위 사업장 또는 외투기업 지사의 생산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까지도 선택지로 갖게 되었다. 즉 초국적자본의 의사결정은 생산관계의 유지를 반드시 전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대응은 단위 사업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업장에서부터 전 지구적 차원까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연대에서부터 자본통제 이르기까지 실천과 제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국제적으로는 자본통제의 강화가 단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으나 종합적인 노동의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제이므로 부록에서 간단히 다루었다. 노동의 국내, 국제적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단기 이슈에 대해 제도적 방책을 대정부, 대사회에 요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는 초국적 자본전략에 대응해야 할 때이다.



C부록

부록 1 조세지원 현황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지원의 대상은 다음의 네 가지임.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둘째,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조세지원

셋째, 외국기술자 조세지원

넷째, 외국투자가 주식양도차익 조세지원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고급기술관련 업종에 해당하거나 특정지역에 입주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표41〉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 제도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최초 도입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것 	국세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 -5년 100% -2년 50%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3천만\$ • 관공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 • 관공업 : 1천만\$ • 물류업 : 5백만\$ ※ 기업도시 : 1천만\$ 	등록세 -재산세	5년간 감면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3천만\$ 이상 •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1천만\$ 이상 • 외투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 지원

(1) 조세지원 대상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조세지원 내용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다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조례로써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1) 조세지원 대상

법인세, 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2호).

- ①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외국인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 항만 시설 운영 사업 및 항만 배후단지 물류산업, 공항시설 운영 사업 및 공항구역 물류 산업,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 ④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자로서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 ⑤ 동일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고, ①~④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조세지원 내용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업체가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또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조례로서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 특정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관광업 및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물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인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세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3년간은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감면

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또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조례로써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제주 투자 진흥지구에서의 총 개발사업비가 1억 달러이상인 경우가 해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7항).

이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에 의거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

취 · 등록세 및 재산세는 3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법」9조에 의해 조례로써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3)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 및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항제2호의6).

①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산도시설운영사업및궤도시설운영사업, 신 · 재생에너지 이용한 전기생산사업

② 투자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연구 및 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사업, 항만시설사업 및 항만 배후단지 물류사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달러이상인 경우에 조세 특례가 주어진다.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항제2호의6 및제2항).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 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3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조례로써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 가능

(4)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0항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세지원

① 외국인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②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물류업

이 경우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입주업체가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3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9조에 의해 조례로써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 가능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내국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등으로부터 외국투자가(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즉,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

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감면. 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여기서 외국인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함.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의 2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④ 외국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사업및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 기타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⑤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또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

한법제18조제2항).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 도입 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 한다.

4. 외국투자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외국 투자가(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에 의해 외국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 ① 주식의 양도자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② 조세협약에서 과세권을 소득원천지국에 부여한 경우
- ③ 조세협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 투자가의 거주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면세한다.

- ① 비거주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②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총발행주식의 25% 미만을 보유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내국 사업장이 있는 외국투자가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분리 과세 원천징수하게 된다. 원천징

수하는 경우 그 세액은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을 정수한다.

부록 2 자본통제 수단들

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한 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자본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행정적 규제가 있고, 둘째는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조세부과 형태가 있다.

〈표42〉 자본 흐름에 대한 규제 수단들

국가	기간	자본통제 조치
브리질	199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식투자 대출 특정외환거래에 대해 특별세 부과 - 특정한 형태의 유입에 대해 금지조치, 투자기간 규제(최소 부채만기 설정)
칠레	199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상 지급준비율 도입(unremunerated reserverequirement, URR) : 외국인자본 유입 시 일정한 비율의(이자지급 없는) 예치금 요구 - 후기에 URR 비율인상
컬럼비아	199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차입에 대해 URR도입 - 부채만기를 최소한 18개월로 제한
	200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부채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해 URR 40% 요구 - 은행의 명목적 파생상품 투자금액을 자본금의 500% 이내로 규제
말레이시아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 투자를 전적으로 금지 - 국내 상업은행이 외국인과 무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외환 선물거래를 못하도록 제한 - 은행의 순부채 상한선 설정 -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통화표시예금에 대해 URR요구
	1995~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대민통화예금에 대해 URR요구 - 은행의 외환거래(파생상품 포함)에 대해 안정성 조치 요구
대만	20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유입액에 대해 30% URR요구(외국인 직접 투자와 2만 달러 미만의 외환거래 제외)

출처 : Magued, Reinhart, and Rogoff, 2007, Capital Controls : Evidence from

앞의 방식을 주로 수량기반 규제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격기반 규제라고 칭한다(Stiglitz 외 다수).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관련해 건전성을 규제하는 간접적 통제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을 제한하거나, 외화부채와 자산의 비율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적정성 요건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총 외국 자본 유입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가격기반 규제

자본자유화에 따라 생긴 급작스런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나라에서 도입되었던 규제책을 정리한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선호되었던 정책은 무보상 지급준비율URR이었다. 이는 국내 기관이 외회를 차입하거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위해 자본을 들여올 때 일정 비율의 자본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금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이 규제안의 목표는 단기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 조치가 전체 유입량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말하며 그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오히려 규제의 장점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측면이 있다. 즉,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단기 자본의 유출입은 줄이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형태가 좀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빈세형태의 거래세 제도이다. 토빈세는 자본이 유입될 때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G20 회의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규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자국 통화인 혜알화의 급격한 가치상승을 막고 투기적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혜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2퍼센트의 금융거래세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2009년 11

월에는 자국 내 미화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1.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조치들은 모두 토빈세를 응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수량기반 규제

정부의 직접적 행정규제를 의미하는 수량기반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0년대 말레이시아가 행한 조치들이다. 그 당시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등해 통화가치가 급상승하자 말레이시아는 아예 외국인들의 단기 증권 매수를 금지시켜 버렸다. 물론 수량기반 규제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의 예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예금에 대해 URR을 요구하였고 최소한의 대출 만기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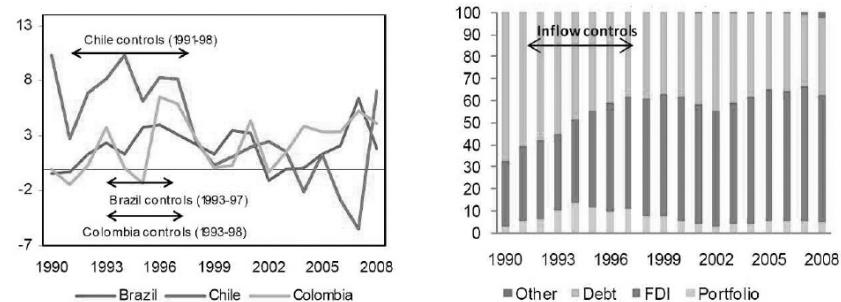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7~8년에 동아시아 위기 때 이전의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로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 鮑 네 논쟁을 일으켰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 조건이 붙은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이러한 자본규제 조치를 통해 자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취한 조치 중 하나는 모든 해외의 자국통화 예금을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국 내 외국인 자본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도록 1년간 외환거래를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후에는 유출되는 자본에 일정한 세금(출구세)을 부과하는 가격기반 규제로 전환하였다(Stiglitz 외 다수, 2006).

국제적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류에서는 계속 비용이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 이와 같은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오히려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

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위에서 스티글리츠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네 가지 자본통제가 가져다줄 이로운 효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 자본의 급작스런 유출입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은 세계경제 체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이면서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는 IMF의 논문에 나온 분석결과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현된 자본통제 조치들이 자본유입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자본의 구성에서 위험성이 높은 단기 투자는 줄어든 반면 실물경제에 대한 신규투자 green-field investmen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본통제 장치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림13〉 남미 3국의 순 자본유입 (% of GDP)과 칠레의 대외 부채 구성비(%)



출처 : IMF Staff Position Note, 2010/02/19의 그래프를 직접 인용

참고문헌

강성진·이홍식(2010),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15-1}, 한국 국제통상연구회

강연배(200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한국 NOP활동에 대하여,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권순원(2008),

{ISO26000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조직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표준원

김승원(2010),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2010년 3월

권영민(2010),

[NAFTA 이후 북미 자동차산업의 생산전환에 대한 분석], {국제통상연구 15-2}, 한국 국제통상연구회

금속노조(2008),

{자본의 초국적화와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전국금속노조

노광표·김현우(2005),

{외투기업 노동고용관련 실태조사 및 인사, 노무관리지원방안 연구}, 노동부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류성민 외(2009),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경순 외(2009),
[FDI 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와 결정 요인], 《생산성논집》, 제23권 제2호 2009년 6월

박봉규, 김용덕(2004),
[오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8권 제1호, 121~143

박성재 이규용(2008),
[외투기업 고용현황], 《외투기업 노사정 포럼 자료집》, 노동부

산업지원부(2001),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고 자료]

안정화(2006),
[한국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논문

윤소영(2008),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개정판, 공감

 참고문헌

윤효원(2007),
[노동조합 입장에서 살펴본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기준], 《국제기준과 다국적기업노동조합 네트워크 수련회》, 전국민주화학습유노동조합연맹

이인재 외(2008),
[고용영향 분석 평가방법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윤종(2007),
[한미FTA를 통한 외국인투자확대], 산업연구원

정세은, 김봉한(2009)
[FDI의 생산성 투자, 고용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5권 제2호 2009. 8

전승철 외(2005),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대통령 보고 내부자료

조용수(2006),
[외국인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LG경제연구 2006-2》, LG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은행(20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기온조사》, 중소기업은행

최기호(2007),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서체에 대한 평가], 서무학연구, 제24권 제1호 2007년 3월
pp.51~80

코트라(2010),
 {외투기업 2009년 경영실태조사 보고서}, 코트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6),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한국은행(2002),
 {최근 국제 M&A 동향과 전망}, 한국은행

한국은행(2008),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한지원(2009),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현대차와 한국경제], {The Front 1호}, Corea21

한지원(2010),
 [초민족자본의 노동권 파괴와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략], {사회운동 92호}, 사회진보연대

한지원(2011),
 {GM대우 최근 4년간 정부 혜택과 손실 전가 내역으로 본 사회적 책임}, 노동자운동연구소

홍재범 (2008),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금융경제연구, 2008년 1월

Berry Eichengreen · Kevin H. O'Rourke(2010),
 "What do the new data tell us?", <http://www.voxeu.org>

Bonnie Penfold(2004),
 'Labour and Employment Issu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Public Support
 Conditionalities', "ILO Working Paper No.95", ILO

Caughlin(1992),
 [Foreign owned companies in US], Federal Bank of St. Louis

Creigh and Makeham(1978),
 [Foreign ownership and strike-pronenes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CUT(2009),
 "Guide to the Construction of Union Networks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CUT

Dong Kook, Lee(200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Did liberalization Spur Investment
 Efficiency in Korea?'

EMC(2010),
 "Multinational companies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EU", Euround

Eurofound(2009),
“ERM case studies: Employment impact of relocation multinational companies across EU”.

Forsyth(1973),
[Foreign owned firms and labour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Ingeborg Wick(2005),
“Worker’s tool or PR ploy?”, Friedrich Ebert Stiftung

Jackson(2009),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CRS Report, Nov. 6 2009

John G. Ruggie(2010),
“Remarks at OECD Investment Committee Professor John G. Ruggi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JOSEPH E. STIGLITZ(2007),
“REGULA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WARDS PRINCIPLES OF CROSS-BORDER LEGAL FRAMEWORKS IN A GLOBALIZED WORLD BALANCING RIGHTS WITH RESPONSIBILITIES”, ‘2007 Global Lecture’

Lehto and Bockerman(2006),
[Enemy of Labour? Analys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Labour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Malcomson, J.M.(1997),
[Contracts, hold-up, and labor marke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916–1957.

Mueller, D.C. (2003),
[The finance literature on mergers: a critical survey]. In: Waterson, M. (ed.): Competition, Monopoly and Corporate Governance: Essays in Honour of Keith Cowling. Cheltenham: Elgar.

OECD(2010),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PECIFIC INSTANCES CONSIDERED BY NATIONAL CONTACT POINTS”, OECD

OECD-ILO(2008),
‘REVIEW OF NCP PERFORMANCE: KEY FINDINGS’, “OECD-ILO CONFERE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ECD

OECD-TUAC(2009),
‘REVIEW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RAINSTORMING MEETING”, OECD-TUAC

Palle Andersen · Philippe Hainaut(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the industrial countries', "BIS
Working Papers No 61"

Shah, S. and J. Toye, Tax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England :
Frank Cass.

Sarah Garter(2010),
"Networking and a Two-track Strategy", Friedrich Ebert Stiftung

Schumpeter(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Thierry Baudasse(2006),
"The Labour Side Agreement in NAFTA: an Example to Follow?"

Timothy Sturgeon(1999),
"The World that Changed the Machine: Globalization and Jobs in the the
Automotive Industry", Alfred P. Sloan Foundation

Yuqing Xing · Neal Deter(2010), "How iPhone Widens the US Trade Deficits with
PRC", Discussion Paper: 10-21', GRPS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UNCTAD(2009),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UNCTAD(2010),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Uni Global Union(2009),
"UNI Reports reveal Tesco's labour practices abroad", UNI

